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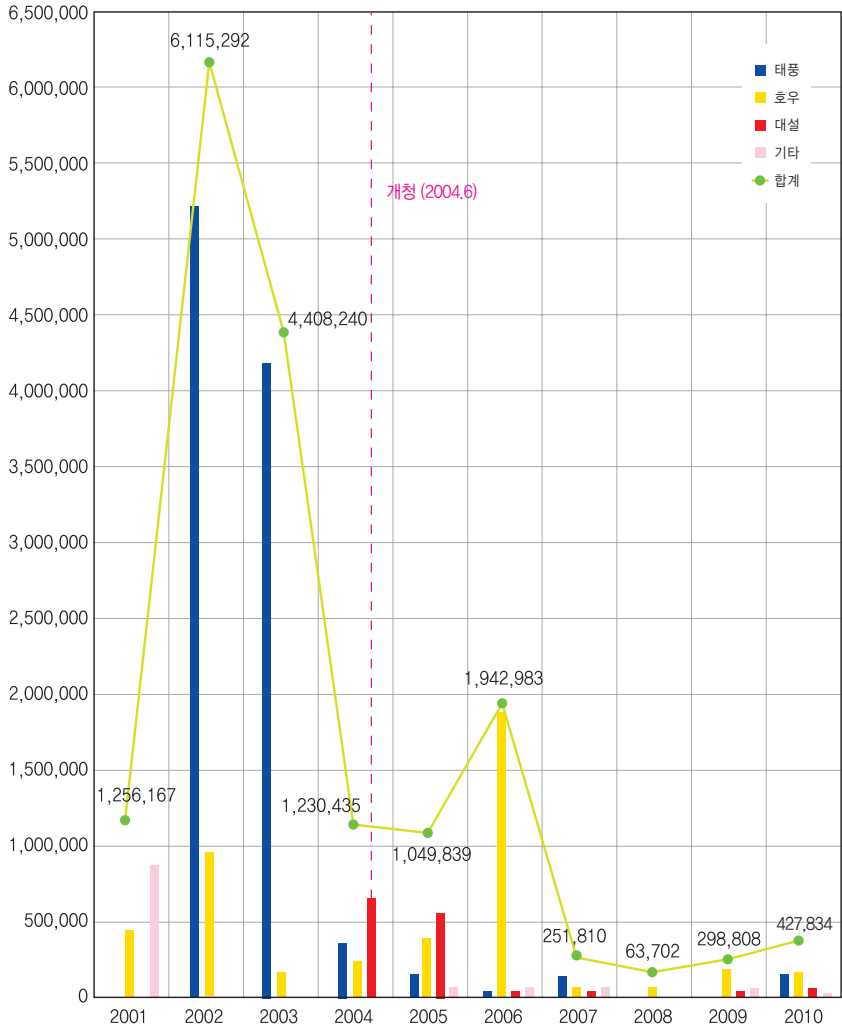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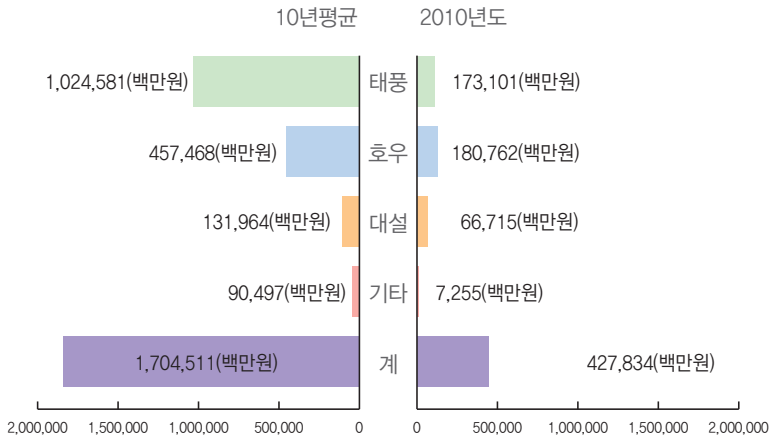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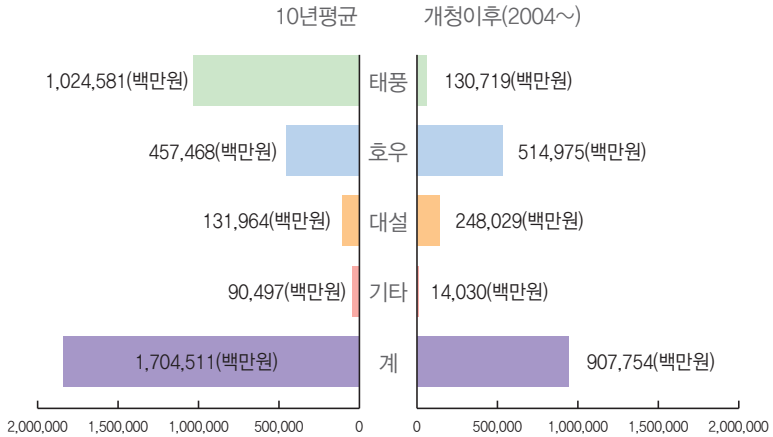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총괄(2001년~2010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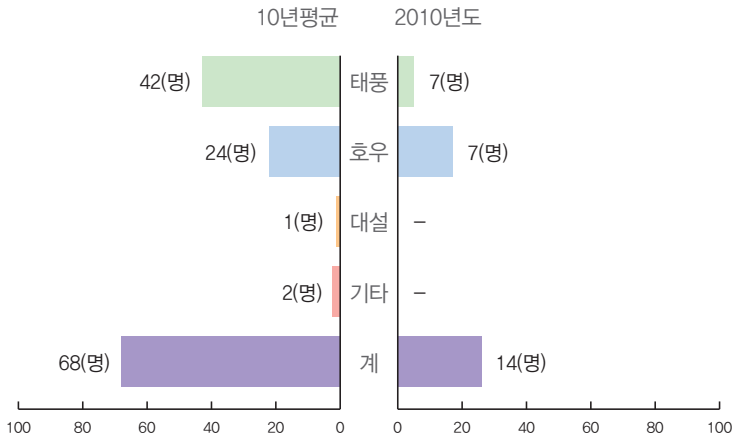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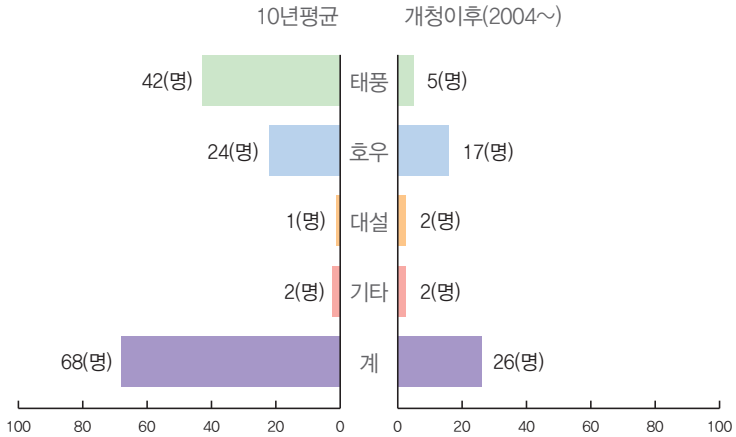
자연재해

* 재산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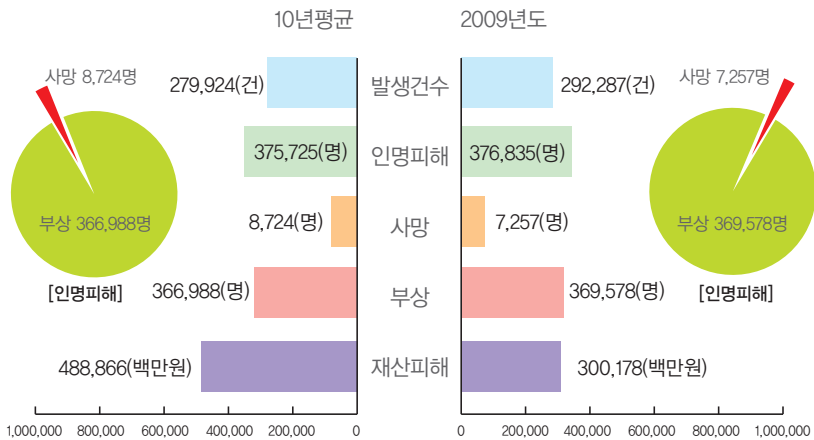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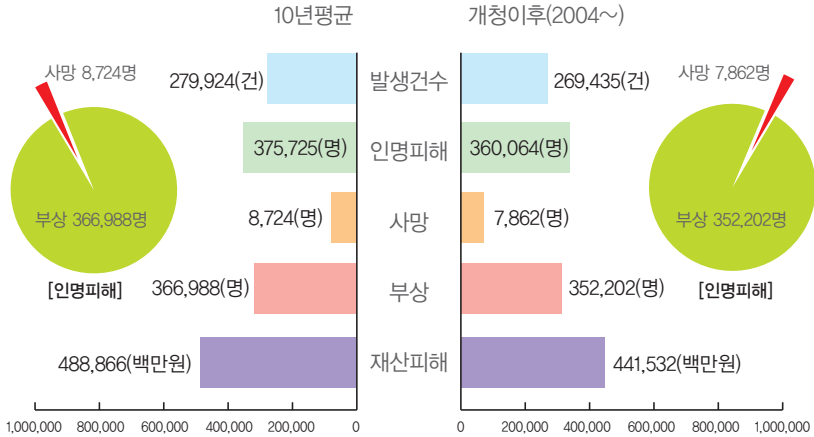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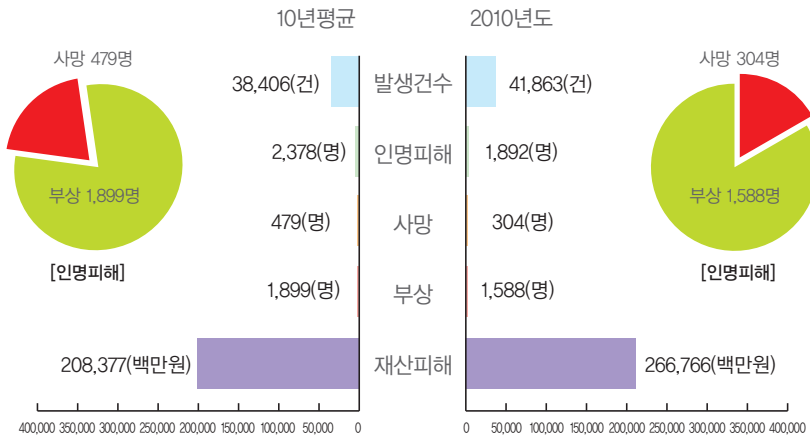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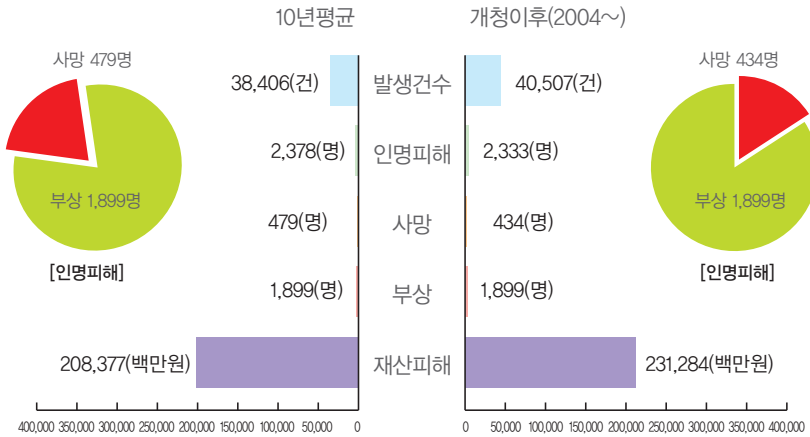
*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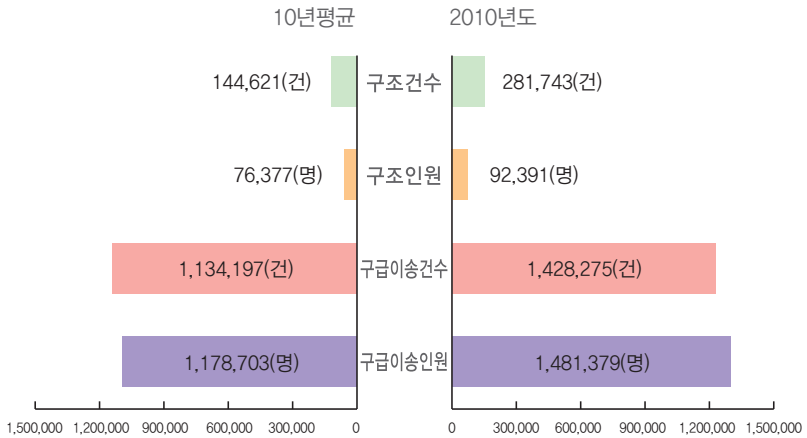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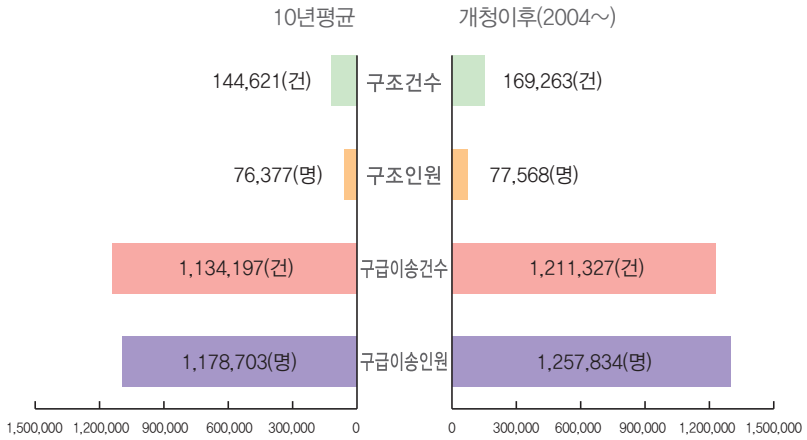
인적재난



화재 발생



구조 · 구급



목 차

제1장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7
3. 기 능	8
4. '11년 예산	10

제2장 예방안전 분야

1. 재난관리체계	15
1-1. 재난관리행정 연혁	15
1-2. 재난관리 체계	17
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21
1-4. 재난관리책임기관	26
1-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28
1-6. 재난상황보고·전파 체계도	30
1-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32
1-8. 안전관리 주요 법령	33

목 차

2. 2010년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35
2-1. 훈련 개요	35
2-2. 중점 훈련 내용	35
3. 민방위 현황	36
3-1. 민방위 제도	36
3-2. 민방위 편성	40
3-3. 민방위 교육	43
3-4. 민방위 훈련	46
3-5. 민방위 경보	47
3-6. 화생방	50
3-7. 민방위 시설장비	51
4. 유·도선 관리	54
4-1. 유·도선 안전관리 개요	54
4-2. 전국 유·도선 현황	55
4-3. 유·도선 사고발생 현황	56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범위 및 지정 현황	57
5-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범위	57
5-2. 특정관리 대상시설등 지정 현황	61

6. 주요 인적재난 현황	63
6-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93~'10년)	63
6-2.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06~'10년)	81
6-3.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84
7. 재난전조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87
7-1. 재난전조(前兆)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87
7-2.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 및 센터 현황	89
8. 재난관리 민관협력	91
8-1. 재난안전네트워크	91
9. 예방안전 홍보	96
9-1. 국민안전방송 NEMA TV	96
9-2.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경보제	100
10. 무선통신망 및 시스템 현황	102
10-1.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운영현황	102
10-2.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03

목 차

제3장 소방정책 분야

1. 소방일반현황	111
1-1. 소방연혁	111
1-2. 소방조직체계	112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	114
1-4. 소방인력 현황	114
1-5. 순직, 공·사상자 현황	115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17
1-7. 소방력 보강현황	118
1-8. 소방장비 현황	123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126
2. 방호업무	127
2-1. 의용소방대	127
2-2. 소방응수시설	129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130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131
2-5. 119수보관서 현황	132
2-6. 지령시스템 운용(119신고 접수현황)	133
2-7.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35
2-8. 화재발생현황('06~'10)	136

3. 예방업무	145
3-1. 소방검사	145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149
3-3. 다중이용업소	151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156
3-5. 방화관리제도	157
3-6. 화재경계지구	161
3-7. 건축허가 동의	163
3-8. 소방공사업 등 현황	164
4. 위험물 안전관리	170
4-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70
4-2. 위험물 검사	171
4-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171
4-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72
4-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172
4-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173
4-7. 위험물별 현황	173

목 차

5. 구조·구급업무	174
5-1. 119 구조·구급대 운영	174
5-2. 2010년도 구조·구급활동 현황	181
5-3. 119 국제구조대	197
5-4. 소방왕 선발대회	200
6.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03
6-1. 긴급구조 대응계획	203
6-2. 현장지휘체계	204



제4장 방재관리 분야

1. 재난의 이해	215
1-1. 자연재난의 정의	215
1-2. 재난관리의 책무	215
1-3.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216

2.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218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218
2-2. 구성원별 임무	218
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219
3. 자연재난 사전대비/예방대책	221
3-1. 자연재난 사전대비 개요	221
3-2.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222
3-3. 홍수대책비상기획단 구성·운영	227
3-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229
3-5. 이재민 구호물자 비축 관리	230
3-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231
4. 자연재난 복구지원	233
4-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233
4-2. 특별재난지역	234
4-3. 복구계획수립 흐름도	237
4-4.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비 현황	238

목 차

5. 풍수해 보험	253
5-1. 사업 개요	253
5-2.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253
5-3. 보상금액 및 대상시설물별 기준단가	254
5-4. 보험금 지급현황('06~'10)	257
6.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	258
6-1. 세계의 주요지진	258
6-2. 우리나라 주요지진	260
6-3.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262
6-4. 시·도별 지진발생 현황	263
6-5.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265
7. 국제방재협력	267
7-1. 국제방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267
7-2.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268
7-3. 재해위험 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및 UN ISDR 인천 동북아시아사무소	271

8. 방재교육·연구현황	273
8-1.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기본현황	273
8-2. 2010 교육훈련 현황	276
8-3. 2010 재난안전기술개발 현황	278



부 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285
2.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287

1장 기 본 현 황

1. 연 혁
2. 기구 및 정원
3. 기 능
4. '11년 예산



기본현황

1. 소방방재청 연혁

년 월 일	개 편 내 용
'48. 11. 4	<내무부> * 치안국에 소방과 설치
'50. 3. 31	* 치안국의 소방과 폐지
'61. 10. 2	* 치안국의 소방과 신설
'75. 8. 26	* 민방위본부 신설(민방위국과 소방국을 설치) * 민방위국에 기획과·민방위시설과· 편성운영과·교육훈련과를 둠 * 소방국에 소방과·방호과·예방과를 둠
'76. 4. 15	* 민방위국 민방위시설과를 시설과로 개칭
'78. 7. 27	* 소방학교 신설
'81. 11. 2	* 민방위국 시설과 폐지
'86. 12. 26	* 중앙민방위학교 신설
'91. 4. 23)	* 민방위국에 방재계획관(3급), 방재과 신설
'94. 4. 21	* 방재계획관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 * 민방위국장의 보좌기구에서 민방위본부장의 보좌기구로 조정 * 중앙민방위학교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연수원장 밑의 민방위교육담당관(3·4급)으로 이관
'94. 12. 23	* 방재계획관을 방재국으로 확대개편 * 방재계획과·재해대책과·재해복구과 신설
'95. 5. 16	* 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로 명칭변경

년 월 일	개 편 내 용
'95.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 *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재난총괄과·재난관리과·안전지도과를 둠 * 소방국에 구조구급과·장비통신과를 신설 * 중앙119구조대 신설(중앙소방학교 소속)
'97.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방재연구소 신설 * 중앙119구조대 소속을 중앙소방학교에서 내무 부장관으로 변경
'98. 2. 28	<p data-bbox="369 542 512 570"><행정자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설치, 민방위재난관리국· 방재국·소방국을 둠 *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기획과·편성운영과· 민방위훈련과·재난관리과·안전지도과를 둠 * 방재국에 방재계획과·재해대책과·재해복구과를 둠 * 소방국에 소방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 장비통신과를 둠
'98.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편성운영과와 민방위훈련과 를 통합, 민방위운영과로 개편 *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획과를 민방위기획과로 개칭 * 소방국의 소방과와 장비통신과를 통합하여 소방행정과로 개편
'9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연수원을 폐지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 설(자치행정연수부에 민방위교육과를 둠)
'99.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민방위방재국으로 통합하고, 민방위방재국장 밑에 방재관(3급)을 둠 * 민방위방재국의 안전지도과 폐지, 그 기능을 재난관리과로 이관
'00.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관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방재계획담당관·재해대책담당관· 재해복구담당관을 둠 * 민방위방재국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민방위기획과·민방위운영과·재난관리과를 둠
'03.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담당관을 방재기준담당관으로 개편

년 월 일	개 편 내 용
'04. 6. 1	<p><소방방재청 출범> 1관 3국 19과 4소속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 공보담당관, 재난종합상황실, 총무과, 기획관리관, 방기획·대응관리·복구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관에 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을 둠 - 예방기획국에 획총괄과·민방위계획과·소방정책과·특수재난관리과·민간안전협력과를 둠 - 대응관리국에 응기획과·방호과·구조구급과·시설장비과를 둠 - 복지지원국에 습대책과·복구과·기술지원과·심사평가과를 둠 * 소속기관 :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 중앙119구조대
'05.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명칭변경
'05.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명칭변경 * 공보담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정책홍보관리관 보좌기구로 변경
'05.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팀제(1차) 개편 : 4본부 1실 2관 22팀 (정책개발분석팀, 재난종합상황실, 행정지원팀, 정책홍보·재난예방·소방대응·복구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정책홍보팀·재정기획팀·정보화전략기획관·통합망구축팀을 둠 - 재난예방본부에 재난예방기획팀·민방위운영팀·민방위자원관리팀·안전문화지원팀·인적재난관리팀·위험물안전관리팀을 둠 - 소방대응본부에 소방대응기획팀·소방제도운영팀·소방전략개발팀·화재조사분석팀·소방시설장비팀을 둠 - 복구지원본부에 방재대책기획팀·재해복구지원팀·재해경감대책팀·재해영향관리팀·방재기준관리팀을 둠
'06.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방재연구소와 민방위교육관을 통합하여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신설
'06.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팀제(2차) 개편 : 4본부 1실 2관 2단 21팀 (안전서비스혁신단, 재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정책홍보·예방안전·소방정책·방재관리본부)

년 월 일	개 편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정책홍보팀·재정기획팀 ·정보화기획관·통합망사업단을 둠 - 예방안전본부에 예방전략팀·과학방재팀·민방위팀 ·안전문화팀·인적재난팀·위험물안전팀을 둠 - 소방정책본부에 소방기획팀·소방제도팀·대응전략팀 ·화재조사팀·U119팀·과학화기반팀을 둠 - 방재관리본부에 방재대책팀·복구지원팀·재해경감팀 ·평가관리팀·재해보험팀을 둠
'07. 9. 14	* 방재 관리본부에 방재기준팀 신설
'08. 3. 4	<p>* 대국대과제(1차) 개편 : 1관 3국 21과 5팀 (대변인, 재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예방안전·소방정책·방재관리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관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통합망사업팀을 둠 - 예방안전국에 예방전략과·민방위과·안전문화과·인적재난과·위험물안전팀·과학방재팀을 둠 - 소방정책국에 소방기획과·소방제도과·대응전략과·U119과·과학화기반과·화재조사팀을 둠 - 방재관리국에 방재대책과·복구지원과·재해경감과·평가관리과·재해보험과·방재기준팀을 둠
'08. 5. 2	* 소방정책국에 항공안전팀 신설
'08. 6. 5	<p>* 대국대과제(2차) 개편 : 1관 3국 21과 2팀 (대변인, 재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예방안전·소방정책·방재관리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인적재난과를 시설안전과로, 소방기획과를 소방행정과로, 대응전략과를 방호조사과로, U119과를 구조구급과로, 과학화기반과를 소방장비과로 명칭변경 - 예방안전국에 안전문화과·위험물안전팀·과학방재팀을 폐지하는 대신 특수재난대비과 신설

년 월 일	개 편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정책국에 화재조사팀 폐지 - 방재관리국에 평가관리과·방재기준팀을 폐지하는 대신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09.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관리국에 지진방재과 신설 * 통합망사업팀·항공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관리팀·화재조사감찰팀을 각각 신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소방행정과를 소방정책과로, 방호조사과를 방호과로, 재해보험과를 재해보험팀으로 명칭변경
'11. 1. 28	*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명칭변경

2. 기구 및 정원

가. 기 구



소속기관



나. 정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계		569	1	15	287	233	33
본 청		351	1	6	226	88	30
소속 기관	소 계	218	-	9	61	145	3
	중앙소방학교	66	-	-	12	54	-
	국립방재교육 연구원	61	-	9	49	-	3
	중앙119구조단	91	-	-	-	91	-

3. 기 능

가. 업무범위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 소 방** :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활동,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구급 활동

-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 활동
- ❁ **민 방 위**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 지원 등)

나. 국별 기능

국 별	기 능
예방안전국	인적재난 예방대책, 물놀이 안전, 유도선 안전관리
	취약시설 안전관리, 특수재난 대비, 재난대응 훈련
	민방위대 조직편제,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등
소방정책국	소방제도 개선 운영, 화재예방대책 수립, 화재안전기준 관리
	화재진압기술 개발·과학적 화재조사, 구조·구급 업무 총괄
	소방인력·장비 확충, 소방장비 개발·소방산업 육성 지원 등
방재관리국	태풍·대설·가뭄 등 자연재난 예방정책 총괄, 재해예방사업 추진
	자연재난 복구사업 지원, 이재민 구호, 풍수해 보험 운영
	기후변화 대비,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등

※ 재난시 협조·조정 기구

- 인적·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구조·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

4. '11년 예산

가. 예산총괄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
<일반회계>	15,054	11,083	△3,971	△26.4
• 경상이전수입	15,054	11,083	△3,971	△26.4
- 국고보조금 정산금	15,054	11,083	△3,971	△26.4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	
총 계	731,349	740,457	9,108	1.2	
일반회계	계	478,701	515,673	36,972	7.7
	• 기본적경비	45,894	49,644	3,750	8.2
	- 인 건 비	34,553	37,851	3,298	9.5
	- 기본 경 비	11,341	11,793	452	4.0
	• 주요사업비	432,807	466,029	32,222	7.7
	- 계속사업	432,807	431,729	△1,078	△0.2
	- 신규사업	-	22,082	22,082	순증
특별회계	계	252,648	224,784	△27,864	△11.0
	• 농어촌구조개선	207,169	207,169	-	-
	• 광역·지역발전	320	390	70	21.9
	• 혁신도시건설	45,159	17,225	△27,934	△61.9

나.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83,077	201,890	225,942	253,104
기획조정관	소 계	7,540	7,440	4,900	4,700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7,540	5,640	4,900	4,700
	• 소방정보시스템구축	-	-	-	-
	• 통합지휘통신통신망구축	-	1,800	-	-
예방안전국	소 계	1,376	3,836	6,042	3,453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	-	232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406	406	477	807
	• 민방위교육훈련	970	1,210	1,065	1,065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	-	1,000	1,000
	•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	-	-	349
	• 물놀이안전시설설치	-	-	-	-
	•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2,220	3,500	-
소방정책국	소 계	21,696	20,047	19,852	17,529
	• 119구조장비 확충	9,452	8,480	8,504	8,585
	•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10,832	8,788	6,698	5,309
	•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1,412	1,779	1,420	1,420
	•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	-	230	251
	•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	-	-	-
	•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	-	-	-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등확충	-	-	-	-
	• 소방기술경연대회	-	-	-	964
	•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	1,000	3,000	1,000
방재관리국	소 계	152,465	170,567	195,148	227,422
	• 재해위험지구 정비	101,528	116,500	133,225	158,253
	• 소하천정비	48,096	49,686	59,263	67,169
	•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900	770	1,000	2,000
	• 우수저류시설설치	-	-	-	-
	• 사유재산피해복구비지원	-	-	-	-
	• 풍수해보험	-	-	-	-
	•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1,941	1,941	-	-

제1장 기본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A)	2011 (B)	증감 (B-A)
합 계		584,040	578,499	609,448	30,949
기획조정관	소 계	3,800	2,600	2,200	△400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3,800	1,400	1,000	△400
	• 소방정보시스템구축	-	1,200	1,200	-
	•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	-	-	-
예방안전국	소 계	5,682	4,144	12,411	8,267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382	382	382	-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1,035	951	8,678	7,727
	• 민방위교육훈련	1,265	1,211	1,738	527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2,600	1,300	1,300	-
	•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200	100	113	13
	• 물놀이안전시설설치	200	200	200	-
	•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	-	-
소방정책국	소 계	18,359	16,369	19,271	2,902
	• 119구조장비 확충	9,491	320	390	70
	•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6,039	7,888	7,794	△94
	•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1,420	1,600	1,400	△200
	•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361	361	379	18
	•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300	300	400	100
	•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500	4,000	7,000	3,000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등확충	248	1,400	-	△1,400
	• 소방기술경연대회	-	-	-	-
	•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	-	-	-
	방재관리국	소 계	556,199	555,386	575,566
• 재해위험지구 정비		348,901	308,253	308,253	-
• 소하천정비		190,898	207,169	207,169	-
•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1,600	1,600	1,380	△220
• 우수저류시설설치		14,800	38,364	38,764	400
• 사유재산피해복구비지원		-	-	20,000	20,000
• 풍수해보험 •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	-	-	-

※ 2009년 추경예산 기준

2장

예방안전 분야

1. 재난관리체계
2. 2010년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3. 민방위 현황
4. 유도선 관리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범위 및
지정 현황
6. 주요 인적재난 현황
7. 재난전조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8. 재난관리 민관협력
9. 예방안전 홍보
10. 무선통신망 및 시스템 현황

2step

예방안전 분야

1. 재난관리체계

1-1 재난관리행정 연혁

재난관리기구 발족배경

- ◆ 각종 재난의 대형화, 빈발화로 국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 증폭
 - ※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가 직접적인 계기
- ◆ 재난을 사전적·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민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관련 투자증대 등 각종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93. 7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총리 훈령

🌸 '95. 7 「재난관리법」 제정

🌸 '95. 10 재난관리기구 신설·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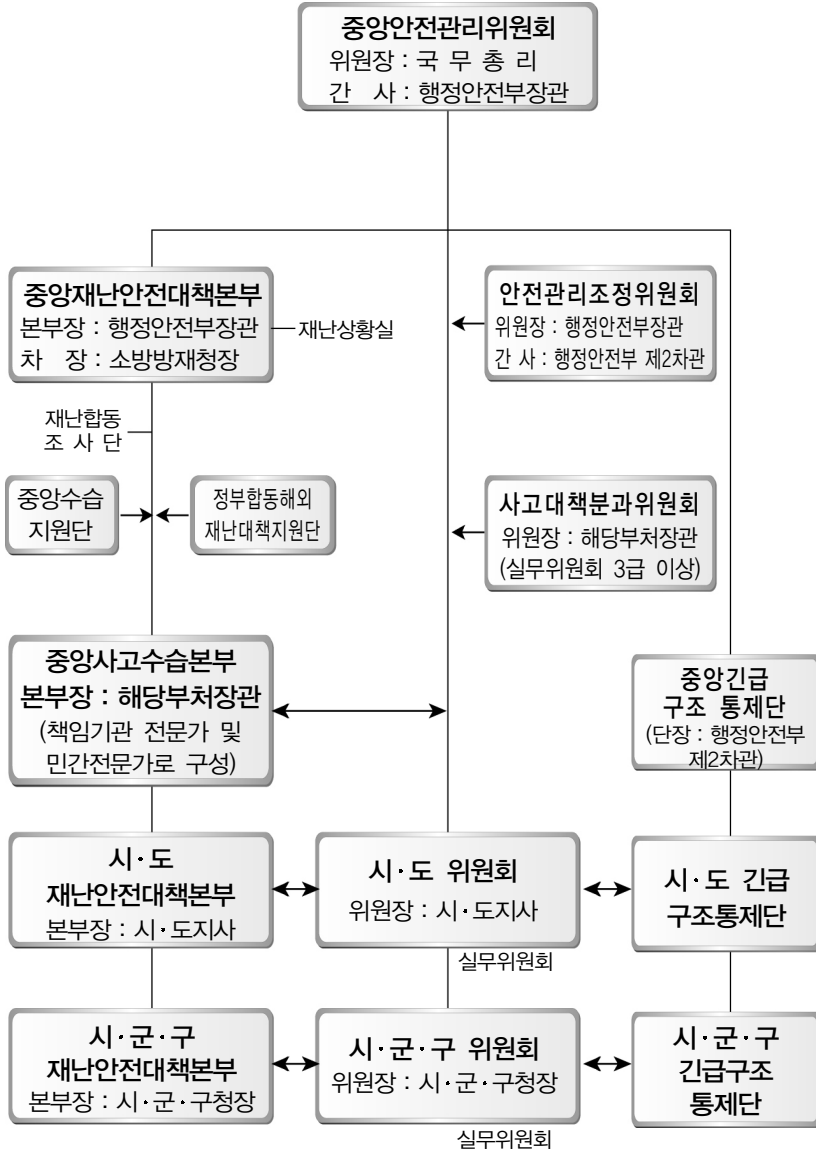
- ✦ 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 ✦ 내 무 부 : 재난관리국 신설 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
- ✦ 통상산업부 : 「가스안전과」 신설
- ✦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2개과)」 신설
- ※ 시·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군·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95. 12)

🌸 '97. 8 재난관리법 1차 개정(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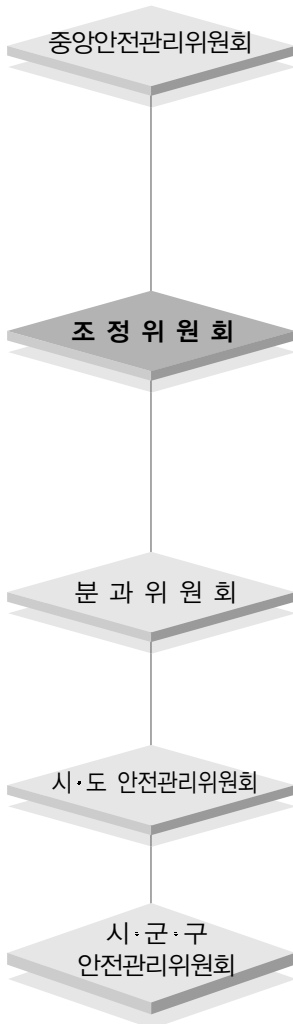
- ❁ '98. 2 재난관리기구 축소·조정
 -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로 이관
 -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조정
 - ※ 시·도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 등), 시·군·구 재난관리담당(담당자) 축소·조정('98. 9~11)
- ❁ '99. 1. 29 재난관리법 2차 개정
- ❁ '99. 5. 24 재난관리기구 축소·조정
 - ❖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 통합 「민방위방재국」
 -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와 안전지도과 통합 「재난관리과」
- ❁ '00. 6. 7 재난관리기구 조정
 - ❖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조정
- ❁ '04. 6. 1 소방방재청 개청
- ❁ '05. 9. 1 재난관리기구 명칭변경
 - ❖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로 변경
- ❁ '06. 6. 30 재난관리기구 명칭변경
 - ❖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로 변경
- ❁ '08. 2. 29 재난관리기구 명칭변경
 -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를 「예방안전국」으로 변경

1-2

재난관리 체계



안전관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 원 : 20명(20개부처·청·유관기관 등)
- 간 사 : 행정안전부장관

○ 기 능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총괄·조정
-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 구 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 원 : 35명(지명직19, 위촉직 16)
- 간 사 : 행정안전부 제2차관

○ 기 능

- 중앙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의 검토
-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위한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 구 성

- 위원장 : 5개 행정기관의 장관
- 8개 대책위원회로 편성 운영

○ 기 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 사전심사

○ 위원장 : 시·도지사

○ 기 능

-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기 능

-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차 장 : 소방방재청장

재난상황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 구성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21개 부처·청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 및 본부장의 위촉을 받는 자
- 기능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 ※ 해외재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 ※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 설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군·구청장

종합상황실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종합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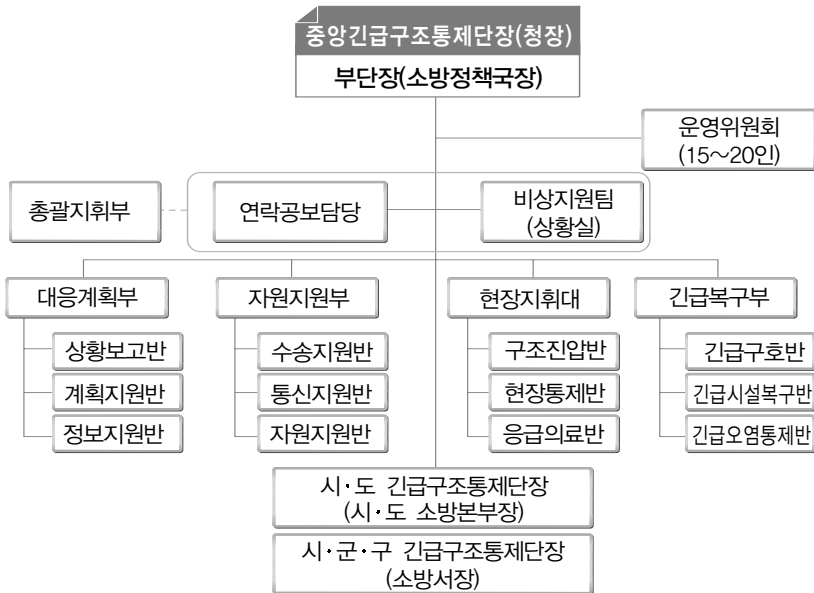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내지 제52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2조
- ※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정중)

나. 구성 및 기능

❁ **구 성**

- 단 장 : 소방방재청장
- 부단장 : 소방정책국장
- 부 서 : 4부 1대

❁ **조 직(規則)**



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95. 7.18	◦ 특별재해지역(삼풍백화점)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차	'95. 7.28	◦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69억49백만원) ◦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서울시) ◦ 씨프린스호 현장확인 결과보고(내무부)
제3차	'95. 8.17	◦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마무리 대책(건설교통부) ◦ 씨프린스호 사고수습 상황 및 마무리 대책(내무부) ◦ 내무부 안전관리체계 보강 방안(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행정조정실) ◦ 해양오염방지체계 개선방안(환경부)
제4차	'96. 2.13	◦ '96 재난관리계획 심의(내무·통산·노동·건교부) ◦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 개선방안(행정조정실) ◦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건교부)
제5차	'96. 2.22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무부) ◦ 특별재해지역 재난수습관련 경비지원(안)(건교부)
제6차	'96. 6.26 (서면)	◦ 고성산불 피해수습을 위한 경비지원(농림수산부)
제7차	'96. 7. 2	◦ 산불방지 종합대책(안)(농림수산부) ◦ 상반기 재난관리업무 평가와 하반기 대책 (내무·건교·통산·노동·정통·교육부)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차 수	일 자	안 건
제8차	'97.12.26	◦ 해외재난관리에 관한 규정(내무부)
제9차	'98.10. 2 (서면)	◦ '99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0차	'99.11. 4 (서면)	◦ '00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1차	'00. 4.14	◦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농림부)
제12차	'00. 5. 6	◦ 동해안 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 지원(농림부)
제13차	'00.12. 2	◦ '01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4차	'01.10.31 (서면)	◦ '02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5차	'02. 9.30 (서면)	◦ '03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6차	'03. 2.19	◦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상황(건교부) ◦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
제17차	'03. 8.19	◦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예산 지원계획 심의(건교부)
제18차	'03.12. 5	◦ '04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합⇒중앙안전관리위원회('04.6.1)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04. 9. 2 (서면)	○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 및 안전관리현장」 심의
제2차	'04.10.28 (서면)	○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안)」 심의
제3차	'04.11.24 (서면)	○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제4차	'05. 4. 4	○ '05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제5차	'05. 4. 5	○ 강원도 양양·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6차	'05. 4. 7 (서면)	○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7차	'05. 7.22	○ '05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보고
제8차	'05.12.29 (서면)	○ 폭설·강풍·풍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9차	'06. 3.21 (서면)	○ '06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 '0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보고
제10차	'06. 7.18	○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군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1차	'06. 8. 8 (서면)	○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등 21개 시·군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2차	'06.11. 8 (서면)	○ '06.10.22~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도 6개 시·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차 수	일 자	안 건
제13차	'07.5.7 5. 7 (서면)	◦ '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결과 보고
제14차	'07.5.14 5.14 (대면)	◦ 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제15차	'07.9.6 (9.11) (서면)	◦ '07.8.4 ~ 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6차	'07.9.17 9.17 (서면)	◦ 국가기반시설 지정(안) 심의(가결)
제17차	'07.9.18 (9.20) (서면)	◦ '07.9.14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8차	'07.10.2 (10.8) (서면)	◦ '07.9.14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보성군·화순군·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9차	'07.12.10 (12.11) (서면)	◦ '07.12.7 충남 태안군 해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안), 사후승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 재난사태 선포 :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제20차	'08.1.15 (1.18) (서면)	◦ '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전남 신안무안영광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안), 심의(가결)
제21차	'08.5.9 (서면)	◦ '07년도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결과 보고
제22차	'08.5.26 (대면)	◦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제23차	'08.7.31 (8.1) (서면)	◦ 7.23~26 호우피해(경북 봉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4차	'09.5.27 (대면)	◦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재난사태 선포 건의(훈련), 심의(가결)

차 수	일 자	안 건
제25차	'09.7.31 (서면)	○ 2009.7.11~16 기간중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8개 시군(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하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6차	'09.12.15 (대면)	○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가결)
제27차	'09.12.23 (서면)	○ 2009.12.4~6 기간중 강풍풍랑으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28차	'10.5.12 (대면)	○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토의
제29차	'10.8.9 (8.11) (서면)	○ '10.7.16~18, 7.23~24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사부여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0차	'10.9.3 (9.8) (서면)	○ '10.8.13~18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1차	'10.9.15 (9.16) (서면)	○ '10.9.1~2 제7호 태풍 “곤파스” 로 인한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사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남 신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32차	'11.1.20 (1.24) (서면)	○ '10.12.29~1.4 대설로 인한 전남 영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 국가기반시설 지장취소 일괄심의(안) - 가결 ○ '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 보고
제33차	'11.2.28 (3.3) (서면)	○ '11.2.11~14 대설로 인한 강릉, 삼척, 울진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 보고

1-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나. 기관

- ❁ 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 ❁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1. 재외공관 |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3. 국립식물검역원 | 4. 지방체신청 |
| 5. 국립검역소 |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 7. 지방노동청 | 8. 지방항공청 |
| 9. 지방국토관리청 | 10. 홍수통계소 |
| 11. 지방해양항만청 | 12. 지방산림청 |
| 13. 시·도의 교육청 | 14. 한국철도공사 |
| 15. 지하철공사 | 16. 도시철도공사 |
| 17. 한국농어촌공사 | 18. 농수산물유통공사 |
| 19. 한국가스공사 | 20. 한국가스안전공사 |
| 21. 한국전기안전공사 | 22. 한국전력공사 |
| 23. 한국환경자원공사 |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25. 대한주택공사 | 26. 한국수자원공사 |
| 27. 한국도로공사 | 28. 한국토지공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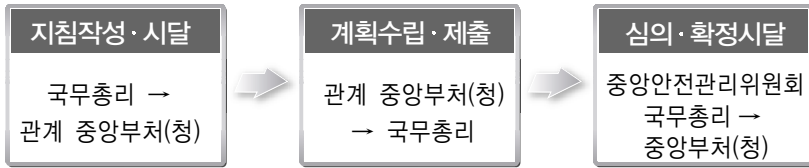
- | | |
|--------------------------------------------------------------------------------------------------------|-------------------|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 30. 한국공항공사 |
| 31. 항만공사 | 32. 한국방송공사 |
| 33. 국립공원관리공단 |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35. 한국산업단지공단 | 36. 부산교통공단 |
| 37. 한국철도시설공단 |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39. 한국원자력연구원 |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43. 산림조합중앙회 | 44. 대한적십자사 |
|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 |
|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 |
|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 |
|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
| 48의2. 국립수산물학원 |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
| 48의4. 한국석유공사 |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
|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
|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 48의10. 한국관광공사 |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48의12. 한국마사회 | |
|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 |
|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 |
| 48의15. 화력발전소 | |
| 49.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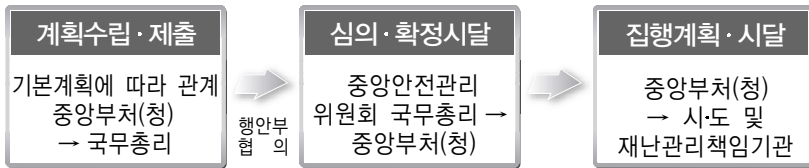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계획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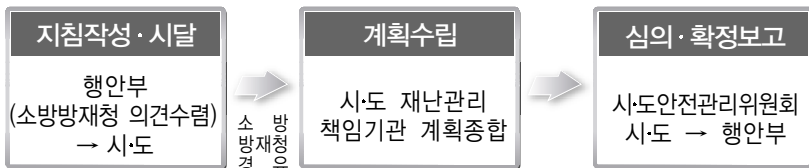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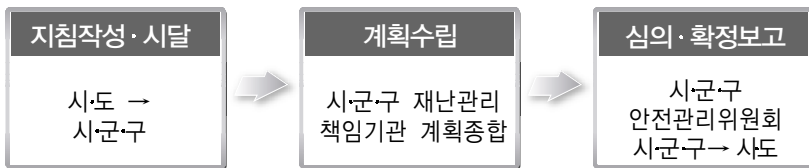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년)



☼ 시·도 안전관리계획(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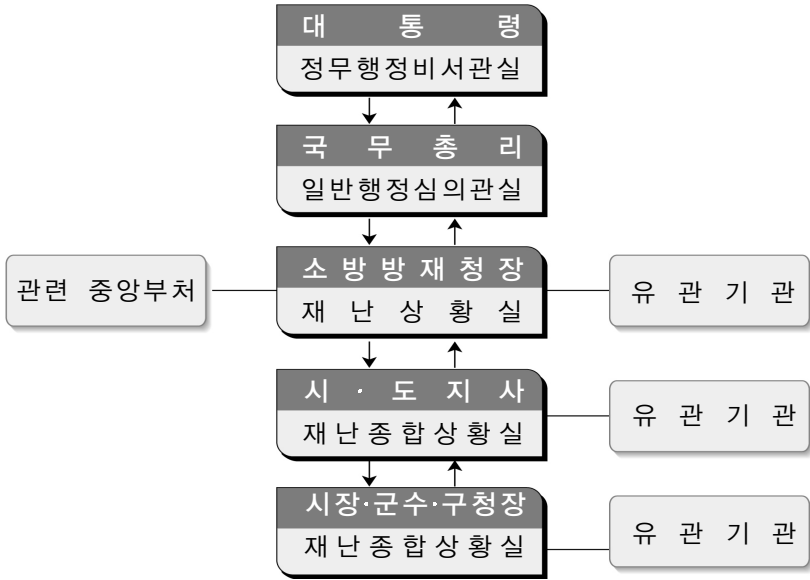
☼ 시·군·구 안전관리계획(1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관리현황

구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총 34개 유형)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우리청 소관 11개 유형)
	재난대책	주관기관	
유 형 별 (16개)	풍수해대책	소방방재청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소방방재청	설해대책
	가뭄재난대책	소방방재청	가뭄재난대책
	지진재난대책	소방방재청	지진재난대책
	해일대책	소방방재청	지진해일(쓰나미)대책
	항공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해일(폭풍해일)대책
	철도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황사대책
	도로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폭염대책
	해상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폭발·대형화재대책
	방사능방재대책	교육과학기술부	건축물 등 시설물재난대책
	전기·유류·가스재난대책	지식경제부	유·도선 안전대책
	폭발·대형화재대책	소방방재청	
	건축물 등 시설물재난대책	소방방재청	
	통신재난대책	방송통신위원회	
	유독물·환경오염사고대책	환경부	
	산업재난대책	노동부	
해외 재난 (6개)	재외공관 등 해외재난대책	외교통상부	
	북한방문 국민 안전대책	통일부	
	해외재난 사상자 지원대책	보건복지가족부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	국토해양부	
	해외관광객 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진출기업체 재난대책	지식경제부		
기타 중요 재난 (12개)	재난방송대책	방송통신위원회	
	방재기상대책	기상청	
	유·도선 안전대책	소방방재청	
	생물재난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산불 방지대책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 안전대책	문화재청	
	수리시설 및 방조제 재난대책	농림수산식품부	
	문화·레저 관련시설 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교통안전대책	행정안전부	
	보육시설 등 안전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군 인력장비지원 및 자체 시설 재난대책	국방부	

1-6 재난상황보고·전파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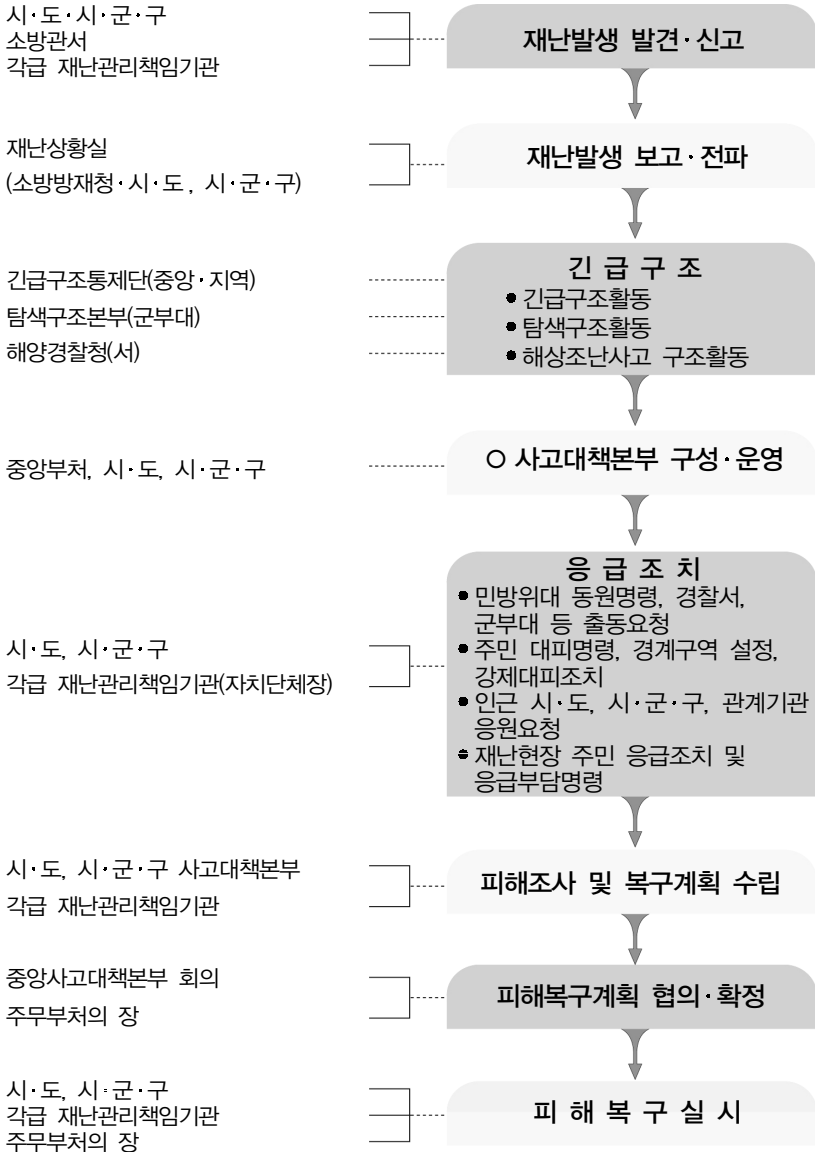
주요 재난관련 유관기관 현황

유 관 기 관	관 련 사 항
기획재정부(건설교통예산과)	◦ 재난관련 예산·재정지원
지식경제부(안전대책반 등)	◦ 가스·전기·광산안전
노동부(산업안전과)	◦ 산업안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국 등)	◦ 체육시설·유원 시설안전 ◦ 극장·호텔 등 시설안전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 군관련안전대책 ◦ 장비·인력지원
산림청(치산과)	◦ 사방, 임도 등 대책

유 관 기 관	관 련 사 항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
지하철·도시철도공사	◦ 지하철안전
농림수산식품부(농산경영과)	◦ 농업시설 및 농작물대책
보건복지가족부(비상계획담당관실)	◦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관리공단(재난관리팀)	◦ 국립공원 통제 등관리
국토해양부 (건설안전심리관실, 하천관리과 등)	◦ 교량·건축물안전 ◦ 하천, 댐 안전
국토해양부(안전조업상황실)	◦ 해양선박·오염사고
환경부(수질보전국 등)	◦ 대기·수질오염사고 ◦ 유해물질사고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검사과)	◦ 원자력안전
교육과학기술부(교육재정지원과)	◦ 교육시설안전
한국철도공사(안전계획처)	◦ 철도안전
한국전기전공사	◦ 전기안전
대한적십자사(구호과)	◦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방송통신위원회(비상기획관실)	◦ 통신시설 관리 및 대책
경찰청(치안상황실)	◦ 차량 인력 등 출입통제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 해양사고 처리 ◦ 선박안전대책
한국도로공사(방재총괄팀)	◦ 고속도로 피해 대책

1-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1-8

안전관리 주요 법령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시 설 안 전	교 량	◦ 도로법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댐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 하천법		국토해양부
	수리시설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항 만	◦ 항만법		국토해양부
	공공청사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유재산관리법 ◦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아파트, 대형건물	◦ 건축법 ◦ 주택법		국토해양부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 건축법 ◦ 유통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호 텔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극 장	◦ 공연법	◦ 건축법	문화체육관광부
	리프트 등	◦ 석도·궤도법		국토해양부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스키장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산업안전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제조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표준화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노동부
	건설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해양부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교통안전	도로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 하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법 	국토해양부
	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법 	국토해양부
	해상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교통안전법 ◦ 어선법 ◦ 선박안전법 ◦ 해양오염방지법 	국토해양부
	수상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화재 등 안전분야	항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 	국토해양부
	화재·폭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본법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 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기공사업법 	지식경제부
	원 자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교육과학기술부
광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보안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수난구조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2. 2010년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종합훈련

2-1 훈련 개요

-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 ❁ **훈련목적** :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검증
- ❁ **훈련일시** : '10. 5. 12 ~ 5. 14 (2박 3일)
- ❁ **훈련참여** : 392기관
 - 참여기관 : 중앙 21, 지자체 240, 공공기관·단체 131
 - 참여규모 : 인원(55,507명), 장비(5,305대)
 - ※ 6개 자치단체 제외(구제역)
- ❁ **훈련방법**
 - 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16개 시·도, 유관기관·단체)

2-2 중점 훈련 내용

- ❁ 지역특성화 훈련과 국가차원의 훈련 연계
- ❁ 국민 참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통합현장훈련 확대실시
- ❁ 민방위 재난경보(민방위훈련)와 연계 실시
- ❁ 유관기관, 민간단체·기업의 자율적인 훈련 참여 확대
- ❁ 국민평가단을 통한 객관적인 훈련 평가 실시

3. 민방위 현황

3-1 민방위 제도

가. 정 의

민방위라 함은

-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 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나. 본 질

☼ 주민 자위활동

-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순수 민간인으로 민방위대 조직

☼ 인도적 활동

-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 정부지도하의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및 비군사적 활동

다.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재난 대응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라. 민방위대 임무

❁ 평상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마. 민방위대 활동현황(자율참여)

연도별 동원현황

'00	'01	'02	'03	'04
20,188대	26,610	23,145	10,652	15,429
371천명	320	572	264	332

'05	'06	'07	'08	'09	'10
0	974	213	183	185	8,933
0	14	30	45	47	268

주요 재난발생시 동원활동

☞ '10년도

- 대설시 응급복구 : 69,058(11~3월)
- 폭우 등 풍수해 예방활동 : 40,553(6~9월)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 18,490(6~8월)
- 연평도 포격도발 복구지원 : 7대 210명(11.23~11.25)
- 지역축제, 안전점검 등 : 139,689(1~12월)

☞ '09년도

- 강원산간지방 폭설시 응급복구 : 25대 4천명(11.2~11.3)

☞ '08년도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제거활동 183대 29천명
(07.12~08.4)
- 산불예방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16천명(4~10)

☞ '07년도

-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피해복구 : 183대 28,977명
- 태풍 나리복구 : 26대 454명
- 산불진화 : 4대 680명

- ❖ '06년도
 - 태풍 에위니아 복구 : 672대 9천명(7월)
 - 설해 복구참여 : 267대 4,052명
진안 1.1-25, 6(284), 부안 1.1-20, 260(3,480),
남원 2.6-10, 1(288)
 - 산불 진화 : 34대 1,071명
순창 3.25-26, 24(600), 군산 4.17 8(421), 순창 5.2, 2(50)
 - 강풍 피해복구 : 1대 275명
김제 6.16, 1(275)
- ❖ '04년도
 - 태풍 “디엔무” , “메기” , 산불 등 : 845대 30천명(3~8월)
 - 중부지방 폭설시 응급복구 : 4,584대 302천명(3.5~3.27)
- ❖ '03년도
 - 태풍 “매미” 시 수해복구 참여 : 10,652대
264천명(9~10월)
- ❖ '02년도
 - 태풍 “루사” 시 수해복구 참여 : 19,598대 498천명(8~9월)
 -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 3,547대 74천명(7~8월)
- ❖ '01년도
 -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 : 16,388대 158천명(1~2월)
 -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 5,909대 81천명(6~7월)
- ❖ '00년도
 -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울진 포함) : 1,421대
41천명('00.4.1~4.14)
 -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 : 2,339대
75천명('00.7~8)

3-2 민방위 편성

가. 편성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 ❖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통리대, 기술지원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

나. 자원 현황('11.1.10)

편성 3,877,197 (45.8)	총자원 : 8,462,937명	제외자 4,585,740 (54.2%)
----------------------------------	-------------------------	------------------------------------

※ 편성대상 : 의무자 20~40세 남자, 지원자 17세이상 남·여

편성현황

구 분	총계(A+B)	의무자(A)	지원자 현황(B)		
			계(C+D)	남자(C)	여자(D)
총 계 (83,556대)	3,877,197명	3,747,866	129,331	66,609	62,722
대 장	83,556명	2,281	81,275	43,777	37,498
대 원	3,793,641명	3,745,585	48,056	22,832	25,224
통리대 (74,142대)	3,404,924명	3,330,646	74,278	36,992	37,286
기술대 (244대)	20,508명	16,358	4,150	978	3,172
직장대 (9,170대)	451,765명	400,862	50,903	28,639	22,264

편성제외자 현황

계	법정(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주민등록말소자	기타
4,585,740명	4,362,090	350	202,470	20,830

※ 법정(당연)제외자 : 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직업훈련생, 심신장애 등

규모별 현황

계	20명 이하	21~50명	5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1,000	1,000명 이상
83,556대 (100%)	25,137 (30.1%)	30,855 (36.9%)	21,475 (25.7%)	5,768 (6.9%)	192 (0.2%)	83 (0.1%)	46 (0.1%)

연령별 현황

계	20세 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3,877,197명 (100%)	19,739 (0.5%)	63,562 (1.6%)	130,655 (3.4%)	1,571,611 (40.5%)	1,976,682 (51.0%)	114,948 (3.0%)

※ 20세 미만 지원자 : 4명

직장민방위대

계	계	국가·학교 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방위 산업체	공공 조합	사기업
대수	9,170대 (100%)	6,353 (69.3%)	889 (9.7%)	55 (0.6%)	177 (1.9%)	1,696 (18.5%)
대원	451,765명 (100%)	138,160 (30.6%)	45,009 (10.0%)	6,323 (1.4%)	5,338 (1.2%)	256,935 (56.8%)

민방위 기술지원대

❖ 규모별 현황 : 대당 평균 84명(*10년 89명)

계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244대 (100%)	71대 (29.1%)	110대 (45.1%)	63대 (25.8%)

❖ 기술자격 소지자 현황

계	의·약사	간호사	전기·통신	토목·건축	화생방	수송	인명구조	기타기술
20,508명 (100%)	5 (0.02%)	-	100 (0.49%)	72 (0.35%)	27 (0.13%)	103 (0.51%)	9 (0.04%)	20,192 (98.46%)

연도별 민방위대 자원 증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대 수		대 원 수		지 원 자
	대 수	증 감	인 원	증 감	
'11	83,556	398대	3,877,197	△54,538	129,331
'10	83,158	△2,680	3,931,735	△58,855	130,641
'09	84,248	△994	3,990,589	△101,017	49,782
'08	85,242	△2,322	4,091,606	△230,618	53,979
'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4,139
'06	89,509	1,471	6,339,745	△111,278	40,573
'05	88,038	△975	6,451,023	14,604	50,923
'04	89,013	△836	6,436,419	197,727	49,731
'03	89,849	221	6,238,692	△42,011	50,880
'02	89,628	△551	6,280,703	△27,428	51,248
'01	90,179	△7,913	6,308,131	△1,197,473	49,218

3-3

민방위 교육

가.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 소방방재청장 : 민방위 교육지침 수립
-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 민방위 교육계획 수립·집행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나. 민방위대원 교육

- ❁ 1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집합교육
 - ❖ 기본교육, 안보교육, 실전훈련
- ❁ 2~4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
 - ❖ 집합교육 : 안보교육, 실전훈련
 - ❖ 민방위의 날 훈련 자율참여
- ❁ 5년차 이상 대원 : 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다. '10년도 민방위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 대상별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전문요원
대 상	1,225,002	1,051,038	133,933	40,031
실 적	1,217,419	1,044,010	133,685	39,724
비 율	(99.4%)	(99.3%)	(99.8%)	(99.2%)

라. 교육과목별 실적

- ❁ 기본교육 : 15,649회, 1,406,168명
 - ❁ 민방위제도, 국가시책, 통일안보 등
- ❁ 체험실습교육 : 21,541회, 2,853,100명
 - ❁ 화생방, 화재, 전기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응급처치, 지진 등

마.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현황

연도	개소	교육장 위치	훈련장 구성
'07년	2개	경기 인양시 동안구 호계3동 764-5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광주 광산구 소촌동 845	화생방(강의장), 응급처치, 소화기
'08년	4개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7-18	화생방(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소화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화생방(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지진강풍
		경북 구미시 사곡동 434	화생방(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9	화생방, 응급처치, 소화기
'09년	4개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화생방(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6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경기 고양시 행신3동 89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10년	4개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교통안전
		경기 파주시 연풍리 419-1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경보
		광주 서구 경열로 33	화생방, 연기체험, 인명구조, 소화기, 지진
		전남 광양시 옥룡면 다목적회관	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

3-4

민방위 훈련

가.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

☞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한 경우 훈련일정 조정 가능

나. 민방위훈련 개요 : 연 9회 실시

☼ 민방공대피훈련 : 연 3회(정기 3월, 8월, 10월)

☞ 공습상황, 을지연습 연계, 화생방 상황 대비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연 3회(5월, 지역재난 2회 / 종합훈련 1회)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다. '11년 민방위 훈련계획

상 황		훈련내용	지역	시 기	경보 발령	교통 통제	주민 대피	비 고
민방공 대피 훈련	정기대피훈련	화생방상황	전국	3월15일	○	○	○	
		공습상황	전국	10월14일	○	○	○	
	불시대피훈련	을지연습과 연계	전국	8월 중	○	○	○	
재난 대비 훈련	전국단위훈련	지진 대비 (SKX훈련과 연계)	전국	5월4일	○	○	○	
	지역재난 대비훈련	풍수해, 산불, 폭설 대비	시·도 1회 시·군·구 1회	수시	△	△	△	현장사태 수습활동 중심
민방위 종합훈련		민관군 실전대응	경기도	9월22일	△	×	×	

3-5

민방위 경보

가. 민방위 경보 연혁

- ❁ 1951. 1. :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 창설
- ❁ 1951. 1. 26 : 내무부 치안국에서 업무인수
- ❁ 1975. 8. 26 :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방위본부에서 경보업무 관장
 - ※ 공·민영 방송망을 이용한 경보방송망 구성('75. 11. 15)
- ❁ 1987~1992 : 민방공경보 자동화사업(161억원)
- ❁ 1996~1997 : 민방위경보 확충사업 추진
- ❁ 1997. 10~ 2001. 12 :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468억원)
 - 시범사업 및 전국확장사업 추진('97. 10~'01. 12)
- ❁ 2002. 5~ 2006. 12 :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173개소)
- ❁ 2006. 1~ 2007. 12 :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 2007~ 2010. : 사도통제소 노후 경보시스템 교체
- ❁ 2009~ 2010.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추진

나. 경보발령 근거

-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19개 부처 공동예규)

다. 민방위경보의 종류

- ❁ 민방공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 재난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대피 등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 구분

라.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전달 수단	경보 종류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경계 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 보	경보 해제	재난 경계 경보	재난 위험경보	재난 경보 해제
방송 매체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 방송	음성 방송	음성 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 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말 시설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평탄음 (1분)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 5초 상승 3초 하강(8회) 반복 : 22회(3분)	음성 방송		음성 방송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 2초 상승 2초 하강(4회) 반복 : 45회(3분)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마.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현황(1,612식)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방위 경보사이렌	1,612	162	122	57	64	43	41	54	200	236	87	65	58	91	175	120	37
(지진해일)	(240)		(28)					(17)		(84)				(10)	(72)	(15)	(14)

바. 민방위경보시설 가동현황

☼ 훈련 민방위경보 발령

구분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현충일 목념사이렌	기타 (시도별 사용)
주기	연 3회(3,8,10월)	년 1회(5월)	년 1회(6월)	수시 (년 500회)
취명 지역	전국	전국	전국	해당지역
취명 주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 재난경보 및 재난예방 안내방송

사도	2007		2008		2009		2010	
	재난 경보	안내 방송	재난 경보	안내 방송	재난 경보	안내 방송	경보	안내 방송
합 계	0	370	9	641	6	1,102	4	1,005
서울	0	0	0	0	0	0	0	0
부산	0	3	0	0	0	6	0	3
대구	0	38	0	56	1	80	0	83
인천	0	18	0	0	0	27	3	43
광주	0	0	0	40	0	79	0	19
대전	0	50	0	7	0	48	0	49
울산	0	47	1	75	0	55	0	35
경기	0	13	0	110	2	145	1	151
강원	0	18	0	43	0	50	0	72
충북	0	63	3	83	0	209	0	170
충남	0	0	0	65	0	48	0	49
전북	0	39	0	31	0	14	0	49
전남	0	9	0	24	3	71	0	54
경북	0	14	1	34	0	88	0	72
경남	0	52	4	37	0	116	0	89
제주	0	6	0	36	0	66	0	67

3-6

화생방

가. 화생방분대 편성현황

* 민방위대별 편성기준

* 기술지원대

☞ 시·군·구 단위로 1개대(20~40명) 편성

* 지역민방위대

☞ 광역시(구), 수도권(시·구)별 동 단위 1개대(12명) 편성.
단, 도 단위 일반 사군은 편성 제외

* 직장민방위대

☞ 중대(100명) 이상 규모의 직장에 1~2개 분대(12~24명) 편성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지역대	직장대
분대수	7,706대	219	4,960	2,527
대원수	57,674명	3,808	26,054	27,812

나.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현황

* 방독면

* 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 주민당 1개, 행정기관 정원 1인당 1개

* 분대장비

* 보호의(대원당 1개), 해독제(대원당 3개), 피부제독제(대원당 1개), 탐지자휴대용제독기(분대당 1개), 오염표지판(분대당 6세트)

구 분	방독면	분대장비
계	326.4 만개	178,430 점
지역 민방위대	270.7	58,885
기술지원대	2.2	31,793
직장 민방위대	53.5	87,752

3-7

민방위 시설장비

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 총소요 : 1,151천톤/일(읍이상 도시지역거주 46,042천명 대상)

✚ 확보 : 6,034개소, 1,139천톤/일(99.0%)

✚ 시설별 현황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 소	6,034	1,311	740	3,983
규 모	1,139	282	135	722

✚ 용도별 현황

(단위 : 천톤/일)

구 분	소 요 량	확보량	
		개 소	확보량
계	1,151	6,034	1,139
음 용 수	414	2,813	562
생활용수	737	3,221	577

나. 민방위 대피시설

☼ 총소요 : 37,985천m²

(읍이상 도시지역거주 46,042천명 대상, 4인 3.3m²기준)


✚ 확 보 : 24,534개소, 84,206천m²(확보율 221.7%)

구 분	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 소	24,534	244	1,865	22,425
규 모 (천m ²)	84,206	85	4,909	79,212

✚ 화생방시설 현황

시·도별	규모 (m ²)	준공 년도	시 설 위 치	비 고
계(11)	11,848			
부산(2)	660	2000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 장치, 제독실구비
	683	2000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광주(1)	1,155	2003	서구 치평동(광주시청)	
울산(1)	1,108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경기(3)	99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765	2000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1,610	2009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청)	
충남(1)	660	2001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센터)	
전북(1)	2,257	2005	전주시 완산구(전북도청)	
전남(1)	1,155	2005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	
경남(1)	805	2000	양산시 (공설운동장)	

다. 민방위 장비

 장비별 확보 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계	208,237	122,115	72,977	13,145
전자메가폰	44,626	30,490	11,027	3,109
지휘용앰프	9,375	4,531	4,281	563
응급처치세트	31,542	18,277	11,512	1,753
환자용 들것	26,216	15,358	9,226	1,632
휴대용조명등	56,715	29,397	24,111	3,207
교통신호봉	39,763	24,062	12,820	2,881

4-1

유·도선 안전관리 개요

가. 관계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10432호 '11.3.7)
- ❁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624호 '11.1.17)
- ❁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11.3.18)

나. 관리체계(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 ❁ 내수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다. 추진계획

- ❁ 2011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우리 청에서 지침 마련, 시·도, 시·군·구 수립)
- ❁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 성수기 공휴일 현장지도 공무원 배치
- ❁ 행락철 안전운항 지도·점검계획 수립 추진
- ❁ 유·도선사업법 위반사항 강력한 단속 실시
- ❁ 시·도 단위 사고 가상 실제훈련 실시

4-2 전국 유도선 현황

가. 선 박 : 2,380척(유선 2,315, 도선 65)

☘ 형태별

- ☞ 동 력 선 : 89척(유선 40, 도선 49)
- ☞ 무동력선 : 2,185척(유선 2,185)
- ☞ 모터보트 : 106척(유선 100, 도선 6)

☘ 규모별

- ☞ 5톤 미만 : 2,313척(유선 2,292, 도선 21)
- ☞ 5톤 이상 : 67척(유선 33, 도선 34)

나. 선착장 : 147개소(유선장 110, 도선장 37)

시·도	선착장수	선 박 수(척)			무동력	규 모 별(척)					시·군수
		계	유선	도선		동 력 선	동 력 선			모터보트	
							소계	5t 미만	5~100t		
합 계	147 (37)	2,380	2,315	65	2,185	89 (49)	22 (15)	59 (32)	8 (2)	106 (6)	51
서울	24 (5)	388	378	10	349	6	-	-	6	33	2
대구	12	250	250	-	248	2	-	2	-	-	2
인천	1	102	102	-	102	-	-	-	-	-	1
광주	1	30	30	-	30	-	-	-	-	-	1
대전	1	30	30	-	30	-	-	-	-	-	1
경기	38 (5)	734	729	5	704	11 (5)	6 (3)	5 (2)	-	19	15
강원	35 (14)	370	337	33	299	32 (27)	8 (5)	24 (22)	-	39 (6)	8
충북	13 (8)	46	35	11	23	19 (11)	6 (6)	11 (3)	2 (2)	4	5
충남	3	36	36	-	24	8	-	8	-	4	4
전북	4	124	124	-	122	-	-	-	-	2	3
전남	2	37	37	-	31	1	-	1	-	5	2
경북	11 (5)	188	182	6	179	9 (6)	1 (1)	8 (5)	-	-	5
경남	2	45	45	-	44	1	1	-	-	-	2

※ () 내서는 도선 숫자임

4-3 유·도선 사고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대 형 사 고		소 형 사 고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소 계	39	사망 176 부상 144	6	사망 130 부상 91	33	사망 46 부상 53
1983	7	사망 6 부상 15	-	-	7	사망 6 부상 15
1984	8	사망 29 부상 17	1	사망 10	7	사망 19 부상 17
1985	3	사망 28 부상 1	2	사망 27	1	사망 1 부상 1
1986	2	사망 29 부상 26	1	사망 28 부상 26	1	사망 1
1987	1	사망 36 부상 29	1	사망 36 부상 29	-	-
1988	2	사망 3	-	-	2	사망 3
1989	3	사망 3	-	-	3	사망 3
1990 ~ 1993	없음	-	-	-	-	-
1994	3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5
1995	3	사망 3	-	-	3	사망 3
1996	1	사망 2	-	-	1	사망 2
1997	4	사망 2 부상 13	-	-	4	사망 2 부상 13
1998	2	사망 1 부상 7	-	-	2	사망 1 부상 7
1999 ~ 2009	없음	-	-	-	-	-
2010	1	사망 1	-	-	-	사망 1

※ 대형사고는 10명 상당의 사망자 발생사고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범위 및 지정 현황

5-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범위

근거 법령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예방 조치)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3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범위

시설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 시설	교 량	11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100m 이상 놓여준 교량 (비법정도로)	-
	터 널	12	○ 연장 500m미만의 터널 전수관리	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제외
	육 교	13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u>지하차도</u>	14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
지하도 상가		19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
스 키 장		20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 (리프트 등) 포함	-
삭도·궤도		30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 (리프트 등)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40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제2장 예방안전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토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51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52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전수관리	-
수상 안전 시설	유·도 선	61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 (해수면제외)
	수상레저 시설	62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해수면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62-1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63	◦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위험지역 -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한 지역	-
축대·옹벽·석축		70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 100m 미만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건축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10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 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	
공동 주택	아 파 트	21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22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판매시설		3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5,000㎡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	
다중 이용 건축물	공 인 업 종 중 대 형 숙 박 시 설	32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연면적5,000㎡ 이상)제외	
		32-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종합여객시설		33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
	공연시설		34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 등	-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집회시설	35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 5,000㎡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
다중 이용 건축물	관람· 전시시설	36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
	의료시설	37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합병원(연면 적5,000㎡이상) 제외
	종교시설	37-1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 5,000㎡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위락· 휴게시설	38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
	청소년 수련시설	39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
	비디오·게임 제공업	39-1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
	산후조리원	39-2	○ 전수관리	-
	고 시 원	39-3	○ 전수관리	-
	기타 다중이용업	91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
	대형건축물	40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 건축법 제23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
대 형 광 고 물	60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옥상간판 등)	-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71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전수관리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72		-
위험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81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 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 설	82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 취급시설	83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	85	○ 산업단지별 관리	-
	농공단지	86	○ 산업단지별 관리	-
신 업 종 종	번지점프장	92	○ 전수관리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제외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5-2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현황


합 계

(2010.12.31 현재)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 계	D등급	E등급
합 계	109,364	108,492	46,450	54,646	7,396	872	812	60
시설물	11,714	11,560	3,639	6,187	1,734	154	147	7
건축물	97,650	96,932	42,811	48,459	5,662	718	665	53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 시 설 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 계	D등급	E등급	
합 계	11,714	11,560	3,639	6,187	1,734	154	147	7	
도 로 시 설	소 계	9,062	8,953	2,044	5,414	1,495	109	104	5
	교 량	7,901	7,794	1,723	4,660	1,411	107	102	5
	터 널	123	123	67	49	7	-	-	-
	육 교	701	700	190	449	61	1	1	-
	지하차도	337	336	64	256	16	1	1	-
지하도상가	24	24	2	22	-	-	-	-	
스키장	19	19	12	7	-	-	-	-	
삭도·궤도	49	49	40	9	-	-	-	-	
유원시설	148	148	105	43	-	-	-	-	
토목 공사장	소 계	791	767	705	56	6	24	24	-
	대형공사장	777	753	694	53	6	24	24	-
	중단공사장	14	14	11	3	-	-	-	-
수상 안전 시설	소 계	567	566	422	137	7	1	1	-
	유도선	84	84	45	39	-	-	-	-
	수상레저시설	204	203	182	19	2	1	1	-
	래프팅보트시설	279	279	195	79	5	-	-	-
물놀이 위험구역	162	162	113	18	31	-	-	-	
축대·옹벽·석축	892	872	196	481	195	20	18	2	

 건축물 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 시설 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D등급	
합 계	97,650	96,932	42,811	48,459	5,662	718	665	53	
지방공공청사	5,334	5,326	3,382	1,770	174	8	8		
공동주택	소 계	45,176	44,628	7,484	32,623	4,521	548	500	48
	아파트	31,817	31,381	5,662	23,140	2,579	436	396	40
	연립주택	13,359	13,247	1,822	9,483	1,942	112	104	8
다중이용건축물	소 계	31,249	31,221	20,247	10,299	675	28	23	5
	판매시설	1,514	1,490	573	727	190	24	19	5
	대형숙박시설	4,729	4,729	3,601	1,105	23	-	-	-
	대형목욕장	1,499	1,499	1,156	338	5	-	-	-
	종합여객시설	273	272	120	142	10	1	1	-
	공연시설	527	527	442	78	7	-	-	-
	집회시설	1,003	1,001	685	306	10	2	2	-
	관람·전시시설	618	617	434	156	27	1	1	-
	의료시설	2,276	2,276	1,663	577	36	-	-	-
	종교시설	8,258	8,258	5,064	2,995	199	-	-	-
	위락·휴게시설	2,236	2,236	1,328	861	47	-	-	-
	청소년수련시설	429	429	310	105	14	-	-	-
	비디오·게임제공업	1,358	1,358	1,015	336	7	-	-	-
	산후조리원	392	392	312	80	-	-	-	-
	고시원	5,488	5,488	3,233	2,164	91	-	-	-
기타 다중이용업	649	649	311	329	9	-	-	-	
대형건축물	6,085	6,085	4,145	1,742	198	-	-	-	
대형광고물	2,181	2,181	1,687	477	17	-	-	-	
건축공사장	소 계	1,854	1,720	1,342	312	66	134	134	-
	대형공사장	1,433	1,301	1,107	171	23	132	132	-
	중단공사장	421	419	235	141	43	2	2	-
위험물시설	소 계	5,325	5,325	4,198	1,119	8	-	-	-
	가스취급시설	5,043	5,043	4,011	1,028	4	-	-	-
	유독물취급시설	200	200	145	52	3	-	-	-
	화합물취급시설	82	82	42	39	1	-	-	-
공장	소 계	435	435	318	114	3	-	-	-
	지방공단	127	127	99	25	3	-	-	-
	농공단지	308	308	219	89	-	-	-	-
산업중증	번지점프장	11	11	8	3	-	-	-	-

6. 주요 인적재난 현황

6-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93-'10년)

가. 지역별

시·도	건수	내 용
계	118	
서울	17	성수대교('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94), 삼풍백화점 붕괴('95), 용산 중산APT 화재('97),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97), 여의도 공동구 화재('00), 중곡동 신경외과 화재('00), 홍제동 주택 화재 및 건물 붕괴('01), 세곡동 비닐단지 화재('01), 미아동 LP가스 폭발('01), 금호미술관 가스 누출('01), 불광시장 상가건물 붕괴('01), 삼선동 주택붕괴('0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붕괴('05),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06) 송례문 화재('08), 정부 중앙청사 화재('08)
부산	13	구포열차 전복('93), 구포대교 버스 추락('97), 장림동 화학약품공장 폭발('98), 부산골드프라자 화재('98), 바지선 폭발('99), 부일외고 수학여행 교통사고('00), 대우조선 헬기 추락('01), 시내버스 교통사고('01), 금정구 교통사고('03), 다대포항 앞선박좌초('06), 영도 카니발놀이 기구추락 사고('07), 영도구 상하이노래연습장 화재('09), 남포동 여인숙 화재('09)
대구	7	대구도시가스 폭발('95), 골든프라자 오피스텔 지하 붕괴('97), 지하철공사장 붕괴('00), 88고속도로 교통사고('00),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대구수성구 열차 추돌사고('03), 수성동 목욕탕 폭발·화재('05)
인천	4	인천 미사일 폭발('98), 인천호프집 화재('99), 부평구 가스폭발('02) 인천대교 버스교통 사고('10)
대전	1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01)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시·도	건수	내 용
경기	23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95), 광명시장 화재(*95), 남한강버스 추락사고(*96), 동두천 산불(*96), 과천경마장 사고(*96), 인양 연립주택 붕괴(*96), 부천 LPG가스 폭발(*97), 청북상수도가압장 붕괴(*98), 부천 LPG가스충전소 폭발(*98), 화성 씨랜드 화재(*99), 성남시 단란주점화재(*00), 인산시 공장 폭발화재(*00), 광주예지학원 화재(*01), 평택 화영아파트 LPG 폭발(*03),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04), 철산역 전동차 화재(*05),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05), 이천 냉동창고 화재(*08), 용인 고시원 화재(*08), 이천 물류창고 화재(*08)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09),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09), 천안 우체국 공사현장 매몰(*09)
강원	10	태백탄광 매몰(*96), 고성 산불(*96), 북한강 준설선 침몰(*96), 장성 광업소 탄광사고(*97), 강릉 산불(*98), 동해 산불(*98),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98), 동해안 산불(*00), 양양산불(*05),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사고(*06)
충북	3	우암상가 APT 붕괴(*93), 충주호 유람선 화재(*94), 경부고속도로(옥천) 교통사고(*02)
충남	10	논산 정신병원 화재(*93), 천안여관 화재(*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02), 경부고속도로(천안) 교통사고(*02),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재(*02), 천안초등학교 화재(*03), 서해대교 교통사고(*06), 당진동부제강 부두공사장 붕괴(*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07), 서천군 마량항 어선충돌 사고(*09)
전북	5	서해웨리호 침몰(*94), 남원 철도건널목 충돌(*97), 익산 LPG가스충전소 폭발(*98), 순창 용수로터널공사 안전사고(*01), 군산 개복동 대기주점 화재(*02)
전남	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93), 제5금동호 충돌(*93), 화순 철도건널목 충돌(*95),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95), 목포 주상복합건물 붕괴 위험(*97), 여천공단 폭발화재(*00),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01),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07년),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07)
경북	6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재(*01),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03),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03),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05) 인덕 노양요양센터 화재(*10),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교통사고(*10)
경남	5	거창산불(*97), 진주 관광버스 추락(*01), 김해 「에어치이나」 추락(*02), 마산 미도장여관 화재(*02), 창녕 화왕산 역사플래타우기 안전사고(*09)
제주	2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00),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재(*06)
기타	3	KAL여객기 추락(*97), 베트남기 추락(*97), 골든 로즈호 충돌·침몰 사고(*07)

나. 연도별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3년	5건	498	209	289		
1. 7	우암상가 APT 붕괴 (충북 청주시)	76	28	48	상가 52개, APT 59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3.28	구포 열차 전복 (부산 북구)	274	78	196	기관차, 객차, 선로 시설 파손	한전의 지중선사업을 위하여 철도횡단 지하 터널식 굴착작업 중 철도노선 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 화재 (충남 논산시)	36	35	1	조립식건물 1동 소실	담배불에 의한 인화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전남 해남군)	110	66	44	비행기 1대 파손	아시아나항공 737편이 질은 안개와 강풍으로 목포공항 착륙 실패(3회)후 광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
9.27	제5급동호 총돌 (전남 여천시)	2	2	-	선박 1척 파손 인근해역 유류 오염	가해선의 안전사항 위반, 피해선의 통행로 위반 및 선박간 정보 교환 미이행으로 총돌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4년	4건	589	365	224		
10.10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362	292	70	선박 1척 침몰	초속 10~14m의 강풍과 4~5m의 높은 파도를 무시한 출항과 승선 정원 221명에 141명 초과한 362명 승선과 수화물 등의 배 상부 적재에 따른 복원력 상실
10.21	성수대교 붕괴 (서울 성동구)	49	32	17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파손	용접시공의 결함, 제작 오차 등 부실 시공된 교량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초과 및 피로하중이 급진전되어 상판 48M 붕괴
10.25	충주호유람선 화재 (충북 단양군)	65	29	36	유람선 1척 소실	충주호 단양선착장에서 충주간 운항중 구단양 철교부근에서 기관실에 원인불명으로 화재발생
12. 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서울 마포구)	113	12	101	건물145동, 차량92대 파손, 물품 431건 파손	계량기 점검시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모닥불 불씨에 점화 폭발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5년	6건	1,836	659	1,177		
4.11	화순철도 건널목 충돌 (전남 화순군)	33	15	18	버스 1대 전파 (25백만원)	시내버스가 철도 건널목 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건너는 도중 부산행열차(비 둘기호 902호)와 충돌
4.28	대구도시 가스 폭발 (대구 달서구)	303	101	202	건물 34동, 차량 150대 파손 (4,718백만원)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의 그라우팅공사 도중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약77m 떨어진 지하철 공사장에 가스유입, 원인 불명의 화인에 의해 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서초구)	1,440	502	938	건물1동, 차량310대, 869개입주 업체물품 파손	설계 및 시공이 부실한 건축물에 설계 하중 초과 사용으로 A동북쪽 콘크리트내력벽을 제외한 A동 건물전체가 지하까지 각층 스라브가 차곡차곡 붕괴
7.2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전남 여천군)	1	1	-	선박 1척, 인근해역 유류오염 (52,113백만원)	태풍 피항차 출항, 선미 (기관실부위) 충돌로 기관실내 화재로 표류 중 암초에 좌초, 방카 C-유약 700여톤 유출
8.21	경기 여자기술 학원 화재 (경기 용인시)	53	40	13	건물1동, 의류, 집기류 100여점소실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
12.31	광명시장 화재 (경기 광명시)	6	-	6	점포 186개 소실 (147백만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 (추정)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6년	7건	423	44	379		
2.11	과천 경마장 사고 (경기 과천시)	341	-	341	물품93건 분실·파손	분말소화기 안전핀이 빠져 분사된 분말을 가스폭발로 오인, 대피 과정에 사고발생
4.3	남한강 버스 추락 (경기 양평군)	59	22	37	버스1대 전파	운전자 부주의(방심 또는 졸음추정)로 시내버스가 남한강에 추락
4.23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시)	8	7	1	산림 4.9ha 소실	미2사단에서 소총사격 훈련중 연막탄에 의해 발화
4.23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군)	-	-	-	산림3,762ha, 건물227동, 가축718두, 유실수 21,052본, 집기류 12,133점등 소실 (22,717백만원)	사격장내에서 폐기 TNT를 처리중 파편이 튀어 발화
8.18	북한강 준설선 침몰 (강원 춘천시)	-	-	-	골재준설선 1척 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만미 폐사	기관실 엔진 냉각수 파이프드레인밸브 탈거로 인한 하천수 유입으로 부력상실· 침몰
8.28	안양 연립주택 붕괴 (경기 안양시)	-	-	-	연립주택1동완 파, 연립주택 2동반파 (2,490백만원)	공사장 지하 10m정도 터파기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12.11	태백 탄광 매몰 (강원 태백시)	15	15	-	갱도 40m 붕괴	갱내 작업장 상부 침투수가 기존갱내 공동에 집수하여 있다가 채탄 작업중 분출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7년	11건	363	285	78		
1.18	대구 골든프라자 오피스텔 붕괴 (대구 북구)	-	-	-	골든프라자 지하5~7층 옹벽 및 바닥 침하 이재민 16세대 65명	설계부적정 및 시공 불량으로 오피스텔 지하 5~7층 옹벽의 파손 및 정덕공전빌라 주차장 일부 침하
2.28	목포주상복합 건물붕괴위험 (전남 목포시)	-	-	-	건물1동(4층) 철거 이재민 1세대 5명	기초지반이 매립지로 불안정하여 압밀되면서 발생된 공동이 무너지면서 기초 침하됨
3. 4	부천 LPG가스 폭발 (경기 부천시)	14	3	11	주택파손 16동 이재민 28세대 70명	지상 1층 세입자의 부부 싸움끝에 LPG가스를 폭발시켜 건물1동붕괴
3.24	남원 철도 건널목충돌 (전북 남원시)	32	16	16	버스1대 전파 (43백만원)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행 열차 (무궁화호 282호)와 충돌
3.27	구포대교 버스 추락 (부산 북구)	6	5	1	버스1대 전파	운전부주의에 의한 버스 추락
3.30	용산 중산APT 화재 (서울 용산구)	17	2	15	APT 8가구 소실, 이재민 26세대 85명	미상
4.13	경남 거창산불 (경남 거창군)	2	2	-	산림 3ha 소실	입산자 실화
5.14	한진APT 축대 붕괴 (서울 성북구)	7	1	6	승용차 7대, 인근상가일부 파손	침수로 인한 축대붕괴로 토사유출
8. 6	KAL기 추락 사고 (괌 - 미국령)	254	229	25	비행기 1대 파손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 안내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착륙실패 추정
9. 3	베트남기 추락사고 (캄보디아)	21	21	-	외국비행기 1대 파손	악천후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눈에 추락
10.21	장성광업소 탄광사고 (강원 태백시)	10	6	4	-	전기 스위치를 조작 하다 스파크로 인해 갱안에 고여 있던 메탄가스폭발 화재발생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8년	9건	239	47	192		
2. 3	청북 상수도 가압장 붕괴 (경기 평택시)	11	5	6	건축물스라브 및 기둥(18 개소) 파손	높이 11m의 배수지동 바리 부실과 콘크리트 타설순서 무시 등으로 비틀림 변위 발생
3. 3	장림동화학약품 공장 폭발 (부산 사하구)	41	1	40	공장건물1동 붕괴차량 37대 파손	비누연료제조중 가마과열 폭발
3.29	강릉 산불 (강원 강릉시)	-	-	-	산림350ha, 건물74동 이재민 29세대101명 (2,344백만원)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추정)
3.29	동해 산불 (강원 동해시)	-	-	-	산림 250ha소실 (685백만원)	담배불 실화 (학생실화)
9.11	부천LPG가스 충전소 폭발 (경기 부천시)	84	1	83	공장건물 등 12동 소실 LPG충전소 소실 차량 122대 소실 등 (9,591백만원)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 탱크에 가스 충전작업 중 부주의로 누출된 이음새가 이탈되면서 누출된 가스에 미상의 화인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추정
10. 6	익산LPG가스 충전소 폭발 (전북 익산시)	14	1	13	충전소소실 건물160동 일부파손 차량24파손 (3,146백만원)	영업용택시에 가스를 주입하던중 중간안전 밸브가 파손 되어 누출 된 가스가 원인 미상의 화인에 의해 폭발
10.23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 (강원 평창군)	34	12	22	버스2대 파손	강릉방면으로 운행중 이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충돌
10.29	부산 콜드프라자 화재 (부산 서구)	43	27	16	신축중인 냉동창고 (지하2층, 지상8층)소실	전기합선으로 발화(추정)
12. 4	인천 미사일 폭발 (인천 연수구)	12	-	12	차량176대, 인근상가, 주택75동	미사일(나이키허큘리스) 시험점검중 오발(추정)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9년	3건	174	83	91		
5.31	바지선 폭발 (부산 사하구)	9	3	6	선체보수용 접중 폭발 (198백만원)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인화 폭발한 것으로 추정
6.30	'씨랜드' 화재 (경기 화성군)	28	23	5	건물1동 전소, 기타집기 파손 (72백만원)	모기향불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추정
10.30	호프집 화재사고 (인천 중구)	137	57	80	건물1동(지하1 층, 지상4층)전소(6,480만원)	노래방 종업원들의 실화에 의한 화재발생
'00년	10건	320	80	240		
1.22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대구 중구)	4	3	1	지하철공사중 지반붕괴 및 버스1대 파손	터파기 공사중 가시선이 토압에 밀리면서 지반붕괴
2.18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서울 영등포구)	-	-	-	통신선 및 전화선약 33,000 회선 소실	공동구내 전력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추정
4. 7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17	2	15	산림피해 23,138ha 등 피해발생 (100,100백만원)	고성산불 : 군소각장의 불씨에 의한 발화 강릉, 동해, 삼척 : 미상
7.14	부일외고 수학여행교통사고 (부산)	115	18	97	버스2대 전소, 기타차량 전소	급경사 커브길에서 빗길 과속과 안전 운전 소홀
8.24	여천공단 폭발화재사고 (전남 여수시)	25	6	19	건물 4개동 및 승용차 20대 파손 (540백만원)	냉동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제품포장과정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
10.18	성남 단란주점 화재사고 (경기 성남시)	7	7	-	건물내부 소실 (20백만원)	룸내 환풍기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추정
10.27	88고속도로 교통사고 (대구 동구)	27	21	6	버스, 무쏘, 트럭 각 1대 전파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정면충돌
11. 2	안산 공장폭발 화재사고 (경기 안산시)	53	6	47	2층 철골조 3동 파손 (260백만원)	위험물 혼합과정중 탱크폭발에 의한 화재 발생 추정
11. 8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 (제주 북제주군)	39	9	30	관광버스 1대 전파	성산포방항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후 전복됨
11.11	중곡동 신경정신과 의원 화재 (서울 광진구)	33	8	25	병원내부 일부 소실	신원미상의 정신질환자가 지하1·3층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1년	14건	369	80	289		
1. 10	포항시 세라프할인 매장 화재 (경북 포항시)	53	5	48	양식 철골조 칼라시트 2층 2동 1,423평	용접중 불티에 의한 착화
1. 19	순창군 용수로 터널 공사사고 (전북 순창군)	5	5	-	용수로터널 일부 붕괴	암반파라 중 안전 부주의
3. 4	홍제동 주택화재 및 붕괴 매몰사고 (서울 서대문구)	9	6	3	주택 80평 1,2층 붕괴	화재진화 및 인명 검색 중 건물붕괴
3. 4	강남구 세곡동 비닐단지 화재사고 (서울 강남구)	10	10	-	화훼용비닐하우스 111 개동 전소 등 약(11백만원)	전기누전으로 추정
4. 8	미아동LP가스폭발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24	-	24	건물 1, 2층 22평 붕괴	LP가스폭발
5.16	경기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 (경기 광주시)	33	10	23	양식조림식 판넬 5층 및 집기류 소실	담뱃불에 의한 발화 (추정)
5.28	금호미술관 가스누출사고 (서울 종로구)	59	1	58	전시관 2층 일부 유리파손	소화설비 임의조작
7. 5	대우조선 헬기추락사고 (부산지방항공청)	12	8	4	헬기(S76B) 1대 전파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추정)
7.19	부산 시내버스 교통사고 (부산 동래구)	30	2	28	버스 1대 전파	추돌에 의한 브레이크 파열
7.24	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남 진주시)	40	23	17	버스 1대 전파	과속운행 및 안전 벨트 미착용
8. 3	천안시 여관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16	6	10	객실 32개 380평 전소 (45백만원)	지하 기계실 발화에 의한 화재
8. 6	대조시장인근 상가건물 붕괴 (서울 은평구)	11	1	10	건물 1, 2층 전파	건물노후로 인한 붕괴
9.15	순천 단란주점 가스 폭발사고 (전남 순천시)	38	3	35	건물 1층 바닥, 1층 스타브 균열	지하실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12.29	대전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사고 (대전 동구)	29	-	29	주택붕괴1, 차량피해 24, 이재민 2세대 5명	2층 건물 1층에서 가스누출 폭발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2년	8건	301	203	98		
1.29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 (전북 군산시)	15	15	-	1,765만원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 난방용 전기히터 과열로 주위 가연물질 착화
2.10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충남 천안)	33	15	18	버스1대전파	운전부주의 (중앙분리대 침범)
3.20	인천 부평구 LP가스 폭발 (인천 부평구)	27	6	21	건물전파1, 반파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가스판매업자 부주의
4.15	김해에어 차이나 추락사고 (중앙사고대책 본부 :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 사고대책본부)	166	129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 보잉 767-CA 129편 전파 (북경←김해 정기운항)	비와 안개로 관제탑 선회 명령받고 선회 중 김해시 지내동 동원APT뒤산 8부 능선에 추락폭발
5. 1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사고 (경남 마산시)	15	9	6	3층 384㎡ 전소, 4~6층 그을림 재산 31.5백만원 (동산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전기원인 또는 노숙자 실화 추정
5. 9	임마뉴엘복음 수양관화재사고 (충남 부여군)	4	4	-	철골스라브 일부소실 (12백만원)	보일러연통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옥천)교통사고 (충북 옥천군)	32	16	16	고속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12.10	금매복지원 화재사고 (충남 서천군)	9	9	-	부속건물 108㎡ 소실	천정부 전기합선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3년	7건	577	245	332		
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대구시 사고 사고대책)	340	192	148	615억원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 피해 45억원)	방화
3.26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25	9	16	단층 슬라브 건물 33평 전소 (1,600만원)	축구부 합숙소 주방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
6.20	부산 금정구 교통사고 (부산 금정구)	50	9	41	버스(34인승) 전파 1대, 승용차 반파 1대	브레이크 파열
8. 8	대구 수성구 열차 추돌사고 (철도청, 대구 수성구)	97	2	95	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 반파	신호대기 중 추돌
10.21	경북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도, 봉화군, 대구 달서구)	31	19	12	버스(47인승) 1대 전파	브레이크 결함
11.17	평택 화영아파트 LPG폭발사고 (경기 평택시)	16	2	14	재산 657백만원 (동산 207, 부동산 450)	LPG가수 누출로 실내 폭발
12.17	경북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사고 (경북 청도군)	18	12	6	재산 87백만원 (버섯재배공장 2,984㎡ 소실)	1층 냉각장을 배양장으로 바꾸기 위해 철구조물 해체작업 중 용접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4년	2건	7	-	7		
9. 6	안양 제일연인숙 붕괴사고 (경기 안양시)	6	-	6	3층건물 전파	건물(197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한 붕괴
9.17	서울 삼선동 주택 붕괴사고 (서울 성북구)	1	-	1	주택 1개동완파, 3개동 일부 파손 ※ 이재민 7세대 13명	건축물 노후화 (1968년)로 인한 붕괴
'05년	6건	249	26	223		
1. 3	경기 철산역 전동차 화재사고 (경기 광명시)	1	-	1	237백만원 (전동차 3량 소실, 터널유치선 소손)	방화
4. 4	양양 산불 (강원 양양군)	-	-	-	산림 973ha건물 544동등 230억 ※ 이재민 165세대 420명	입산자 실화추정
6.2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8	1	7	2층 건물 전파	리모델링 공사중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붕괴
9. 2	대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화재사고 (대구 수성구)	54	5	49	피해건물 전소, 주변건물 28동 유리창 파손, 차량 27대, 가로등 1개 파손 등	지하 기름탱크 유증기 폭발
10.3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 (경북 상주시)	172	11	161	-	공연관람을 위해 출입문에 운집해 있던 군중압사
10.6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경기 이천시)	14	9	5	-	시공순서 무시 및, 무리한 시공추진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6년	5건	169	19	150		
9. 8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	66	-	66	-	중앙집중 냉온수기 가동중 LNG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발생
9.10	강원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	2	-	2	모델하우스1동, 식당1동, 모델부분소실 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9.18	제주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화재사고	21	1	20	은하빌라 301호(79㎡) 전소 및 인접건물 3개동 파손 인접건물 24개동 유리창 파손 및 차량 16대 파손	거주자가 LPG가스를 고의 누출로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
9.28	부산 다대포앞 해상선박 좌초사고	12	7	5	가성스피트호 (6.7t)침몰	좌초
10.3	서해대교 교통사고	68	11	57	25t화물차량 등 30여대 파손 및 일부 화재발생	서해대교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7년	6건	58	41	17	55백만원	
2.11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 소 화재사고	17	10	7	5백만원	우출입국 사무소에 수용중인 중국인이 방화 후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하기위해 인위적으로 방화
4. 5	전남 고흥군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	12	5	7	-	교량 상판 스톱 작업 중 동바리가 붕괴되어 작업중인 인부 사망
5.12	골든 로즈호 충돌 ·침몰 사고	16	16	-	-	중국 대련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중국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8.13	부산 영도구 월드카니발 놀이기구 추락사고	5	5	-	-	회전놀이기구인 관람차의 볼트가 출입문에 끼여 고착 상태로 운행 중 뒤따르던 관람차와 충돌 투명창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추락
10.19	충남 당진 동부제강 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	8	5	3	50백만원	철재거푸집 설치후 레이콘 타설시 철재 거푸집 붕괴로 작업 중인 인부 사망
12.7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	-	-	어장 29,454ha 해안70km 오염	삼성 T-5호로 예인 하던 크레인부선이 강풍에 로프가 절단 되어 대산항 입항 대기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8년	5건	70	48	22		
1.7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50	40	10	715천만원	신축건물 마무리 공사중 내부에 채한 가연성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2.10	서울 송례문 화재	0	0	0	문루 1층 10% 물리적파손, 2층 90%손실 등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방화
2.21	정부 중앙청사 화재	0	0	0	5층 503호, 504호, 142㎡소실	컴퓨터 모니터 전원코드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 추정
7.25	경기 용인 고시원 화재	7	1	6	35,000천원	방화추정
12.5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13	7	6	53,100천원	용접부주의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9년	5건	88	7	81	90,000천원	
1.15	부산 영도구 상하이 노래 연습장 화재	9	8	1	30,112천원	6번 룸 천정 환풍기 전기배선 단락으로 플라스틱 캡이 아래 소파에 떨어져 연소 확대추정(연기흡입)
2.9	경남 창녕 화왕산 역새플 태우기	88	7	81	90,000천원	역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불길 미처 피하지 못한 관람객을 덮침
2.15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	11	3	8	공사장 붕괴 등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지반약화로 추정 되는 붕괴 발생
6.21	부산 남포동 여인숙 화재	6	5	1	20,813	2층 1호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연기흡입)
7.25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	13	5	8	크레인붕괴 등	갠트리크레인과 상판 끝조각 버팀대가 쇠사슬로 연결된 것을 풀지 않고 크레인을 이동시키다 상부구조물 (런칭거더) 지지대를 때려 붕괴시킨 사고로 추정

제2장 예방안전 분야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10년	5건	83	32	51		
7.3	인천대교 버스교통 사고	24	13	11	버스 및 가드레일 파손 등	인천 송도 인천대교(요금소 400M지점, 공항방향)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고장차량 등을 피하려다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
7.26	천안 청당동 우체국 공사현장 매몰사고	3	1	2	공사장 붕괴 등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작업 중 비탈면의 흙이 무너져 매몰
9.24	충남 서천군 마량항 어선충돌 사고	1	1	0	20,000천원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이 인근 어선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인명피해 발생
11.12	인덕 노인요양 센터 화재	26	10	16	4,500천원	전기 배전반 스파크 가 원인으로 추정(국과수)되며 화재 발생시 혼자서 거동 조차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음
12.3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29	7	22	차량3대 전소 10대 파손	새벽 도로결빙 등으로 주행하던 탱크로리와 승용차 등 연쇄추돌 사고 및 화재 발생

6-2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06~'10)

물놀이 사망사고는 연 150명 정도 발생하여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으며 특히, 짧은 기간(6~8월)에 집중발생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 추진

- ❖ 하천, 신간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 사전대비대응기간 설정, T/F 운영, 휴일비상근무 등 현장 예방점검체계 강화
 - ※ 사전대비 기간(4.15~5.31), 대응기간(6.1~8.31)
- ❖ 대국민 물놀이 안전의식 확산
 - 구명조끼 패션쇼, 물놀이 위험주간, CF제작·TV광고, 공모대회(포스터·UCC·캐릭터)
 - 위험구역 지정, 퇴거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본법 제82조, 150만원 이하)
 - ※ 2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줄이기 달성('09년, '10년)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비고
		계	사 망	실 종	
계	528	572	539	33	
2006년	136	148	134	14	
2007년	131	143	124	19	
2008년	141	155	155	0	
2009년	67	68	68	0	
2010년	53	58	58	0	

장소별 사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해수욕장	하천 (강)	계곡	저수지	유원 지	바닷가 (갯벌,해변)	기 타 (수상레저 등)
계	572	88	312	65	16	15	63	13
2006년	148	21	78	21	4	6	17	1
2007년	143	21	80	16	5	5	13	3
2008년	155	27	80	17	3	2	22	4
2009년	68	11	40	4	3	2	8	0
2010년	58	8	34	7	1	0	3	5

연령별 사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미상
계	572	51	147	136	63	66	81	28
2006년	148	22	40	23	17	13	25	8
2007년	143	13	26	32	19	18	15	20
2008년	155	11	41	44	13	21	25	0
2009년	68	3	19	18	7	10	11	0
2010년	58	2	21	19	7	4	5	0

❁ 시간대별 사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00:00 ~ 10:00	10:01 ~ 12:00	12:01 ~ 14:00	14:01 ~ 16:00	16:01 ~ 18:00	18:01 ~ 20:00	20:01 ~ 24:00	미상
계	572	36	51	98	157	152	60	11	7
2006년	148	11	13	27	31	44	15	7	0
2007년	143	5	17	19	40	36	18	1	7
2008년	155	12	13	28	44	39	17	2	0
2009년	68	5	5	13	24	17	4	0	0
2010년	58	3	3	11	18	16	6	1	0

❁ 물놀이 안전사고 주요원인

(단위 : 명)

구 분	계	수영미숙	음주 수영	수상 기구 전복	높은 파도	급류	안전수칙불이행 (심장마비, 고립, 만조무시)	기 타 (구조자 사고 등)
계	572	110	77	21	40	16	278	30
2006년	148	19	15	8	12	0	80	14
2007년	143	37	14	9	3	0	75	5
2008년	155	46	28	2	18	7	51	3
2009년	68	2	8	2	4	6	38	8
2010년	58	6	12		3	3	34	0

6-3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구분	삼풍백화점붕괴 (주관 : 건교부장관)	동해안 산불 (주관 : 농림부장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95. 6. 29 ○ 인명피해 : 사망502명, 부상937명 ○ 재산피해 : 건물2동 (지상5, 지하4) ○ 선포일시 : '95.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0.4.7 ~ 4.13 ○ 인명피해 : 사망2, 부상17명 ○ 산림피해 : 23,448ha ○ 재산피해 : 277억 (주택321동 등) ○ 선포일시 : '00. 4. 17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72,433백만원 ○ 사고 수습 경비 : 6,949 ○ 피해업체금융지원 : 8,616 ○ 세 제 지 원 : 6,868 ○ 피해보상용자재원 : 50,000 ※ 장례비·조의금 : 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67,857백만원 ○ 특별위로금 : 3,244 (복지부) ○ 농업시설복구지원 : 17,547 (농림부) ○ 어망및양식시설 : 1,185 (해수부) ○ 주택복구지원 : 8,343 (건교부) ○ 특별교부세 : 12,035 (행자부) ○ 산림복구지원 : 19,228 (산림청) ○ 공장복구지원 : 1,165 (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 5,110 ※ 사망자(2명) 위로금 : 15백만원

구분	대구지하철 화재 (주관 : 건교부장관)	양양 산불 (주관 : 소방방재청장)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3. 2.18 ○ 인명피해 : 사망192명, 부상148명 ○ 재산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166건) ○ 선포일시 : '03.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5. 4. 4 ○ 인명피해 : 없음 ○ 산림피해 : 973ha ○ 재산피해 : 230억 (주택163동 등) ○ 선포일시 : '05. 4. 7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1,605억원 【 중앙지원 1,147억원 】 ○ 피해자보상비 : 441억 ○ 긴급구조경비 : 5억 ○ 부상자치료비 : 45억 ○ 이재민구호비 : 38억 ○ 피해시설복구비 : 252억 ○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366억 【 대구시 458억원 】 ○ 보상비용 및 치료비 : 213억 ○ 피해시설복구 : 45억 ○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 136억 ○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6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24,335백만원 ○ 농업시설복구지원 : 1,312 (농림부) ○ 주택복구지원 : 5,868 (건교부) ○ 산림복구지원 : 3,512 (산림청) ○ 이재민구호 등 : 503 (소방방재청) ○ 군사시설 : 2,263 (국방부) ○ 문화재복구 : 8,885 (문화재청) ○ 공장시설복구 : 200 (산업자원부) ○ 공원시설 등 : 1,792 (환경부)

구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7. 12. 7.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 29,454ha 및 해안 70.1km 오염 ○ 선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태안 등 6개 시·군 재난사태 선포 → '07.12.8 - 특별재난지역 선포 → '07.12.11 - 전남 신안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08.1.18.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84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억(충남 600, 전남 168) ○ 긴급방제 특별 교부세 : 75억(충남 60, 전남 10, 전북 5) ○ 세제 감면·유예,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 등

7. 재난전조정보운영 및 심리지원

7-1 재난전조(前兆)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과학적·체계적인 재난전조 수집·관리를 통해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운영

1. 추진배경

-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표본점검 또는 일회성 사실확인 위주로 점검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 ❖ 위험시설물 및 부실관리 공사현장 등 구체적 취약요소에 대한 실효성 높은 시스템적 접근 필요

2. 법적근거

- ❁ 누구든지 재난발생 또는 재난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의 신고)
- ❁ 소방방재청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긴급안전점검 요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유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3. 업무 추진절차



- ❁ (정보수집) 언론·민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난전조 수집
 - 전조정보 수집원 : 소방방재청, 지자체, 일반국민 등(DB구축 운영중)
- ❁ (정보분석·등급결정) 재난전조정보 분석회의 개최(매주), 위험등급 결정
 - 분석회의 : 예방안전국장 주재, 각 과장, 내외부 관련전문가 등 참석
 - 위험등급 : A(심각), B(경계), C(주의), D(관심), E(관망)
- ❁ (안전조치·제도개선) 위험등급에 따라 기획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 기획점검 : 소방방재청 ⇒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 통보
 - 긴급안전조치 : 각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
- ❁ 재난전조정보 관리제도 : 재난이 발생하기 전 여러번의 사소한 안전 사고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제도
- ❁ '10년 재난전조정보 수집분석 현황

(기준일/단위 : '10.12월말 현재/건수)

구분	재난정보 수집입력			재난전조정보 분석을 통한 위험등급 결정					
	계	전조정보 해당	전조정보 제외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건수	1,616	816	800	816	1	5	53	369	388

7-2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 및 센터 현황

재난심리지원 전문요원 현황

〈2011 2월말 현재〉

(단위 : 명)

시도별	계	교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요원 등	심리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비고
합계	1,917	136	150	508	496	627	
서울	128	5	3	3	106	11	
부산	165	9	11	69	4	72	
대구	111	16	9	30	50	6	
인천	126	7	6	17	50	46	
광주	101	5	11	42	28	15	
대전	91	4	5	28	35	19	
울산	173	15	3	45	9	101	
경기	107		10	46	28	23	
강원	214	9	6	82	50	67	
충북	92	10	9	10	30	33	
충남	36	2	2	7	1	24	
전북	121	26	7	26	6	56	
전남	169	12	27	20	16	94	
경북	133	7	25	38	46	17	
경남	87	7	11	32	26	11	
제주	63	2	5	13	11	32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 및 활동현황

사도	지정일	지정기관	대표자	인원	전화번호	주 소	활동상황	비고
계		16개 시도 17개 기관						
서울	'09. 4. 17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이영수 (의사)	20명	3444-9934 -286	서울 강남 논현 206 일양빌딩 별관 7층	전문요원워크숍 실시 ('09.6. '10.5)	
부산	'08. 8. 26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배정미 (교수)	10명	(051) 890-6823	부산시 진구 개금동 633-165	심리지원관련 수첩 제작, 재난심리상담('09.7~8월, 25명) 구제역피해 상담 '11년 1명	◎
대구	'09. 9. 22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김희숙 (교수)	4명	(053) 423-4926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심리지원 수첩 제작 교육 및 워크숍(7회68명)	
인천	'09. 7. 22	(사)한국CAP협회 인천희망 나눔센터	송희숙 (심리 상담사)	5명	(032) 813-0159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7 4층	연평도 피해자 심리안정지원('10.12, 369명)	
광주	'09. 7. 31	(사)한국CAP협회 광주희망 나눔센터	손경숙 (간호사)	4명	(062) 972-1566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4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구 피해자 심리지원활동 ('09.9.15~18)	
대전	'10. 10. 6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유만중	4명	(042) 220-0100	대전시 중구 선화동 32-1	구제역피해 상담 '11년 1명	
울산	'11. 1. 25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이숙희 (상담사)	3명	(052)271-5657	울산시 중구 성안동872-5		
경기	'08. 11. 28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정신과	정한웅 (의사)	4명	(032) 621-5232~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호우피해주민 심리상담활동 ('09.7월, 7명), ('10.9월, 12명) 구제역피해 상담 '11년 17명	◎
	'08. 11. 28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홍승철 (의사)	3명	(031) 249-7150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강원	'08. 10. 8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용래 (교수)	3명	(033) 248-1825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전문요원 워크숍('09.7월) 구제역피해 상담 '11년 1,346명	◎
충북	'09. 8. 1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우현 (교수)	3명	(043) 261-2188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10번지	전문요원 워크숍 실시 ('10.11.12~11.13)	
충남	'09.1. 1.11	(사)한국CAP협회 천안지역본부	이숙 (간호과 부교수)	5명	(041) 566-9888	충남 천안시 두정동 163-4 노동복지회관 3층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08.1~2, 291명) 구제역피해 상담 '11년 156명	
전북	'09. 9. 29	예수대학교 신학력학단	차영남 (간호학)	5명	(063) 230-77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8-1	워크숍 개최 ('09.11.24)	
전남	'08. 12. 30	등산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최태산 (교수)	5명	(061) 330-2875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전문요원 자체교육('09.2월) 시피해 상담 '11년 1명	◎
경북	'11. 1. 3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정진규	5명	(053) 252-9845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구제역피해 상담 '11년 357명	
경남	'09. 11. 19	(사)한국CAP협회 창원센터	조명자 (센터장)	5명	(055) 267-522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0-4번지 서광오피스텔 901호	직무역량향상워크숍 ('10.7.23, 70명)	
제주	'09. 12. 14	제주한라병원	김지윤 (상담사)	3명	(064) 740-5000	제주특별자치도 연동 1963-2		


8. 재난관리 민관협력

8-1 재난안전네트워크

(18개 단체, 1,151여만명)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소	회원수
정 회 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서울 중구 훈원로 95	120,125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박재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7-4 소방회관 3층	98,000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100,000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서울 중구 남산동 3-32	73,600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재창	서울 강남구 영등대로 627	2,000,00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 자 최병렬 김춘강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53-6 새한빌딩 2층	20,000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9 방재빌딩 1층	4,700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김준목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56 센트럴프라자 6층	5,000,000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서울 중구 신당동 357-11 아리빌딩 4층	4,000,000
	해병대전우회중앙회	김인식	서울 성동구 성수동 656-75 에스콰이어빌딩 4층	200,000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함영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7-5 KARL빌딩 3층	8,851

구분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회원수
합 력 회 원	소방방재청	박연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서울 중구 정동 1-17번지 6층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	조원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공학원 316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인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한국시설안전공단	김경수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이재은	충북 청주시 개신동 12 충북대	
	119매거진	최명신	강남구 역삼동 648-3번지 2층	

 시·도 재난안전네트워크 현황

시·도	간사단체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FAX
서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12	강 덕 기	02-2290-6754 / 2290-6658
부산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607-1	안 덕 우	051-801-4000 / 801-4009
대구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대구 달서구 두류1동 776-8	정 연 옥	053-803-6070 / 803-6079
인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씨티은행 8층	정 해 영	032-434-4104 / 446-4104
광주	해병대전우회 광주연합회장	광주 북구 운암동 179-2	유 재 천	062-511-4666 / 512-0123
대전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대전 서구 둔산동 1420	홍 성 표	042-600-6122 / 489-3291
울산	울산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울산 남구 달동 121-6 2층	백 승 찬	052-257-8400 / 257-8402
경기	경기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9 용하빌딩 5층	김 현 탁 곽 순 교	031-740-7158/
강원	강원도 새마을회	강원 춘천시 사농동 737-2	박 종 인	033-242-6061 / 242-6065
충북	충청북도 새마을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5-8	김 남 수	043-286-8096 / 286-8098
충남	충남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충남 아산시 온천1동 86-13 인당빌딩4층	강 일 구	041-544-0099 / 547-2401
전북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1번지(구 도청 3층)	김 기 원	063-227-1365 / 227-1364
전남	대한적십자사 전남지사	광주 북구 매곡동 256	김 필 식	062-573-0541 / 573-0441
경북	경북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경북 구미시 형곡동 111-6	류 재 용	054-458-9109 / 458-9108
경남	경남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경남 창원시 대원동 93-1 대원민원센터 2층	강 대 석	055-288-8591 / 279-6585
제주	제주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제주시 연동 272-33 로알오피스텔 616	구 형 준	064-744-1190 / 744-1190

❁ 시·군·구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현황

2011. 1. 1 기준

시·도	시·군·구 현황		구축완료 시군구	구축 비율
	대상	구축 현황		
서울	25	25	중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100%
부산	16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00%
대구	8	7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구성중에 있음)	87.5%
인천	10	10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100%
광주	5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00%
대전	5	5	중구, 유성구, 동구, 서구, 대덕구	100%
울산	5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0%
경기	31	31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100%
강원	18	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00%
충북	12	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100%
충남	16	16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100%

시·도	시·군·구 현		구축완료 시군구	구축 비율
	대상	구축 현황		
전북	14	14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100%
전남	22	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0%
경북	23	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00%
경남	18	13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2.2%
제주	-	-		
전국	228	222		97.4%

9. 예방안전 홍보

9-1 국민안전방송 NEMA TV

1. 추진배경

❁ 재난정책에 대한 관심과 안전교육 필요성 고조

- ❖ 재난 발생의 불가측성 증대 및 발생규모의 대형화
- ❖ 안전에 대한 국민욕구는 강하나, 행동요령 등 안전의식은 미흡

❁ 홍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난전문 홍보채널 필요

- ❖ 방송환경의 다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뉴미디어 출현 경쟁 심화
- ❖ 특성화된 홍보매체로 인터넷 재난전문 방송채널의 필요성 대두

관련 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의무
- ◇ 『국민안전방송운영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102호) 제3조
 - 방송운영 기본계획 수립의무

〈 NEMA TV 주요 역할과 기능 〉

- ◇ 소방방재청 주요 정책의 실시간 제작홍보
 - NEMA NEWS, 브리핑 실시간 생중계, 각종 재난관리 상황전파(영상, 사진)
- ◇ 온라인 안전 길잡이 역할 수행
 - 태풍·호우 등 재난대비 재난속보방송 제작·송출
 - 안전마당 등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 ◇ 대한민국 재난방송의 허브 기능
 - 재난관련기관 재난안전 영상DB 구축, 활용
 - 위성중계차량(SNG)과 연계, 피해 및 복구상황 등 재난현장 정보 실시간 인터넷 중계

2. 운영현황

① NEMA TV 개국

- ❁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전달을 위해 '06. 4. 4 개국과 동시 인터넷 최초 실시간 방송 실시
- ❁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대본, 앵커 등에 외부 위탁 없이 직접 참여
- ❁ 디지털 편집시스템 및 영상 장비를 갖춘 소규모 스튜디오 보유

3. 운영실적

① 전문프로그램 제작으로 독창성·차별성 구현

- ❁ NEMA TV 자체 기획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제공
 - ❖ 『현장포커스』, 『네마뉴스』 등 총 5,600여 편 제작(2010.12.31기준)
 - ※ 주요 운영 콘텐츠 : 재난속보, 현장포커스, 네마뉴스, 안전가이드, 정책브리핑, 투데이사건사고 등
- ❁ NEMA TV 기술력 활용 공중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 『출동! 안전가이드』, KBS 세상의아침(12) 등 37편 제작

② DMB 활용 고정 재난안전방송 실시

- ❁ 방송매체 : U1 DMB채널
(총 11개 DMB채널 중 시청률 순위 5 ~ 6위)
- ❁ 방송내용 : NEMA TV 프로그램 연계 안전 캠페인 방송 실시
(태풍, 화재예방, 소화기사용법 등)
- ❁ 방송일시 : '09. 6. 4부터 하루 1~5번 편성 방영 중

③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 NEMA TV 콘텐츠 검색기능 강화

- ❖ 동영상, 사진 등록시 태그 입력추가
(차후 포털과의 연계기능 강화)

❁ 별도 절차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또는 다시보기 기능추가

- ❖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

④ 다매체다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연계홍보 추진

- ◇ 공중파 방송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작·방영
- ◇ 관공서, 역대합실, 지하철 등 대중밀집시설 TV, 전광판 활용
홍보

❁ 일일 소방방재활동 프로그램 방송

- ❖ 보도매체 : mbn-TV
- ❖ 프로그램명 : 『현장출동 119』
- ❖ 기 간 : 2008. 5 ~ 계속
-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06:20, 07:40, 08:40
- ❖ 방송내용 :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 사고를 현장영상과 함께
보도

❁ 어린이 안전교육용 CD 제작을 통한 활용

- ❖ 수록콘텐츠: 물놀이사고예방 요령 등 4편
- ❖ 배 포 처 : 전국 초, 중학교 9,029개소

❁ 보건교과서 부록 CD를 통한 활용

-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초, 중, 고등학생 용
- ❖ (주)미래엔컬처그룹 : 초등학생용
- ❖ 제공콘텐츠 :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10편

4. 운영 성과

❁ NEMA TV 자체 제작 안전콘텐츠의 민간 포털사이트 노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안전정보로 폭넓게 활용

※ 일 평균 5천여 명 접속, '10까지 총 684만여 명 접속

❁ 다양한 정책홍보 콘텐츠의 보급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NEMA TV 콘텐츠 현황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 편수	861	3,099	2,393	4,011	4,035

9-2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경보제

- n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 n 특정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최소화

개요

➤ 도입시기 : 2006년 4월 5일

➤ 발령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06. 4. 5 소방방재청 훈령 제 88호

☞ 개정 2008. 4.29 소방방재청 훈령 제144호

☞ 개정 2009. 8.24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지향점

-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안전사고 예·경보 발령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10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6.18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7.26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9.7
산악 및 농기계	주의보	10.14

❁ 주간 안전사고 위험지수

- ❖ 도입시기 : 2007년 3월 5일
- ❖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1주로 하여, 주간단위·시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캐릭터와 위험지수로 표출, 재난사와 안전요령도 함께 제공

- ❖ 발표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www.nema.go.kr)게재, 지자체 전파, 언론(조선일보, 서울신문, 불교신문) 등에 정보제공 및 SNS(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를 활용한 홍보

❁ 안전사고 유형

- ❖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 ❖ 어린이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10. 무선통신망 및 시스템 현황

10-1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운영현황

교환기 및 기지국 현황

(단위 :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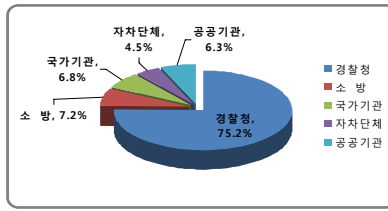
구 분	교환기	기지국			중계기		
		계	소방 방재청	경찰청	계	소방 방재청	경찰청
합 계	6	271	97	174	428	162	266
중앙망관리센터 (경기지역)	4	188	48	140	165	95	70
서울망관리센터 (서울지역)	2	83	49	34	263	67	196

단말기 사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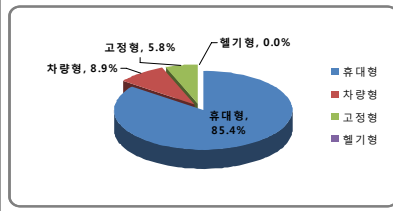
(단위 : 대)

유형별 기관별	계	휴대형	차량형	고정형	헬기형
합 계	51,401	43,879	4,558	2,956	6
국가기관	3,506	3,427	48	28	3
경 찰	38,635	32,943	3,157	2,535	-
소 방	3,709	2,812	747	147	3
자치단체	2,291	2,044	139	106	2
공공기관	3,260	2,653	467	140	-

단말기 이용 기관별



단말기 유형별



10-2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단계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 연계·활용
 - 119 등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소방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구축 시스템

- ❖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05~'08)
 - ☞ 재난정보공동 활용 시스템('05~'08)
 - ☞ 상황전파시스템('05~'08)
 - ☞ 국가재난정보센터('06~'08)
 - ☞ 재난관리정보DB센터('08)
-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06~'08)
- ❖ 소방정보시스템('06~'09)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06~'08)
 - ☞ 소방대상물 DB구축('07~'09)
 - ☞ 국가화재정보시스템('07~'09)
 - ☞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08)
- ❖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06~'09)
 - ☞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03~'06)
- ❖ U119 시스템('07~'08)

❁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련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공동 활용과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구축현황

-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정보 연계(44개 기관 225종 정보연계)
- 상황전파시스템
 - ☞ 지자체,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하기관 간 재난상황 전파체계구축(4,436개 기관)
- 국가재난정보센터
 - ☞ 국민행동요령 플래시(25종 61편), 안전사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 재난관리정보 DB센터 구축
 - ☞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예측 프로그램 개발(308개 서비스)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을 계기로 지진발생과 동시에 전국적인 진도분포도(흔들림의 정도)와 인명·시설물의 피해정도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지진진도분포도 생성 및 자동경보시스템 개발
- 건축물 및 인명 지진피해 손실추정 프로그램 개발
- 전기, 가스, 도로 등 주요 라이프라인 피해예측 개발
- 의료, 수송 피난 등 긴급대응지원체계 기능 개발
- 지진피해 입력시스템 및 고속철도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 시행('06.5.16)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풍수해 보험대상물 현황 및 피해이력 관리하기 위한 DB 개발
-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현황 등 풍수해보험 실적통계 연계 개발
- 풍수해보험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발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중앙 및 시·도 보고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시·군·구 현장 대응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표준행동절차(SOP)기반에 의한 선진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재난관리 13개 업무 표준화 및 표준행동절차(SOP) 서비스
- 풍수해, 대설, 이재민관리시스템
 - 재난대응활동 관리(상황관리, 응급조치활동, 피해현황보고 등)
 - 자원정보 관리(지역, 시설, 물자, 인력정보 등)
 - 관측정보 관리(수위, 우량, CCTV 등)
- 피해조사 및 사유재산 피해 복구관리시스템
- 인적재난 관리시스템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유도선, 물놀이, 자원동원 관리 등
 - 실시간 출동정보, 소방활동정보 연계(화재 등 19종)

소방정보시스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과학적 재난 대응을 위해 수작업 처리중인 소방검사, 건축허가 등 소방민원 업무의 정보화와 재난 발생시 현장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위한 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구축현황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예방통계프로그램 개발
- 소방대상물 DB구축 : 소방활동정보카드 DB(16개시·도 : 737,433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원인·발생장소 등 화재관련 보고서 및 검색프로그램 개발
-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 소방공무원 인사, 급여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각종 재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고 화재·구조·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재난 현장지휘를 지원하기 위해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
※ '06년 : 인천·전남, '07 : 강원·전북, '08년 : 경북,
'09년 : 제주, '10년 : 경남

구축현황

- 119 신고 접수 시스템
 - ☞ 119신고자 위치 자동 파악(GIS 활용), 재난지역 출동대 자동 파악
 - ☞ 재난현장 정보 및 동원 소방력 지원
 - ☞ 출동차량 위치 자동 파악 및 상황관리
-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 ☞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센터와 119위치정보 조회시스템 연계

❁ U119 시스템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유선·무선, 데이터·음성 등 다양한 신고 매체를 통해 119 신고를 체계 구축

❁ 구축현황

- U-안심콜 : 장애인, 중증환자 등의 사전에 등록 119신고 출동시 정보활용
- 자동신고시스템 : 독거노인 등 댁내에 화재, 가스감지기를 긴급상황시 119 자동신고
- 텔레메딕스시스템 : 차량 주행중 긴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접수
- Help Me 119시스템 : 외국인이 119 신고시 자동응답(ARS)시스템을 통한 신고접수
-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 구급차 이송 중 환자의 정보 및 영상을 통한 원격응급처치

3장

소방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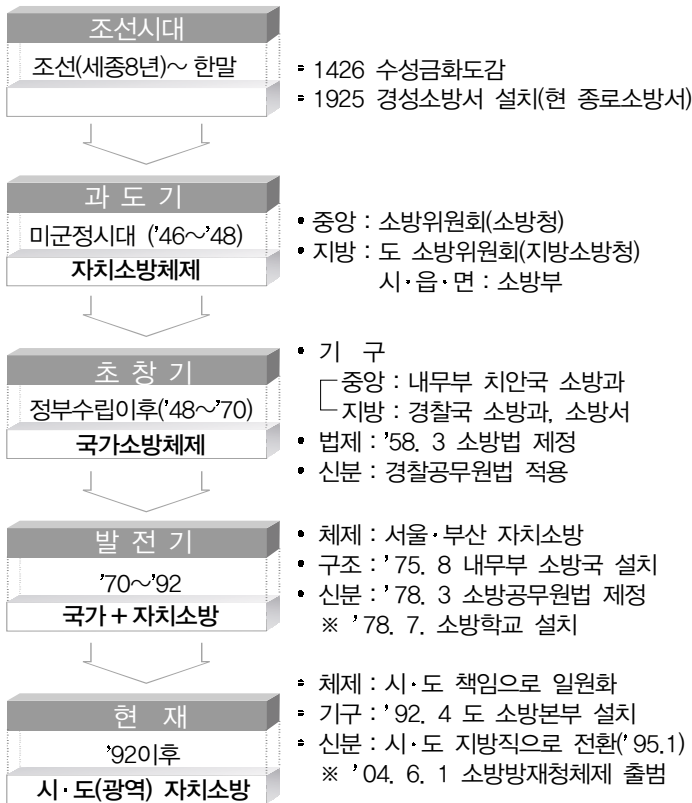
1. 소방일반현황
2. 방호업무
3. 예방업무
4. 위험물 안전관리
5. 구조·구급업무
6. 긴급구조통제단업무

3step

소방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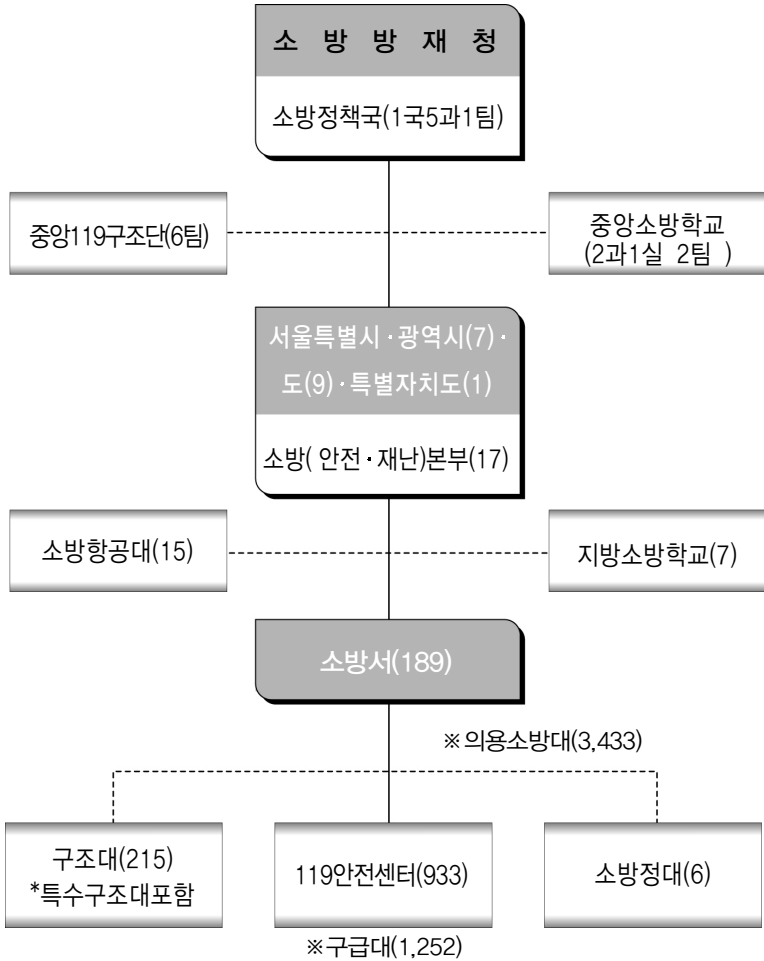
1. 소방일반현황

1-1 소방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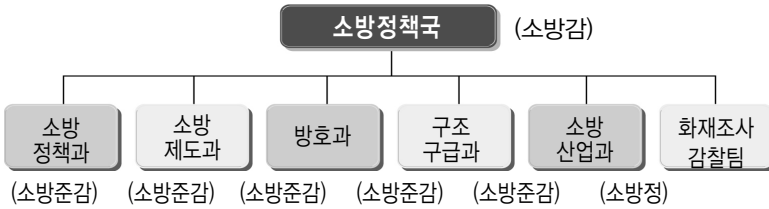


1-2 소방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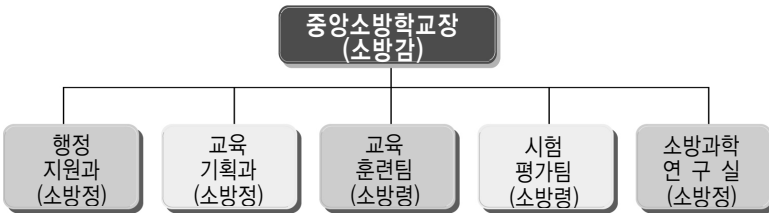
가. 소방정책본부



나. 소방정책국 : 1국5과1팀 94명(소방 85, 일반 4, 기능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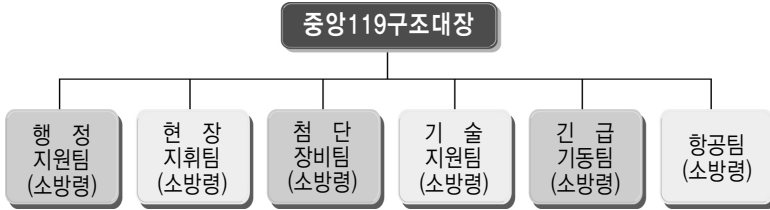
다. 중앙소방학교 : 2과 1실 2팀, 66명(소방54, 일반7, 연구5)



❁ 지방소방학교(7개교)

- ❁ 서울소방학교 : 2과, 6팀, 1연구실 2센터, 67명
(소방 48, 기능 12, 기타 7)
- ❁ 부산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수단 24명(소방)
- ❁ 광주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수부 28명(소방 25, 기능 3)
- ❁ 경기소방학교 : 3과, 8담당, 57명(소방 47, 기능 10)
- ❁ 충청소방학교 : 2과, 5담당, 1교관단 19명(소방 17, 기능 2)
- ❁ 경북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관단 32명
(소방 25, 일반 2, 기능 5)
- ❁ 강원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수단, 1센터 28명
(소방 25, 기능 3)

라. 중앙119구조단 : 6팀 101명 (소방직 83, 계약직 18)



※ 119 국제구조대 : 6개반 41명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이하 2010. 12. 31기준)

구분 시도	소 방 본 부	소 방 학 교	소 방 서	소 방 파 출 소	구 조 대	소 방 항 공 대	소 방 정 대
계	17	8	189	933	215	15	6
소방방재청	0	1	0	0	1	1	0
시 계	7	3	62	326	68	6	3
도 계	10	3	127	607	146	9	3

※ 2010년 대비 소방관서 16개 증가 (소방학교 1, 소방서 4, 안전센터 6, 구조대 4, 소방정대 1)

1-4

소방인력 현황

가. 소방공무원

1. 계급별 (정원)

구분	계	소 방 총 감	소 방 정 감	소 방 감	소 방 준 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계	36,711	0	1	4	32	256	825	1,991	2,479	5,695	10,753	14,675
국 가	245	0	1	4	21	21	25	41	51	42	36	3
지 방	36,466	0	0	0	11	235	800	1,950	2,428	5,653	10,717	14,672

2. 기관별 (정원)

계	본부	학교	본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소방 정대	방재 센터	청와대
36,711	1,538	302	6,900	24,322	3,136	202	132	149	30

※ 소방방재청(85)은 본부, 중앙소방학교(54)는 학교, 중앙구조대(83)는 구조대에 포함

나. 의용소방대

구 분	총 계	시 지역	읍 지역	면 지역
대 수	3,433	914	505	2,014
대 원 수	96,292	25,276	19,855	51,161

다. 의무소방원

구 분	정 원	현 원	부족인원	전역자('02~'09)
대 원 수	2,012	416	△1,596	6,116

1-5

순직, 공·사상자 현황

가. '10년도 발생현황

구 분	합 계	화 재	구 조	구 급	교육훈련	기 타	
합 계	인원	348명	90명	41명	79명	29명	109명
	비율	100%	26.9%	12.3%	23.7%	8.7%	28.4%
순직	8	0	3	1	1	3	
공상	340	90	38	78	28	106	

나. 최근 5년간 발생현황

구 분	계	평 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642	328.2	304	286	346	358	348
순직	33	6.2	6	7	9	3	8
공상	1,609	312	298	279	337	355	340

다. 최근 5년간 업무유형별 현황

구 분	비 율	합 계	'06	'07	'08	'09	'10
총 계	100%	1,642	304	286	346	358	348
화재진압	25.6%	426	92	74	89	81	90
구 조	11.9%	188	38	32	28	49	41
구 급	22.1%	363	57	70	79	78	79
교육훈련	10.0%	164	23	30	34	48	29
기 타	30.3%	501	94	80	116	102	102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가.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나. 의무소방대 설치·운영 연혁

- ✦ '01. 3. 4 : 서울 흥제동 주택화재
⇒ 6명 순직, 3명 부상(설치·운영계기)
- ✦ '01. 3. 12 : 당정협의 의무소방대 설치 합의
- ✦ '01. 7. 13 : 제223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원 3,000명
확정
- ✦ '01. 8. 14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정·공포(법률제6505호)
- ✦ '02. 1. 10 : 의무소방교육대 발대(중앙소방학교)
- ✦ '02. 3. 29 : 의무소방원 모집 훈련시작
(제1기, 211명 훈련소 입소)
- ✦ '06. 5. 19 : 정원 3,000명 → 2,000명으로 감축 조정
- ✦ '10. 12. 31 : 의무소방원 416명 근무(제34기 까지 임용)

다. 인력충원 현황

구 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배 정	6,484	1,292	1,292	1,500	800	400	400	320	240	160	89
모 집	6,175	1,285	1,312	1,533	805	410	410	327	248	170	90
임 용	6,733	1,285	1,312	1,505	797	402	405	521	248	169	89

라. 정원·현원 배치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2,012	154	80	70	78	50	50	52	390	130	120	130	130	130	228	169	39
현원	417	34	17	13	17	11	11	10	78	28	22	29	28	28	48	35	8
전역	6,013	472	381	340	297	160	192	138	1,095	432	250	289	337	405	569	490	166

1-7 소방력 보강현황

가. 소방력 보강현황

구 분	년도별 기준년도 ('71 년도)	제1차 ('72~ '76)	제2차 ('77~ '81)	제3차 ('82~ '85)	제4차 ('86~ '90)	제5차 ('91~ '96)	제6차 ('97~ '01)	제7차 ('02~ '07)	제8차 ('08~ '12)
소 방 서	34서	9	11	21	20	30	19	22	11
119안전센터	83소	39	63	95	134	260	73	115	40
소 방 관	974명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3,351
장 비	1,092대	164	355	462	1,767	1,506	621	4,119	707
소 방 용 수	8,074개소 (75말)	2,524 (76)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439	9,040

나. 소방관서

1. 시·도별

(2010. 12. 31 현재)

구 분	소방 본부	소방 학교	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소 방 항공대	소방 정대	구급대	119 지역대
합 계	17	8	189	933	210	15	5	1,283	621
소방방재청		1			1	1		1	
시 계	7	3	62	326	67	6	3	363	28
서울	1	1	22	114	25	1		118	
부산	1	1	11	53	11	1	2	57	1
대구	1		7	45	7	1		49	7
인천	1		8	47	8	1	1	49	15
광주	1	1	5	22	5	1		32	
대전	1		5	25	5			31	
울산	1		4	20	6	1		27	5
도 계	10	3	127	607	146	9	3	883	586
경기 1	1	1	23	123	24	1		154	40
경기 2	1		11	51	13			67	34
강원	1	1	12	59	14	2		96	58
충북	1		8	36	13	1		74	81
충남	1	1	13	61	16	1		67	130
전북	1		10	48	10	1		67	48
전남	1		10	49	12	1	1	85	108
경북	1	1	16	79	20	1		115	56
경남	1		20	80	20	1	2	130	27
제주	1		4	21	4			28	4

다. 소방공무원

1. 총괄

(2010. 12. 31 현재)

직급 시도	계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3,992	0	1	4	32	256	825	1,991	2,479	5,695	10,753	14,675
국 가	245	0	1	4	21	21	25	41	51	42	36	3
지 방	36,466	0	0	0	11	235	800	1,950	2,428	5,653	10,717	14,672
소방방재청	85			1	6	12	12	24	22	6	2	
소 방 학 교	54			1		3	7	10	11	11	8	3
구 조 대	83					1	6	7	18	25	26	
시 · 도	23		1	2	15	5						
서 울	5,800				5	26	104	292	333	700	1,589	2,751
부 산	2,546				2	14	55	123	123	387	811	1,031
대 구	1,878					11	37	104	85	242	512	887
인 천	2,222					12	49	89	119	355	687	911
광 주	1,092					7	25	63	80	174	327	416
대 전	1,129					8	30	66	79	169	361	416
울 산	717					6	19	47	60	131	221	233
경 기 1	3,929				3	27	106	242	274	604	1,227	1,446
경 기 2	1,609					13	41	103	112	242	498	600
강 원	2,177					15	50	128	185	372	725	702
충 북	1,378					10	34	76	109	190	424	535
충 남	2,033					15	50	113	157	634	543	521
전 북	1,970					13	42	92	136	273	518	896
전 남	2,058					12	35	90	136	297	626	865
경 북	2,570					18	50	124	182	345	681	1,170
경 남	2,764					22	56	159	221	463	805	1,038
제 주	594				1	6	17	39	37	78	162	254

※ • 사·도 국가직(23) 내역 : 소방본부장 16명(서울 정감, 부산 경기 감2, 사·도 준감13), 지방소방학교장 7명(서울, 경기 준감2, 부산, 광주, 강원, 충청, 경북 소방정5)
 • 별도정원 4명 미포함 : 국방대학원 1(소방감), 세종연구소 1(소방준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소방정 각 1명)

2.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현황

시도	계급	계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	계	245	0	1	4	21	21	25	41	51	42	36	3
	소방방재청	85			1	6	12	12	24	22	6	2	
	소방학교	54			1		3	7	10	11	6	8	3
	중앙19구조단	83				1		6	7	18	25	26	
	서울	2		1		1							
	부산	2			1		1						
	대구	1				1							
	인천	1				1							
	광주	2				1	1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1	2			1	1							
	경기 2	1				1							
	강원	2				1	1						
	충북	1				1							
	충남	2				1	1						
	전북	1				1							
	전남	1				1							
	경북	2				1	1						
	경남	1				1							
	제주												

※ 별도정원 4명 미포함 : 국방대학원 1(소방감), 세종연구소 1(소방준감), 대통령실 1(소방정), 국무총리실 1(소방정)

3. 지방소방공무원 정원현황

계급 시도	계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6,466			11	235	800	1,950	2,428	5,653	10,717	14,672
서울	5,800			5	26	104	292	333	700	1,589	2,751
부산	2,546			2	14	55	123	123	387	811	1,031
대구	1,878				11	37	104	85	242	512	887
인천	2,222				12	49	89	119	355	687	911
광주	1,092				7	25	63	80	174	327	416
대전	1,129				8	30	66	79	169	361	416
울산	717				6	19	47	60	131	221	233
경기 1	3,929			3	27	106	242	274	604	1,227	1,446
경기 2	1,609				13	41	103	112	242	498	600
강원	2,177				15	50	128	185	372	725	702
충북	1,378				10	34	76	109	190	424	535
충남	2,033				15	50	113	157	634	543	521
전북	1,970				13	42	92	136	273	518	896
전남	2,058				12	35	90	136	294	626	865
경북	2,570				18	50	124	182	345	681	1,170
경남	2,764				22	56	159	221	463	805	1,038
제주	594			1	6	17	39	37	78	162	254

1-8

소방장비 현황

가. 장비 현황

1. 총 괄(2010.12.31)

구 분	펌프차					물 탱크	화학차					무 인 방 수 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 명 차	
	대 형	중 형	소 형	능 촌	산 불 진 화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폭 차	분 석 차	일 반		3 이 하	4 이 하	5 이 상	1 이 하	2 이 하	3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총계	7,565	229	1,341	428	6	51	716	110	11	8	16	128	8	4	92	98	15	148	43	213	63	41	51

배 연 차	구급차		지 휘 차	위 중 계	장 비 운 반	트레일러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단 차	진 행 단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ton) #구획조정			구조정 (ton)		
	A 형 (일 반)	B 형 (특 수)				공 기 총 전	보 통 운										7	10	14	18	5	50	100	20	30	
134	8	1,326	217	4	63	91	148	7	209	30	19	4	289	261	393	258	154	2	9	8	4	1	1	4	6	4

나. 2010년 보강현황

1. 총괄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무인탐방수탐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명차
		대형	중형	소형	농촌형	상용화		고성능	제독차	내폭	분석차	일반		33 이하	46 이상	50 이상	18 이하	27 이하	35 이상	일반	버스	
대수	계	597	1	64	12	34	33	9	1		9			2	6		12	2	26	11	5	2
	신규	120		1	1	34	1		1		2			1	1		2		2	9	4	
	대체	477	1	63	11		32	9			7			1	5		10	2	24	2	1	2
예산액	계	61,708	181	10,391	1,061	1,240	5,971	3,307	786		36,918			101.7	3,150		9,079	1,250	6,751	5,845	124	354
	신규	8,525		157	53	1,240	166	566	786		2,898			601.7			500		1,204		84	
	대체	53,182	181	10,234	997		8,054	3,307			125			500	3,150		9,079	1,250	6,145	5,845	40	354
보조금 대수	계	194						1	1						1				21	7	3	
	신규	22							1											2	7	3
	대체	172						1							1							
보조금 예산	계	11,273					482.5		393						269				2,995	233	42	
	신규	1,832							393											602		
	대체	9,440					482.5								269					2,703	233	42
보조금 지방비 예산	계	7,635					482.5		393											2,801	233	42
	신규	1,453							393											602	233	42
	대체	6,182					482.5															
교부세 대수	계	11																		1		
	신규																					
	대체	11																		1		
교부세 예산	계	405																				
	신규	405																				
	대체																					
교부세 지방비 예산	계																					
	신규																					
	대체																					
순대 지방수	계	403	1	64	12	34	33	8		9			2	5		12	2	5	4	2	2	
	신규	98		1	1	34	1			2			1	1		2				2	1	
	대체	305	1	63	11		32	8		7			1	4		10	2	5	2	1	2	
순대 지방 예산	계	42,799	181	21,243	1,066	1,240	7,257	3,360		2,521			4,115	3,678		9,079	1,250	730	4,665	40	352	
	신규	5,240		157	53	1,240	856	566		2,521			1,918	550		500						
	대체	37,588	181	34,243	997		6,399	2,794		215			500	3,128		9,079	1,250	730	4,665	40	352	
납품	대수	458	4	79	5		25	8	2				6			3	13	14	7	1		
	금액	48296	796	12474	680		3803	2078	960				2924	3732		930	4768	2656	564	60		
계약	대수	314	8	88	4		46	4	2	7			4	2		3	9	16			3	
	금액	47254	1206	13064	487		6612	1102	960	1100			4008	954		1400	4112	3074			620	
미집행	대수	63																				
	금액	11520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10.12.31.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전역자 누계 ('02~'08)
계	2,000	416	-1,584	6,372
서울	154	34	-120	505
부산	80	17	-63	398
대구	70	13	-57	353
인천	78	17	-61	314
광주	50	11	-39	171
대전	50	11	-39	203
울산	52	10	-42	149
경기	390	78	-312	1,173
강원	130	28	-102	406
충북	120	22	-98	272
충남	130	29	-101	318
전북	130	28	-102	365
전남	130	28	-102	433
경북	228	47	-181	613
경남	169	35	-134	525
제주	39	8	-31	174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가. 총 괄

(단위 : 대, 명)

구 분	대 수				대 원 수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계	3,413	1,425	995	1,013	96,292	47,167	28,612	20,513
	시	914	167	158	589	25,276	7,203	6,298	11,775
	읍	505	202	205	98	19,855	9,849	8,078	1,928
	면	2,014	1,056	632	326	51,161	30,115	14,236	6,810

※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 제37조,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설치기준

- ❖ 시·읍지역 : 1개대 60명(여성대 50명)
- ❖ 면 지역 : 1개대 30명(여성대 30명)
- ❖ 지역대 : 시·읍·면지역 1개대 20명


나.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단위 : 건, 명)

구분	계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 홍보	기 타
횟수	128,669	10,986	1,468	13,580	37,439	31,048	34,148
인원	2,423,459	113,858	11,493	167,007	964,249	779,680	387,172

※ 의소대당 연간 평균출동횟수 : 35.6회(1회당 16.5명 참석)

다. 의용소방대 사기양양대책

 2010 예산집행현황

(단위 : 명, 천원, 회)

구 분	총합계		출동수당 지급		
	연인원	총금액(A)	횟수(b)	연인원	금액
계	991,129	45,961,633	163,009	849,158	28,599,483
시	509,601	26,274,722	128,826	424,811	5,028,537
군	481,528	19,686,912	34,183	424,347	3,570,946

(단위 : 명, 천원, 회)

구 분	자 녀 장 학 금 지 급					
	계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455	5,578,264	2,056	1,596,894	3,399	3,981,370
시	3,265	3,066,952	1,531	1,098,937	1,734	1,968,015
군	2,190	2,511,312	525	497,957	1,665	2,013,355

(단위 : 명, 천원, 회)

구 분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등 지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회수	인원	금액	회수	금액
계	73,542	4,613,959	737	13,924	335	62,237	1,008,243	12,343	6,147,761
시	43,724	2,726,804	737	13,924	208	37,064	683,351	10,950	4,755,154
군	29,818	1,887,155	-	-	127	25,173	324,892	1,393	1,392,606

2-2

소방용수시설

가. 총괄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소요량	145,638	65,115	75,996	2,127	2,400
현보유(%)	142,542(98)	70,693(109)	68,147(90)	1,872(88)	1,830(76)
부족수	3096	+5578	7849	255	570

나. 2010 소방용수시설 증감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0. 1. 1	2010 증감내역			2011. 1. 1.
		계	신설	폐기	
계	137,941	4,601	5,567	966	142,542
지상식소화전	66,223	4,470	4,548	78	70,693
지하식소화전	67,861	286	1,000	714	68,147
저수조	1,911	-39	4	43	1,872
급수탑	1,946	-116	15	131	1,830

다.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해방전	'45-'60	'61-'75	'76-'90	'91-'95	'96-'00	'01-'05	'06-'09
계	142,542	45	572	2,086	28,853	31,564	28,762	23,790	26,870
지상식소화전	70,693	2	175	516	9,160	12,278	12,935	15,185	20,442
지하식소화전	68,147	24	347	1,394	18,362	18,251	15,257	8,211	6,301
저수조	1,872	19	47	146	813	444	233	125	45
급수탑	1,830	0	3	30	518	591	337	269	82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단위 : 명, 대)

구 분	응원협정기관 단체수			경비부담		보험가입 기관단체
	계	소방본부	소방서	자체부담	요청기관	
총 계	4480	231	4249	3805	675	2957
타 시도 소방본부	51	45	6	44	7	38
군 부 대	447	57	390	401	46	278
경 찰 청	168	13	155	157	11	108
산 림 청	20	8	12	18	2	18
해 양 수 산 청	13	1	12	12	1	8
한 국 전 력 공 사	141	9	132	129	12	97
한 국 통 신	141	9	132	129	12	97
도 시 가 스 공 사	100	9	91	92	8	72
해 운 업 체	49	-	49	45	4	30
자 위 소 방 대	337	24	313	303	34	213
중 장 비 보 유 업 체	637	6	631	488	149	420
바 지 선 보 유 업 체	25	-	25	21	4	20
민 간 견 인 업 체	437	-	437	359	78	297
견 인 사 업 소	46	-	46	45	1	34
이 샷 짐 센 터	236	-	236	183	53	171
기 타 기 업 체	1632	50	1,582	1,379	253	1,056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시도	합계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시설수	수보전화수	시설수	수보전화수	시설수	수보전화수	시설수	수보전화수
합계	332	1,042	187	520	140	513	5	10
서울	55	110	33	66	22	44	-	-
부산	12	40	12	40	-	-	-	-
대구	11	11	9	9	2	2	-	-
인천	11	22	11	22	-	-	-	-
광주	15	44	10	35	-	-	5	10
대전	9	18	9	18	-	-	-	-
울산	12	32	11	27	1	5	-	-
경기	99	350	2	10	97	340	-	-
강원	11	144	11	120	-	24	-	-
충북	8	8	8	8	-	-	-	-
충남	7	14	7	14	-	-	-	-
전북	11	42	11	22	-	20	-	-
전남	11	75	11	33	-	42	-	-
경북	12	36	12	36	-	-	-	-
경남	39	78	21	42	18	36	-	-
제주	9	18	9	18	-	-	-	-

2-5

119수보관서 현황

시도	계	소방 본부	소방서	119 안전 센터	기타	수보형태	10년 신설관서명
합 계	68	15	52	0	1		9개소 신설
서울	1	-	-	-	1센터	통합수보	
부산	1	1	-	-	-	통합수보	기장소방서
대구	1	1	-	-	-	통합수보	
인천	1	1	-	-	-	통합수보	
광주	1	1	-	-	-	통합수보	
대전	1	1	-	-	-	통합수보	
울산	1	1	-	-	-	통합수보	
경기	35	1	34	-	1	서별분산수보	
강원	1	1	-	-	-	통합수보	횡성소방서, 대관령119안전센터, 우천119안전센터
충북	1	1	-	-	-	통합수보	
충남	1	1	-	-	-	통합수보	배방119안전센터, 서면119안전센터, 서산화학구조대
전북	1	1	-	-	-	통합수보	
전남	1	1	-	-	-	통합수보	
경북	1	1	-	-	-	통합수보	
경남	19	1	18	-	-	통합수보	산청소방서, 의령소방서
제주	1	1	-	-	-	통합수보	

2-6

지령시스템 운용(119신고 접수현황)

구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대민출동 및 기타							
화계	총계	13,055,928	3,154,064	295,296	331,174	2,102,774	424,823	109,839	1,321,877	23,331	959,425	5,523,449	1,963,940
	유선	5,175,721	1,450,572	120,058	140,515	963,235	226,764	39,057	520,549	10,724	291,826	2,048,165	814,828
	무선	7,880,207	1,703,495	175,238	190,659	1,139,539	198,059	70,782	801,328	12,607	667,599	3,475,284	1,149,112
서민	총계	2,608,475	581,929	26,719	42,799	449,707	62,704	22,335	270,461	1,618	112	1,701,390	30,630
	유선	1,086,637	337,644	7,949	20,968	278,629	30,098	7,956	103,356	760	49	631,798	5,074
	무선	1,521,838	244,285	18,770	21,831	171,078	32,606	14,379	167,105	858	63	1,069,592	25,556
파산	총계	865,856	172,259	2,731	18,902	125,586	25,040	5,536	123,263	2,077	32,203	396,185	134,333
	유선	349,969	93,198	1,098	10,237	59,963	21,900	1,595	51,971	1,179	9,955	136,567	55,504
	무선	515,887	79,061	1,633	8,665	65,623	3,140	3,941	71,292	898	22,248	259,618	78,829
대민	총계	398,826	109,387	5,233	12,756	73,177	18,221	1,828	37,064	838	40,009	166,451	43,249
	유선	151,553	41,567	1,989	4,847	27,807	6,924	695	14,084	318	15,203	63,251	16,435
	무선	247,273	67,820	3,244	7,909	45,370	11,297	1,133	22,980	520	24,806	103,200	26,814
인건	총계	470,443	163,577	30,791	15,467	113,365	3,954	9,229	51,181	473	95,035	83,295	67,653
	유선	201,272	64,395	10,627	5,218	46,530	2,020	3,771	19,692	325	36,574	45,843	30,672
	무선	269,171	99,182	20,164	10,249	66,835	1,934	5,458	31,489	148	58,461	37,452	36,981
관공	총계	386,122	65,889	5,898	6,023	52,134	1,834	334	19,961	698	213,554	70,375	15,311
	유선	166,932	28,486	2,550	2,604	22,539	793	144	8,630	302	91,402	30,425	7,543
	무선	219,190	37,403	3,348	3,419	29,595	1,041	190	11,331	396	122,152	39,950	7,768
대건	총계	361,090	84,371	5,532	7,616	59,216	12,007	11,452	100,892	790	41,116	22,498	99,971
	유선	175,858	40,330	2,489	3,655	28,423	5,763	6,185	48,428	553	18,503	9,100	52,759
	무선	185,232	44,041	3,043	3,961	30,793	6,244	5,267	52,464	237	22,613	13,398	47,212
에민	총계	234,423	45,699	5,767	6,228	30,767	2,937	143	14,340	1,183	9,467	37,258	126,333
	유선	97,097	17,802	1,418	2,393	11,726	2,265	31	4,670	678	3,616	15,894	54,406
	무선	137,326	27,897	4,349	3,835	19,041	672	112	9,670	505	5,851	21,364	71,927

제3장 소방정책 분야

구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소 계	화 재	구 조	구 급	대민출동 및 기타							
경 기	총계	2,240,094	492,506	23,632	65,666	391,372	11,836	7,185	197,690	4,325	1,800	1,423,591	112,997
	유선	1,333,605	292,040	15,961	42,252	227,427	6,400	5,323	119,339	3,127	600	851,952	61,224
	무선	906,489	200,466	7,671	23,414	163,945	5,436	1,862	78,351	1,198	1,200	571,639	51,773
강 원	총계	400,986	173,894	61,284	18,595	88,642	5,373	1,272	69,257	3,195	56,608	86,227	10,533
	유선	200,862	77,833	24,565	7,354	41,734	4,180	228	29,798	2,199	28,542	56,656	5,606
	무선	200,124	96,061	36,719	11,241	46,908	1,193	1,044	39,459	996	28,066	29,571	4,927
세 양	총계	343,784	83,825	5,538	11,846	62,819	3,622	1,372	44,054	1,198	0	67,154	146,181
	유선	164,143	42,610	2,078	6,129	31,521	2,882	299	17,602	684	0	33,387	69,561
	무선	179,641	41,215	3,460	5,717	31,298	740	1,073	26,452	514	0	33,767	76,620
세 양	총계	523,658	140,443	8,811	17,117	86,994	27,521	1,928	181,281	935	0	23,679	175,392
	유선	285,393	77,383	3,284	7,882	42,228	23,989	341	92,376	416	0	13,495	101,382
	무선	238,265	63,060	5,527	9,235	44,766	3,532	1,587	88,905	519	0	10,184	74,010
진 기	총계	395,740	134,096	8,872	18,126	94,085	13,013	2,776	64,986	722	58,200	119,309	15,651
	유선	188,284	55,725	2,669	6,020	42,186	4,850	728	27,260	412	24,285	72,931	6,943
	무선	207,456	78,371	6,203	12,106	51,899	8,163	2,048	37,726	310	33,915	46,378	8,708
진 기	총계	500,653	144,138	24,309	19,378	95,824	4,627	3,883	46,726	629	137,135	95,176	72,966
	유선	224,137	55,169	5,642	5,984	41,911	1,632	902	18,698	334	50,242	54,585	44,207
	무선	276,516	88,969	18,667	13,394	53,913	2,995	2,981	28,028	295	86,893	40,591	28,759
진 기	총계	562,576	175,516	28,878	21,079	110,611	14,948	4,142	68,829	1,936	81,982	32,228	197,943
	유선	234,320	72,387	6,717	7,142	48,459	10,069	843	29,650	987	28,778	17,036	84,639
	무선	328,256	103,129	22,161	13,937	62,152	4,879	3,299	39,179	949	53,204	15,192	113,304
진 기	총계	730,104	228,668	24,074	37,138	154,316	13,140	6,570	32,864	5,568	32,850	65,700	357,884
	유선	316,174	98,329	10,352	15,970	66,356	5,651	2,826	14,132	2,950	14,126	28,251	155,560
	무선	413,930	130,339	13,722	21,168	87,960	7,489	3,744	18,732	2,618	18,724	37,449	202,324
제 조	총계	144,353	48,561	4,080	4,592	34,658	5,231	1,520	18,632	959	38,997	29,478	6,206
	유선	49,818	26,995	1,521	1,729	21,329	2,416	660	6,306	180	10,012	3,780	1,885
	무선	94,535	21,566	2,559	2,863	13,329	2,815	860	12,326	779	28,985	25,698	4,321

2-7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신고접수방식	119상황정보시스템 추진상황	GIS 추진상황	표준 적용여부
서울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부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대구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인천	본부통합	완료	완료	표준
광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대전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울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경기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미구축
강원	본부통합	완료	완료	표준
충북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충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전북	본부통합	완료	완료	표준
전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표준
경북	본부통합	완료	완료	표준
경남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미구축
제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비표준

2-8

화재발생현황('06~'10)

총괄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0		41,863	1,892	304	1,588	266,756
2009		47,318	2,441	409	2,032	251,853
2008		49,631	2,716	468	2,248	383,142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연평균증가율(%)		9.5	-2.3	-8.2	-0.9	22.7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0		2	38	14	24	104
2009		4	36	28	8	127
2008		6	83	64	19	71,050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연평균		4	61.4	30.2	31.2	14,379.6

※ 대형화재 :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20억원 이상

가. 2010 화재발생 현황

1. 총괄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0		41,863	1,892	304	1,588	266,776
2009		47,318	2,441	409	2,032	251,853
증감	수	-5,455	-549	-105	-444	14,913
	%	-11.5%	-22.5%	-25.7%	-21.9%	5.9%

2. 원인별

구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2010년	41863	10827	4060	288	184	567	17870	807	377	632	2043	4208
1월	4178	1198	445	18	23	56	1677	78	2	44	159	478
2월	3706	959	307	21	18	44	1685	72	3	66	159	372
3월	3409	814	325	11	14	43	1552	70	3	44	189	344
4월	3616	752	293	21	16	47	1841	71	3	56	153	363
5월	3519	758	303	24	12	40	1672	58	13	41	234	364
6월	3372	777	297	33	6	44	1504	58	37	51	197	368
7월	2842	1027	284	41	15	49	858	63	58	50	132	265
8월	2890	1072	346	30	13	35	750	40	157	50	139	258
9월	2845	885	326	28	13	41	964	58	73	59	135	263
10월	3272	759	344	22	14	52	1444	65	5	70	192	305
11월	4019	825	347	13	22	54	2023	78	17	49	190	401
12월	4195	1001	443	26	18	62	1900	96	6	52	164	427

3. 장소별

구분	계	주거	교육 시설	판매, 업무 시설	집합 시설	의료, 복지 시설	산업 시설	운수 자동차 시설	문화재 시설	생활 서비스	기타 서비스	자동차, 철도 차량	위험물, 가스 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계	41863	10509	471	2295	432	404	5354	296	7	4865	2271	5788	30	112	2209	6820
1월	4178	1128	27	241	51	41	599	44	1	444	248	537	1	9	167	640
2월	3706	953	28	221	33	35	480	30		370	207	441	4	10	304	590
3월	3409	852	37	187	25	29	419	28	1	348	191	471	2	10	255	554
4월	3616	807	43	184	29	40	456	15		363	227	443	4	11	394	600
5월	3519	795	32	159	39	36	409	36		377	202	511	3	8	263	649
6월	3372	711	50	183	29	26	426	19		412	150	496	1	11	206	652
7월	2842	633	43	191	37	28	386	17	1	478	111	498	5	7	22	385
8월	2890	785	35	169	42	42	370	21	1	460	125	472	1	6	6	355
9월	2845	823	36	196	37	26	352	17		411	128	444	1	6	24	344
10월	3272	918	40	170	32	29	378	18	1	400	173	518		6	87	502
11월	4019	1002	47	191	34	36	488	20		363	228	467	4	14	268	857
12월	4195	1102	53	203	44	36	591	31	2	439	281	490	4	14	213	692

4.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0		2	38	14	24	104
2009		4	36	28	8	127
'09년 대비	건수	-2	2	-14	16	-23
	%	50.0	5.56	-50.0	200.0	-18.1

 현황

순서	일시	장소 / 명칭	원인	인명피해(명)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38	24	24	104,548
1	'10. 11. 12. 04 : 24	경북 포항시남구 인덕동 161-2 (인덕노인요양센터)	전기적요인	10	10	0	9,876
2	'10. 11. 22. 16 : 5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4 (임성빌딩)	방화	28	4	24	94,672

5.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소실 동수	소실면적 (㎡)	
		계	사망	부상				
2010년 계	41,863	1,892	304	1,588	266,766,265	16,633	2,714,429	
서울	'10	5,321	230	42	188	14,503,873	1,563	32,137
	'09	6,318	257	37	220	15,571,156	1,873	77,112
	'08	6,731	340	54	286	26,352,335	1,829	77,982
부산	'10	2,403	110	19	91	10,546,785	911	62,277
	'09	2,941	192	50	142	6,657,850	1,190	201,090
	'08	3,072	145	19	126	4,861,274	1,176	105,254
대구	'10	1,923	84	12	72	4,637,285	566	22,275
	'09	2,282	87	11	76	5,075,782	684	101,531
	'08	2,479	100	20	80	6,991,644	688	58,925
인천	'10	1,746	80	15	65	11,614,854	966	52,985
	'09	1,905	110	15	95	11,124,075	955	149,898
	'08	2,139	117	17	100	11,240,963	1,003	269,945
광주	'10	1,273	31	7	24	2,729,570	287	29,766
	'09	1,540	47	9	38	3,125,477	340	135,711
	'08	1,711	68	5	63	3,861,801	462	74,727
대전	'10	1,438	55	12	43	5,749,591	328	24,625
	'09	1,397	97	11	86	5,281,727	335	86,544
	'08	1,550	91	10	81	6,072,034	339	93,870
울산	'10	1,196	74	3	71	3,158,429	167	129,958
	'09	1,331	70	6	64	4,266,521	221	334,149
	'08	1,495	73	12	61	4,326,132	281	97,542
경기	'10	9,321	431	62	369	90,121,936	4,830	611,508
	'09	10,479	555	79	476	81,776,828	4,753	1,190,339
	'08	10,920	749	151	598	196,640,817	4,574	1,235,104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 동수	소실면적 (㎡)	
		계	사망	부상				
강원	'10	2,430	106	13	93	11,963,566	629	320,617
	'09	2,760	104	24	80	10,969,247	859	443,899
	'08	2,556	99	17	82	11,501,072	792	225,093
충북	'10	1,351	87	15	72	17,434,906	607	93,796
	'09	1,443	129	17	112	19,189,339	534	334,553
	'08	1,518	136	20	116	14,597,035	617	239,535
충남	'10	2,994	135	18	117	27,140,238	1,434	288,723
	'09	2,927	140	27	113	19,533,973	1,355	488,015
	'08	2,899	121	32	89	20,257,090	1,412	465,264
전북	'10	1,660	74	20	54	10,014,594	950	130,378
	'09	1,650	95	23	72	10,270,966	1,101	1,168,042
	'08	1,916	126	17	109	11,645,478	1,125	366,698
전남	'10	1,822	64	10	54	10,709,209	710	148,749
	'09	2,291	138	20	118	13,257,240	823	349,037
	'08	2,457	137	34	103	11,989,397	1,160	602,174
경북	'10	2,957	150	28	122	16,689,655	1,279	469,708
	'09	3,280	194	38	156	23,418,492	1,370	1,854,378
	'08	3,144	164	24	140	23,414,062	1,263	448,593
경남	'10	3,341	150	24	126	23,737,838	1,294	254,026
	'09	3,968	190	34	156	26,767,516	1,544	781,039
	'08	4,389	206	26	180	26,767,516	1,575	533,130
제주	'10	687	31	4	27	6,023,936	123	42,917
	'09	806	36	8	28	2,367,269	218	56,773
	'08	655	44	10	34	2,624,069	183	90,529

나. 대형화재

1. 인명피해

순 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원 인	인명피해(명)			재산 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1	'02.02.18 09 : 53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지하철 전동차 』	방 화	340	192	148	4,768,845
2	'71.12.25 10 : 17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LPG취급 부주의	226	163	63	838,200
3	'74.11.03 02 : 4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왕코너)	전기합선	123	88	35	21,100
4	'60.03.02 07 : 55	부산시 중구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성 냇	101	62	39	10,000
5	'99.10.30 18 : 57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불 장 난	137	56	81	64,813
6	'72.12.02 20 : 27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전기합선	131	53	78	350,000
7	'55.03.02 18 : 33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역 구내 여객차량)	유 류	56	42	14	80
8	'73.08.12 04 : 43	충북 영동 영동역 열차 (유조차)사고	탈선화재	51	40	11	17,903
9	'08.01.07 10 : 3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769-5 (코리아 냉동창고)	미 상	50	40	10	7,877,683
10	'84.01.14 08 : 00	부산 진구 부전동 (대야호텔)	석유난로	106	38	68	200,000

2. 재산피해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원인	재산피해	
				당시 피해액	당시 미화(\$) 환산액
1	'05.12.29 21 : 57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전기	186억8,242만원	18,442,666 \$
2	'53.11.27 20 : 25	부산시 중구 영주동 (부산역)	풍로불티	176억9,400만원	2,949,000,000 \$
3	'74.01.23 15 : 45	경북 구미시 왕평동 (윤성방직)	전기	156억원	32,231,405 \$
4	'96.10.07 20 : 45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충남방직)	전기합선	122억2,000만원	15,184,274 \$
5	'99.05.13 14 : 11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	배관재질 결함	156억4,170만원	13,780,141 \$
6	'88.03.05 10 : 15	충북 충주 목행동 (새한미디어)	용접부주의	98억7,357만원	13,515,626 \$
7	'08.02.10 20 : 4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 송례문	방화	100억원	10,615,711 \$
8	'05.09.24 13 : 16	충북 청원 오창면 (일신방직)	원인미상	62억7,100만원	6,190,523 \$
9	'60.06.16 12 : 23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유류	46억8,779만원	7,211,982 \$
10	'90.10.21 05 : 10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대우전자)	불티	47억5,400만원	6,714,974 \$

다. 특수화재

1. 대량위험물화재

순서	일 자	장 소	원 인	인명피해(명)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1	'86.12.17	전남 여천시 월내동 (력키메탄올공장)	무수황산 탱크폭발	25	1	24	30,000
2	'87. 8.14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공항창고)	화학폭발	89	9	80	110,000
3	'95.04.28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누출가스 폭 발	278	102	176	2,130,000
4	'98.09.11	경기 부천시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충전 시설취급 부주의	84	-	84	6,489,433
5	'00.09.27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대흥정공)	LP가스폭발	19	6	13	45,000

2. 고압가스화재 현황

순서	일 자	장 소	원 인	인명피해(명)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1	'92.02.23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가스탱크 로리충돌	21		21	1,172,440
2	'94.12.07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66-6한 곡스공기차	누출가스 폭 발	61	12	49	600,000
3	'95.04.28	대구시 달서구 상인 (지하철 공사장)	누출가스 폭 발	278	102	176	2,130,000
4	'98.09.11	경기 부천시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충전 시설취급 부주의	84		84	6,489,433
5	'00.09.27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대흥정공)	LP가스폭발	19	6	13	45,000

3. 차량화재발생 추세

연도별	구 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명)		
			계	사망	부상
2010년		5,788	127	18	109
2009년		5,983	217	55	162
2008년		6,449	246	66	180
2007년		6,220	154	50	104
2006년		5,929	170	46	124
연평균(%)		-0.5	-0.7	-10.8	3.6

3. 예방 업무

3-1 소방검사

가. 소방검사

1. 소방검사제도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소방검사)

2)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소방검사대상 : 전체 832,608개소

☞ 일반검사대상 : 789,206개소

☞ 자체점검대상 : 43,402개소

4) 검사내용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 / 관계인에게 질문

5) 소방검사의 항목

☞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 업무수행(공공기관등의 방화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검사자의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건축·전기·기계·가스 등 국가기술자격자

제3장 소방정책 분야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자

☞ 기타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검사방법

☞ 정기검사 :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화재예방 전반에 관한 검사

☞ 특별검사 : 대형화재발생 및 계절적 취약시기에 특별점검


나. 소방검사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구 분	계		소방검사대상		종합정밀점검대상		
	소방검사	종합정밀	일반대상	공공기관	일반	공공	
계	789,206	43,402	769,754	19,452	21,773	21,629	
1	근린생활시설	417,633	1,386	417,029	604	1,307	79
2	위락시설	7,959	33	7,958	1	33	0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18,545	2,024	18,111	434	844	1,180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3,641	1,859	3,377	264	1,022	837
5	숙박시설	27,271	456	27,260	11	450	6
6	노유자시설	23,007	1,287	20,459	2,548	107	1,180
7	의료시설	2,103	659	2,079	24	545	114
8	아파트	22,862	6,223	22,855	7	6,202	21
	기숙사	829	104	788	41	47	57
9	업무시설	32,235	7,994	20,603	11,632	2,112	5,882
10	통신활영시설	716	322	681	35	299	23
11	교육연구시설	5,938	11,469	3,164	2,774	336	11,133
12	공장	101,710	1,540	101,704	6	1,512	28
13	창고시설	18,222	415	18,184	38	369	46
14	운수자동차관련	9,931	541	9,818	113	200	341
15	관광휴게시설	692	52	635	57	9	43
16	동식물관련시설	19,227	25	19,205	22	11	14
17	위생등관련시설	2,164	255	1,829	335	24	231
18	교정시설	17	76	3	14	0	76
19	위험물저장처리시설	38,086	18	38,069	17	9	9
20	지하가	1,052	111	844	208	26	85
21	지하구	372	92	270	102	3	89
22	문화재	2,673	11	2,590	83	1	10
23	복합건축물	32,321	6,450	32,239	82	6,305	145

다.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소방관서

구 분	총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사	소방설비			위험물관리				관련 기술 자격 소지자	소방 안전 학과 전공자	이공계 학과 졸업자	소방 교 전 문 수 이 수 자	기 타
				소 계	기 사	산 업 기 사	소 계	기 능 장	산 업 기 사	기 능 사					
계	843	0	2	214	125	89	85	2	15	68	37	68	59	192	186
서울	163	0	0	81	49	32	7	0	0	7	3	8	2	53	9
부산	48	0	0	3	3	0	8	0	0	8	0	0	2	12	23
대구	20	0	0	2	2	0	1	0	0	1	0	1	1	4	11
인천	62	0	0	11	6	5	5	0	3	2	1	9	1	6	29
광주	8	0	0	2	1	1	3	0	0	3	1	0	0	1	1
대전	10	0	0	3	2	1	2	0	0	2	0	0	1	4	0
울산	82	0	0	10	9	1	16	1	7	8	22	3	0	4	27
경기	190	0	0	52	26	26	10	1	0	9	6	23	5	65	29
강원	32	0	0	6	1	5	1	0	0	1	0	2	8	5	10
충북	16	0	0	6	4	2	1	0	0	1	1	3	1	3	1
충남	57	0	0	13	6	7	5	0	2	3	1	8	15	7	8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139	0	2	18	10	8	26	0	3	23	1	11	22	27	32
제주	16	0	0	7	6	1	0	0	0	0	1	0	1	1	6

 119안전센터

구 분	총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사	소방설비			위험물관리				관련 기술 자격 소지자	소방 안전 학과 전공자	이공계 학과 졸업자	소방 교 전문 교수 이수자	기 타
				소 계	기 사	산 업 기 사	소 계	기 능 장	산 업 기 사	기 능 사					
계	12,767	3	9	983	593	390	808	6	92	710	280	436	961	2,002	7,285
서울	480	1	1	102	66	36	37	0	11	26	17	34	44	207	37
부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구	564	0	1	33	20	13	121	0	12	109	3	18	41	68	279
인천	1,437	0	1	76	46	30	36	0	4	32	21	32	52	119	1,100
광주	557	0	0	49	38	11	23	0	2	21	9	28	61	145	242
대전	780	0	1	95	50	45	116	0	9	107	19	42	25	115	367
울산	238	0	1	48	33	15	27	1	5	21	61	6	6	14	75
경기	3,020	0	0	196	106	90	97	0	15	82	77	128	269	837	1,416
강원	350	0	0	31	26	5	19	1	5	13	18	20	96	47	119
충북	688	0	1	65	40	25	50	1	7	42	10	25	66	96	375
충남	554	0	0	67	26	41	45	1	7	37	5	17	46	64	310
전북	377	0	1	26	16	10	27	1	3	23	6	5	51	45	216
전남	500	0	0	80	47	33	74	1	4	69	8	12	2	61	263
경북	1,520	2	1	30	19	11	52	0	2	50	7	34	28	56	1,310
경남	1,572	0	1	72	48	24	82	0	6	76	18	35	155	93	1,116
제주	130	0	0	13	12	1	2	0	0	2	1	0	19	35	60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관서별	총계	1	2	3	4	5	6	7	8		9	10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기숙사	업무시설	통신영입시설
계	769,754	417,029	7,958	18,111	3,377	27,260	20,459	2,079	22,855	788	20,603	681
서울	108,917	73,713	46	2,351	342	3,027	1,558	193	4,708	55	3,666	14
부산	48,876	28,282	29	923	378	2,440	1,352	153	2,479	18	691	22
대구	46,296	29,894	138	770	157	1,061	938	108	1,028	18	421	19
인천	43,059	26,044	106	1,030	127	1,218	1,010	72	986	6	558	26
광주	23,268	16,655	118	522	75	931	829	90	593	18	322	13
대전	36,612	27,581	107	723	165	916	1,252	61	429	21	278	20
울산	21,866	8,305	465	309	83	726	450	49	972	29	116	12
경기	118,711	51,620	330	3,662	377	4,039	3,365	321	2,858	153	1,720	86
강원	36,037	20,767	339	1,033	183	1,791	2,486	65	919	64	1,020	73
충북	23,524	6,019	294	678	116	946	491	121	825	24	278	23
충남	53,038	26,711	957	1,287	180	1,747	1,017	120	785	93	1,694	53
전북	41,364	22,013	641	1,191	162	1,412	1,016	165	833	27	3,587	60
전남	30,875	13,728	1,060	947	273	1,601	964	166	776	64	727	55
경북	64,432	31,195	1,702	1,190	398	2,203	1,651	169	1,732	89	3,182	114
경남	62,392	29,262	1,488	1,234	322	2,529	1,607	209	2,426	89	1,887	48
제주	10,487	5,240	138	261	39	673	473	17	506	20	456	43

제3장 소방정책 분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교육 연구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운수 자동차	관광 휴게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위생 등 관련 시설	교정 시설	위험물 시설	지하가 지하구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건축물
3,164	101,704	18,184	9,818	635	19,205	1,829	3	38,069	844	270	2,590	32,239
356	1,638	306	742	3	2	8	1	1,580	17	56	96	14,439
594	6,353	565	712	9	56	98	1	1,231	12	32	18	2,428
53	8,390	785	424	7	34	28	0	786	8	6	44	1,179
99	8,176	577	676	4	63	192	0	788	11	3	34	1,253
69	1,313	266	420	1	16	100	0	528	10	11	39	329
114	847	461	363	11	73	271	0	2,480	17	78	59	285
47	1,911	148	186	5	29	56	0	7,429	5	1	12	521
569	33,680	3,659	1,500	87	1,331	252	0	3,974	87	36	155	4,850
195	1,660	727	806	115	477	101	0	1,326	161	4	132	1,593
137	3,783	573	173	52	337	54	0	7,816	32	3	101	648
130	5,657	2,190	682	74	5,616	213	0	1,897	74	7	282	1,572
202	2,848	1,378	504	51	3,080	96	0	1,554	101	3	254	186
105	3,243	1,687	427	37	2,635	70	0	1,745	113	5	287	160
272	9,924	2,464	988	89	2,974	141	0	2,344	90	12	728	781
172	11,970	1,786	973	75	1,929	132	1	2,243	106	13	322	1,569
50	311	612	242	15	553	17	0	348	0	0	27	446

가.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시행령 제2조)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 (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신종다중이용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소 방 시 설	방화시설	그 밖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식, 자동식소화기 ☞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경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문 -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피난유도선 - 피난안내영상물 - 피난안내도

라. 다중이용업소 현황

🌸 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총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영 화 상 영 관	비 디 오 물 감 상 실 업
		지하 66㎡ 이상	지상 100㎡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 이상	지상 100㎡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 이상	지상 100㎡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계	178,564	4,390	2,249	119	58	15,506	38,136	29,193	14,539	331	1,286

비디오물소극장업	학 원			목욕장업		게 임 제 공 업	계 제 공 업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P C 방	비디오물소극장업	노 래 연 습 장	산 후 조 리 원	권 총 사 격 장	골 프 연 습 장	안 마 시 술 소
	수용 인원 300인 이상	100인상 300인미만		수용 인원 100인 이상	찜 질 방 업									
		(1) 기 숙 사	(2) 학 원											
38	1,733	14	704	442	859	1,338	3,523	20,872	251	36,759	463	9	5,091	661

❁ 신종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총계	고시원	화상 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9,940	8,273	706	225	736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가. 대형화재취약대상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

나.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

대상별	대형대상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 (기타 층은 500㎡이상)
영화 상영관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
판매시설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동일한 건물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및 창고	-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복합건물	- 연면적 30,000㎡이상 (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 부분을 면적에 산입)
고층 건축물	- 11층 이상(아파트제외)
기 타 건축물	- 고시원(독립방이 100실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영업장 면적 330㎡ 또는 룬 수 30실 이상)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 (연면적 1,000㎡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별 현황

구분	총계	유형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1,000㎡ 이상)				숙박시설	
		지하층 또는 5층 이상 바닥 면적 330㎡ 이상	기타층 으로 500㎡ 이상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 층에 설치된 영화 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할 인매장	기타	5층 이상 으로 객실 50실 이상	다중 이용업 소있고 객실 30실 이상
계	7,094	259	98	148	6	149	79	344	114	604	398

병	원	공장 및 물류, 병동창고	위험물 저장 취급	복합 건축물	고층 건축물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고시원	기타다중 이용업소	노유자 시 설	장애인 수용시설	지하 상가	기타
5층 이상 병상 100 개 이상	정신 보건 시설로 병상 100개 이상	15,000 ㎡ 이상	지정 수량 3,000배 이상	30,000 ㎡ 이상	11층 이상 (APT 제외)	독립 방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면적 330㎡ 이상 또는 30실 이상	바닥면적 330㎡,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바닥면적 330㎡,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1000 ㎡ 이상	
440	57	1,004	226	403	914	39	495	485	54	69	709

3-5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제도란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령상 선임) 하는 것을 말함

나.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방화관리자 자격(1급과 2급으로 분류)

-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 ❖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주요업무

- ❖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마. 방화관리대상

❖ 1급 방화관리대상

- ☞ 연면적 15,000m²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2급 방화관리대상

- ☞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공공기관 방화관리

1. 목 적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책임하에 방화관리업무수행을 통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근 거 : 설치유지법 제20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 적용범위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 지방공기업법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4. 기관장의 책임

-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방화관리자의 선임

1) 기관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 ☞ 소방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방화관리 강습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가능

6. 방화관리자의 책무

- ☞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7.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관 서 명	총계	1급대상				2급대상						
		소계	연면적 1만 5천㎡ 이상	11층 이상	가연 성 가 스 1천톤 이 상	소계	스프링 리 물분무 등설치 대 상	옥 내 소 화 전 치 상 대 상	자동화재 탐지설치 대상	가연 성 가 스 1천톤 미만	지 하 구	공동 주택 (주택법 시행령 63조 1항)
계	266,641	8,038	5,081	2,920	37	217,522	32,053	44,469	128,789	296	680	11,137

공공기관대상																	
소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 교			정부투자 기 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사립학교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912	22,870	17,299	346	7,986	12,381	113	8,430	2,379	136	1,470	697	136	1,429	518	181	3,555	1,324

3-6

화재경계지구

가.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시의 건물밀집 지역으로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제도

나. 지정권자 : 시·도지사

다. 지정대상 구역(동법시행령 제4조)

- ✚ 시장지역
- ✚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없는 지역
-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라. 소방검사 실시

- ✚ 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
- ✚ 횟수 : 연 1회 이상
- ✚ 조치 :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령

마.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 ✚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
- ✚ 횟수 : 연 1회 이상
- ✚ 통 보 :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

바. 화재경계지구 현황

구 분	계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제조소등 밀집지역	석유화학 공단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 시설 소방출동로 없는지역	소 방 관서장 지 정
계	109	80	3	11	0	3	1	11
서울	21	9	2	8	0	0	0	2
부산	4	2	0	0	0	0	1	1
대구	6	4	0	1	0	0	0	1
인천	9	7	1	1	0	0	0	0
광주	3	2	0	1	0	0	0	0
대전	4	4	0	0	0	0	0	0
울산	1	0	0	0	0	1	0	0
경기	18	13	0	0	0	0	0	5
강원	16	16	0	0	0	0	0	0
충북	4	4	0	0	0	0	0	0
충남	5	4	0	0	0	1	0	0
전북	7	6	0	0	0	0	0	1
전남	1	0	0	0	0	1	0	0
경북	7	6	0	0	0	0	0	1
경남	1	1	0	0	0	0	0	0
제주	2	2	0	0	0	0	0	0

3-7

건축허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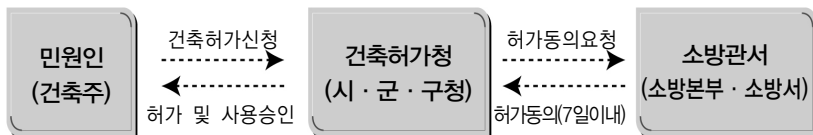
가.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나. 건축허가 동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동법시행령 제12조)

- ✚ 면적 400㎡ 이상(학교시설 100㎡, 청소년·노유자시설 200㎡)
- ✚ 상기 대상의 주차용 건축물 또는 차고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것 또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 ✚ 비행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이상
-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다. 허가동의 절차



※ 연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이내, 보완 필요시 3일 범위내 1회 연장 가능

라. 2010년도 건축허가동의 현황

허가동의						사용승인(가사용포함)					
계	동의	부동의				계	사용승인	보완통보			
		소계	1회	2회	3회			소계	1회	2회	3회
45,325	43,358	1,967	1,886	80	1	28,251	27,347	901	728	176	0

3-8 소방공사업 등 현황

가. 소방시설업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로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소방시설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2. 등록과정

-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 등록절차



3. 소방시설업의 종류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 시공업무 수행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완공검사
 - ☞ 완공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소방공사감리대상은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 같음
 - ※ 소방공사감리대상중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의 설계업무 수행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설계도면 작성 : 소방서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임
- ✚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감리
-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감리지정 의무자 : 건축주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 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후 완공검사필증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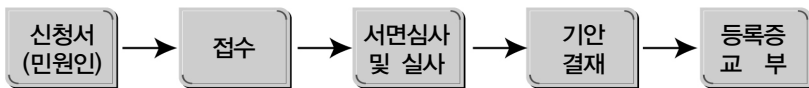
나. 소방시설관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소방 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2. 등록과정

-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 등록절차



3.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 ✚ 소방시설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 종합정밀점검
 -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횃 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횃 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횃 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시 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방화관리업무대행

다. 방염처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방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 방염처리업 등록·시공의무화 ⇒ 2004. 11. 30일부터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방염처리를 할 수 없음

2. 등록과정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절차



3. 방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 섬유류 방염업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 에서 방염처리

✦ 합판·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라. 소방시설업 등 현황

구분	총계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역업			소방시설관리업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목재류
계	7117	812	134	678	4,751	4,080	671	558	227	331	565	58	76	431	431
서울	2006	368	75	293	1,258	982	276	163	98	65	86	0	4	82	131
부산	437	47	7	40	291	267	24	32	16	16	41	2	1	38	26
대구	365	45	7	38	231	192	39	24	11	13	39	14	2	23	26
인천	348	21	3	18	239	219	20	27	13	14	33	0	14	19	28
광주	195	15	1	14	148	144	4	15	2	13	7	1	0	6	10
대전	227	33	5	28	150	133	17	14	6	8	12	1	0	11	18
울산	124	10	0	10	76	70	6	13	6	7	14	0	1	13	11
경기	1559	128	26	102	1,041	870	171	125	50	75	164	23	35	106	101
강원	226	18	0	18	158	145	13	22	1	21	17	0	0	17	11
충북	249	24	1	23	162	143	19	17	4	13	38	7	9	22	8
충남	286	15	3	12	209	179	30	19	5	14	29	6	6	17	14
전북	220	21	2	19	161	153	8	16	4	12	13	0	1	12	9
전남	316	20	1	19	244	229	15	22	3	19	19	2	0	17	11
경북	27	2	0	2	21	16	5	3	0	3	0	0	0	0	1
경남	419	29	2	27	286	263	23	34	6	28	48	2	3	43	22
제주	113	16	1	15	76	75	1	12	2	10	5	0	0	5	4

4. 위험물 안전관리

4-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 **설치허가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권한위임)

- ❖ 허가대상 :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수량이 지정수량 이상 시설·장소
- ※ 지정수량(예)

취발유	경유·등유	방카C유	알코올류	과산화수소
200ℓ	1,000ℓ	2,000ℓ	400ℓ	300kg

❁ **안전관리자 선임**

❖ 국가기술자격자

-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모든 위험물
- ☞ 위험물기능사 : 자격증 기재된 류(類)의 위험물
- ☞ 안전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 ☞ 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가능

❁ **안전관리자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실시

-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2년 1회, 8시간 이내
- ❖ 위험물운송자 : 3년 1회, 8시간 이내

4-2 위험물 검사

- ❁ 정기점검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연 1회 이상
 - ❖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
 -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 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검사대상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물 100만리터 이상)
 - ☞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 안전조치 후 공사에 구조안전 점검시기 연장신청으로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 ※ 안전조치
 - ①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조치
 - ②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조치(년1회 일반정기점검)

4-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 ❁ 제조소 : 1일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설치한 곳(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 포함)
- ❁ 저장소
 -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 ❁ 취급소
 - ① 주유취급소 ② 판매취급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일반취급소

4-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저장취급

① 지정수량 이상(위험물안전관리법)

- ❖ 상시적 저장취급 : 제조소등 설치허가
- ❖ 일시적 저장취급 : 임시저장 취급신고 - 90일 이내

②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특수가연물(시·도조례)

- ❖ 운반 : 세부기준(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에 의함
- ❖ 운송 : 세부기준(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21)에 의함

4-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계	제조소	취 급 소				
		소 계	주 유 취급소	판 매 취급소	이 송 취급소	일 반 취급소
123,449	1,570	26,147	15,879	230	294	9,744

저 장 소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95,765	5,444	25,428	16,129	12,829	41	32,202	3,666	26

4-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총 계	제조소 등의 수	92,522
	선 임 자	59,558
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소 계	11,732
	위험물기능장	54
	위험물산업기사	1,951
	위험물기능사	9,727
기타 자격자	소 계	47,826
	강습수료자	45,723
	관련자격검직	277
	일정요건구비	1,826

4-7

위험물별 현황

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125,510	538	646	283	122,814	928	301

5. 구조·구급업무

5-1 119 구조·구급대 운영

가. 기본현황

1. 설치근거

- ✦ 119구조대 : 소방기본법 제34조(구, 소방법 제94조 : '89. 12. 30)
- ✦ 119구급대 : 소방기본법 제35조(구, 소방법 제93조 : '83. 12. 31)

○ 구조업무

- 1988. 4. 30 119구조대원복제규정 제정(내무부훈령 제938호)
- 1988. 8. 1 (구조대 발족)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7개시 9개대(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 1989. 12. 30 (소방법 개정) 소방기본업무로 법제화
- 1995. 12. 27 중앙119구조대 발대(6팀 68명)
- 1997. 12. 20 (내무부령 제747호 제정)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규칙
- 2005. 8. 22 (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2011. 1. 28 중앙119구조단 승격 6팀 113명

○ 구급업무

- 1970년대 미 잉여 앰불런스를 인수받아 화재현장 응급환자 이송
☞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 운영지침(내무부훈령 제595호; '79. 9. 3)
- 1980. 10. 2 대전소방서(구급차 1대) 구급업무 수행
- 1981. 6 ~ 부산시 4개 소방서(구급차 4대) 구급업무 수행

- 1982. 3. 1 서울시 8개 소방서(구급차 8대) 구급업무 수행
- 1982. 6. 9 (내무부 제716호, 보사부 제447호 공동훈령제정)
- 1983. 12. 31 (소방법 개정) 소방기본업무로 법제화(30개 소방서)
- 1989. 8. 18 (내무부예규 제정) 소방구급활동 요강
- 1992. 8. 31 (내무부예규 제742호 제정) 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정
- 2005. 8. 22 (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구조구급업무 확충

- 1994. 11. 8 소방긴급구조체계 확충계획 수립
- 1994. 12. 31 전국 시도 소방관서 구조구급과 설치승인
- 1995. 6. 14 내무부(행정안전부) 소방국 구조구급과 신설
- 2004. 6. 1 소방방재청 출범(대응관리국 구조구급과)
- 2005. 9. 1 직제개편(소방대응본부 구조구급팀)
- 2006. 7. 1 직제개편(소방정책본부 U119팀)
- 2008. 3. 4 직제개편(소방정책국 U119과)
- 2008. 6. 5 직제개편(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2. 설치현황

119구조대 : 215개대 3,041명

☞ 일반구조대 : 197개대 2,683명

☞ 특수구조대 : 15개대 207명 (수난 7, 산악 4, 화학 4)

☞ 직할구조대 : 3개대 151명 (중앙 1, 서울 1, 부산 1)

❖ 소방항공대 : 15개대 헬기 26대 보유

❖ 119구급대 : 1,254개대 7,228명(고속도로구급대 10개대)

3. 보유기준

구 분	인 력	장 비
1 1 9 구 조 대	대·중·소 : 15, 13, 11	구조공작차 외 180종
1 1 9 구 급 대	6	구급차 외 68종
고속도로구급대	6	구급차 외 68종
소 방 향 공 대	8	헬기 2대
수 난 구 조 대	21	수난구조정 외 111종
화 학 구 조 대	21	화학구조차 외 107종
산 약 구 조 대	21	산악형집프차 외 93종

나. 119구조·구급대 현황

1. 일반구조대

시·도	구 조 대	구조대현원(명)
계	197	2,683
서울	22	463
부산	11	180
대구	7	130
인천	8	176
광주	5	92
대전	5	80
울산	4	46
경기	35	394
강원	12	142
충북	12	161
충남	15	183
전북	10	124
전남	10	100
경북	19	194
경남	18	175
제주	4	43

2. 직할 및 특수구조대

사도	직할구조대		특수구조대			장 비		대 원
	중앙	사도	수 난	산악	화학			
계		2	7	4	4	2,215종	68,172점	358
소 방 방재청	1					401	5,4443	101
서 울		1				286	2,830	26
			2(한강)			211	1,625	39
부 산		1				184	1,929	24
울 산					2	280	1,811	27
경 기			2 (청평호, 팔당호)			140	763	23
강 원			1 (소양호)			98	379	7
				1 (설악산)		91	604	19
충 북			1 (충주호)			81	458	10
충 남					1 (서산)	69	359	13
전 남				1 (지리산)		127	841	13
					1 (여수)	48	365	22
경 북			1 (안동호)			68	334	3
경 남				2 (지리산)		131	1,431	31

3. 119구급대 (차량·대원)

시도	구급차	구 급 대 원						대당 인원	유자격자 비율(%)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254	7,228	4,771	2,077	2,694	331	2,126	5.76	70.6%
중 앙	1	9	5	0	5	0	4	9.00	55.6%
서 울	114	1,026	734	310	424	21	271	9.00	73.6%
부 산	57	310	164	66	98	53	93	5.44	70.0%
대 구	49	300	233	94	139	16	51	6.12	83.0%
인 천	50	310	249	168	81	2	59	6.20	81.0%
광 주	32	198	164	91	73	12	22	6.19	88.9%
대 전	31	189	154	88	66	5	30	6.10	84.1%
울 산	27	126	66	31	35	3	57	4.67	54.8%
경 기	221	985	821	434	387	29	135	4.46	86.3%
강 원	96	564	368	65	303	3	193	5.88	65.8%
충 북	79	366	231	106	125	9	126	4.63	65.6%
충 남	72	394	215	121	94	10	169	5.47	57.1%
전 북	67	321	235	77	158	18	68	4.79	78.8%
전 남	85	497	334	173	161	46	117	5.85	76.5%
경 북	115	691	379	102	277	58	254	6.01	63.2%
경 남	130	780	326	113	213	30	424	6.00	45.6%
제 주	28	162	93	38	55	16	53	5.79	67.3%

※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동시자격자는 1급 응급구조사로 분류

다. 소방항공대 현황

1. 헬기보유 : 15개대 26대

☞ 중앙구조대 3대, 시·도 소방항공대 14개대 23대

번호	보유기관	기종	탑승인원	엔진출력	구입년도	제작회사
1	중앙	AS365-N2	14	763×2	'97. 1	프랑스 유로콥터
2		AS365-N2	14	763×2	'99.12	프랑스 유로콥터
3		EC-225	28	2,450×2	'08.12	프랑스 유로콥터
4	서울	BELL 206L3	7	650	'90. 4	미국 벨헬리콥터
5		AS365-N2	14	763×2	'97. 9	프랑스 유로콥터
6		AS365-N2	14	763×2	'99.11	프랑스 유로콥터
7	부산	BK117-B	10	550×2	'92. 1	일본 가와사키
8		BK117-B2	10	550×2	'97. 7	일본 가와사키
9	대구	AS350-B2	6	732	'95.12	프랑스 유로콥터
10		KA-32T	18	2,200×2	'05.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1	인천	BELL 230	10	700×2	'95.10	미국 벨헬리콥터
12	광주	BK117-B2	10	50×2	'97. 5	일본 가와사키
13	울산	KA-32T	18	2,200×2	'00.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4	경기	BELL 206L3	7	650	'91. 5	미국 벨헬리콥터
15		KA-32T	18	2,200×2	'01. 2	러시아 쿠메르타우
16		AS365-N3	14	851×2	'01.12	프랑스 유로콥터
17	강원	AW139	14	1679×2	'09.6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18		AS365-N3	14	851×2	'01. 8	프랑스 유로콥터
19	충북	BK117-C2	10	740×2	'05. 4	일본 가와사키
20	충남	W-3A SOKOL	14	900×2	'99.12	폴란드 스위드닉
21	전북	BK117-B2	10	550×2	'97. 4	일본 가와사키
22	전남	BK117-B2	10	550×2	'98.12	일본 가와사키
23		BELL 430	10	808×2	'06. 1	미국 벨헬리콥터
24	경북	KA-32T	18	2,200×2	'95. 6	러시아 쿠메르타우
25		AS365-N3	14	851×2	'06. 2	프랑스 유로콥터
26		AS365-N3	14	851×2	'07. 2	프랑스 유로콥터

2. 헬기 운영인력 및 구조대원

시도별	장비보유			운용요원						
	헬기	급유차	토우카	계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기타
					소방직	계약직	소방직	계약직		
계	26	16	20	252	61	24	40	16	89	22
중앙	3	1	1	29	-	12	-	6	10	1
서울	3	1	1	25	-	6	-	6	9	4
부산	2	1	2	16	6	-	4	-	6	
대구	2	1	1	15	5	-	4	-	5	1
인천	1	1	1	14	4	-	3	-	6	1
광주	1	1	1	13	4	-	3	-	6	-
울산	1	1	1	10	3	-	2	-	4	1
경기	3	1	2	27	9	-	6	-	6	6
강원	2	2	2	28	9	-	5	-	12	2
충북	1	1	1	11	4	-	3	-	3	1
충남	1	1	1	11	-	4	-	2	4	1
전북	1	1	1	8	-	2	-	2	3	1
전남	2	1	2	14	5	-	4	-	4	1
경북	2	1	2	17	8	-	4	-	5	-
경남	1	1	1	14	4	-	2	-	6	2

5-2

2010년도 구조·구급활동 현황

가. 2010년도 구조활동

1. 총괄

구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미처리건수	1일 평균	
					구조건수	구조인원
2010년	389,713	281,743	92,391	107,970	772	253
2009년	361,483	257,766	90,349	103,717	706	248
증감(%)	7.8	9.3	2.3	4.1	9.3	2.0

2. 사고종별 구조인원

구분	계	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10	구조인원	92,391	3,509	23,618	5,824	39	1,383	7,505	290	50,223
	비율(%)	100	3.8	25.6	6.3	0.04	1.5	8.1	0.3	54.36
'09	구조인원	90,349	3,274	23,001	5,061	59	1,625	7,605	133	49,591
	비율(%)	100	3.6	25.5	6.2	0.06	1.8	8.4	0.14	54.3
증감(%)	2.3	7.2	2.7	15.1	△33.9	△14.9	△1.3	118	1.3	

3. 사고장소별 구조인원

구분	계	주택APT	작업장공사장	차량도로상	사무실	하천바다	산	기타	
'10	구조인원	92,391	26,743	1,301	24,309	7,116	6,906	8,743	17,273
	비율(%)	100	28.9	1.4	26.3	7.7	7.5	9.5	18.7
'09	구조인원	90,349	26,501	1,359	23,960	6,986	6,672	8,937	15,934
	비율(%)	100	29.3	1.5	26.5	7.7	7.4	9.9	17.7
증감(%)	2.3	0.9	△4.3	1.5	1.9	3.5	△2.2	8.4	

4. 사고종별 구조건수

구분		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10	구조 건수	281,743	30,104	26,546	6,690	117	1,928	7,718	2,347	206,293
	비율 (%)	100	11.4	9.4	2.4	0.04	0.7	2.7	0.8	72.56
'09	구조 건수	257,766	28,065	22,088	6,281	124	1,609	7,105	1,313	191,181
	비율 (%)	100	10.9	8.6	2.4	0.04	0.6	2.8	0.5	74.16
증감(%)		9.3	7.3	20.2	6.5	△5.6	19.8	8.6	78.8	7.9

5. 연도별 구조활동 현황(2000~2010)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조건수	87,914	85,402	88,054	97,881	105,382	113,433	146,019	182,619	257,766	281,743
증가율(%)	1.1	-2.9	3.1	11.2	7.7	7.6	28.7	25	41.2	9.3
구조인원	72,841	75,275	72,680	61,338	64,633	72,169	77,538	84,559	90,349	92,391
증가율(%)	-7.3	3.3	-3.4	-15.6	5.4	11.7	7.4	9.1	6.8	2.3

6. 시·도별 구조활동 현황

시도	출 동 수	구 조 (처 리) 건 수	구 조 인 원	미 처 리 건 수					
				계	자 체 처 리	오 인	허 위 신고	타 기 관 리 처	기타 (거부 거 절 상 승 약 의)
계	389,713	281,743	92,391	107,970	83,044	17,757	494	6,480	195
중앙	259	219	125	40	23	5	-	12	0
서울	82,316	66,258	16,407	16,058	8,228	5,587	176	2,067	0
부산	22,205	16,753	8,420	5,452	4,143	286	-	1,009	14
대구	13,278	9,390	2,493	3,888	3,356	378	25	116	13
인천	15,987	8,518	4,849	7,469	5,025	2,207	15	213	9
광주	8,274	7,534	3,344	740	644	79	-	17	0
대전	8,500	6,014	2,019	2,486	2,331	122	14	16	3
울산	9,377	6,583	1,875	2,794	2,398	281	25	83	7
경기	83,385	51,834	15,921	31,551	26,972	3,532	1	1,017	29
강원	18,361	13,521	5,854	4,840	3,316	1,066	42	385	31
충북	15,092	13,794	3,491	1,298	1,029	156	6	102	5
충남	21,047	15,087	5,177	5,960	4,747	925	25	251	12
전북	18,791	14,478	3,875	4,313	3,702	479	28	95	9
전남	19,066	13,426	4,410	5,640	4,916	486	24	204	10
경북	22,692	15,122	5,496	7,570	6,096	1,013	56	371	34
경남	25,714	19,970	7,307	5,744	4,503	705	51	466	19
제주	5,369	3,242	1,328	2,127	1,615	450	6	56	0

시·도 사고종별 구조인원

구분 시도	구분								
	합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합계	92,391	3,509	23,618	5,824	39	1,383	7,505	134,269	50,223
중앙	125	0	57	2	0	0	44	0	22
서울	16,407	1,549	1,658	430	5	160	1,115	71	11,419
부산	8,420	324	1,039	3,109	4	96	217	23	3,608
대구	2,493	47	351	24	2	38	183	21	1,827
인천	4,849	188	830	88	5	52	129	0	3,557
광주	3,344	68	561	15	3	44	73	4	2,576
대전	2,019	83	389	18	0	43	100	0	1,386
울산	1,875	72	561	123	1	42	132	16	928
경기	15,921	360	3,560	292	7	216	1,480	24	9,982
강원	5,854	119	1,728	311	1	68	1,436	85	2,106
충북	3,491	66	1,460	152	0	64	327	2	1,420
충남	5,177	122	1,998	422	3	107	190	20	2,315
전북	3,875	89	1,761	200	1	99	365	13	1,347
전남	4,410	67	2,238	137	3	101	366	5	1,493
경북	5,496	148	2,354	278	0	116	600	5	1,995
경남	7,307	171	2,635	171	4	117	680	1	3,528
제주	1,328	36	438	52	0	20	68	0	714

시·도 사고종별 구조건수

구분 시도	구분								
	합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합계	281,743	30,104	26,546	6,690	117	1,928	7,718	2,347	206,293
중앙	219	12	70	16	2	0	45	2	72
서울	66,258	7462	2717	1113	41	251	1189	827	52,658
부산	16,753	1,007	1,166	3,061	4	117	253	39	11,106
대구	9,390	863	405	52	7	54	195	38	7,776
인천	8,518	1,004	574	83	5	58	147	107	6,540
광주	7,534	1,246	599	22	2	65	82	39	5,479
대전	6,014	896	344	30	4	53	108	14	4,565
울산	6,583	724	866	145	5	83	147	13	4,600
경기	51,834	4,065	4,269	345	13	262	1,490	703	40,687
강원	13,521	1,089	1,540	262	5	78	1,210	85	9,252
충북	13,794	2,429	1,997	152	3	136	453	30	8,594
충남	15,087	2,168	1,651	415	3	127	208	272	10,243
전북	14,478	1,583	2,083	179	3	136	387	46	10,061
전남	13,426	1,303	2,029	170	4	131	372	65	9,352
경북	15,122	1,634	2,420	283	5	158	628	20	9,974
경남	19,970	2,241	3,337	282	10	193	735	37	13,135
제주	3,242	378	479	80	1	26	69	10	2,199

사고종별 월 구조건수

구분 시도	합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합계	281,743	30,104	26,546	6,690	117	1,928	7,718	2,347	206,293
1월	14,765	2,561	2,263	134	4	119	630	39	9,015
2월	13,503	2,471	2,136	149	3	119	485	11	8,129
3월	14,667	2,378	2,008	199	8	149	318	60	9,547
4월	15,124	2,561	1,850	201	7	154	462	25	9,864
5월	20,143	2,519	2,298	308	6	207	792	10	14,003
6월	19,812	2,483	2,033	338	11	179	602	15	14,151
7월	29,609	2,174	2,189	1,730	7	156	630	99	22,624
8월	52,185	2,212	2,142	2,619	14	145	664	255	44,134
9월	42,380	2,247	2,037	483	10	184	871	1,776	34,772
10월	23,975	2,534	2,280	253	12	208	1,228	19	17,441
11월	18,264	2,943	2,566	141	19	173	637	23	11,762
12월	17,316	3,021	2,744	135	16	135	399	15	10,851

사고종별 월 구조인원

구분 시도	합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합계	92,391	3,509	23,618	5,824	39	1,383	7,505	290	50,223
1월	6,786	257	2,081	93	1	89	648	13	3,604
2월	6,266	299	1,947	87	-	80	470	1	3,382
3월	6,539	516	1,889	98	3	118	307	2	3,606
4월	6,475	354	1,757	126	1	105	440	-	3,692
5월	8,003	211	2,277	193	4	155	701	2	4,460
6월	7,167	244	1,809	218	4	129	559	1	4,203
7월	9,418	214	1,854	1,752	1	105	593	26	4,873
8월	11,268	173	1,789	2,668	8	112	707	93	5,718
9월	8,277	239	1,730	290	1	123	905	148	4,841
10월	8,019	260	2,198	141	5	145	1,207	1	4,062
11월	7,019	392	2,052	94	5	125	600	1	3,750
12월	7,154	350	2,235	64	6	97	368	2	4,032

7. 소방항공대 활동

구분 시도	운항 회수 (회)	운항 시간 (H)	구조 구급 (명)	활 동 회 수(회)								
				구조 구급	화재 출동	산불 진화	홍보 활동	교육 훈련	업무 지원	정비 시험	기타	
계	'10	3,491	3,793	1,582	1,680	36	259	189	795	211	287	34
	'09	4,028	4,841	1,592	1,727	32	448	122	914	229	279	277
증 감 (%)	-13.3	-21.6	-0.6	-2.7	12.5	-42.2	54.9	-13.0	-7.9	2.9	-87.7	
중 앙	243	382	52	93	0	2	12	79	31	17	9	
서 울	354	329	233	244	2	3	0	83	9	13	0	
부 산	245	240	34	36	14	39	27	105	12	12	0	
대 구	254	172	57	48	1	110	21	45	16	13	0	
인 천	140	135	46	45	0	7	38	35	3	12	0	
광 주	128	142	11	14	0	3	5	68	18	20	0	
울 산	36	42	5	7	1	9	3	4	3	7	2	
경 기	514	516	250	258	12	19	33	98	31	51	12	
강 원	563	574	289	357	1	29	13	103	28	29	3	
충 북	150	168	83	82	0	1	17	30	1	19	0	
충 남	37	124	52	9	2	0	1	16	1	8	0	
전 북	130	119	95	90	0	0	5	14	11	10	0	
전 남	309	368	165	177	0	1	1	60	32	38	0	
경 북	167	306	48	50	2	34	13	35	6	27	0	
경 남	221	176	162	170	1	2	0	20	9	11	8	

나. 2010년도 구급활동

1. 총괄

구분	구급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2010년	1,254	2,045,097	1,428,275	1,481,379	4,059	1,181
2009년	1,283	1,998,314	1,387,396	1,439,688	3,944	1,122
증감%	△2.3%	2.3%	2.9%	2.9%	2.9%	△5.3%

2. 시간대별 이송현황

구분		계	0~3	3~6	6~9	9~12	12~15	15~18	18~21	21~00
'10	이송인원	1,481,379	147,966	102,424	170,250	242,094	217,077	203,466	202,665	195,437
	비율(%)	100	10.0	6.9	11.5	16.3	14.7	13.7	13.7	13.2

3. 직업별 이송현황

구분		계	주부	학생	상업	회사	농업	무직	기타
'10	이송인원	1,481,379	132,843	88,013	11,583	57,834	35,134	341,467	814,505
	비율(%)	100.1	9.0	5.9	0.8	3.9	2.4	23.1	55.0

4. 연령별 이송현황

구분		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65세이상
'10	이송인원	1,481,379	64,016	83,068	129,539	163,819	242,272	241,636	91,037	465,992
	비율(%)	100	4.3	5.6	8.7	11.1	16.4	16.3	6.1	31.5

5. 장소별 이송현황

구 분	계	가정	숙박 시설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산	공공 장소	주택가	기타	
'10	이송 인원	1,481,379	789,745	19,848	228,781	16,915	9,801	74,211	70,898	271,180
	비율 (%)	100	53.3	1.3	15.4	1.1	0.7	5.0	4.8	18.4

6. 장애요인별 이송현황

구 분	계	비응급 이송	장거리 이송	만취자	과체중	언어 폭력	장애 없음	기타	
'10	이송 인원	1,481,379	53,436	17,692	6,594	1,038	4,947	1,268,634	129,038
	비율 (%)	100	3.6	1.2	0.4	0.1	0.3	85.7	8.7

7. 응급처치 현황

구 분	계	기도 확보	보온	산소 공급	경추 및 척추고정	CPR	ECG	지혈	드레싱	기타	
'10	처치 건수	2,440,854	89,487	438,758	189,642	127,068	18,600	27,958	157,420	131,936	1,259,985
	비율 (%)	100	3.7	18.0	7.8	5.2	0.8	1.1	6.4	5.4	51.6

8. 시·도별 구급활동 실적

구분 시도	구급대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구급대당 이송건수	구급대당 이송환자	1일 이송건수	1일 이송인원
계	1,242	2,045,097	1,428,275	1,481,379	1,139	1,181	3,913	4,059
중앙	1	128	69	91	69	91	0	0
서울	114	414,400	272,204	276,822	2,388	2,428	746	758
부산	57	138,565	95,840	98,037	1,681	1,720	263	269
대구	49	87,126	58,407	59,707	1,192	1,219	160	164
인천	50	110,961	72,705	74,799	1,454	1,496	199	205
광주	32	56,525	43,394	48,018	1,356	1,501	119	132
대전	31	58,516	42,400	43,494	1,368	1,403	116	119
울산	27	33,363	24,086	25,115	892	930	66	69
경기	221	444,123	311,432	322,067	1,409	1,457	853	882
강원	96	87,257	62,338	66,243	649	690	171	181
충북	79	70,985	50,638	53,044	641	671	139	145
충남	72	95,753	69,426	73,435	964	1,020	190	201
전북	67	89,265	63,275	66,030	944	986	173	181
전남	85	89,945	63,590	67,377	748	793	174	185
경북	115	110,779	79,883	84,086	695	731	219	230
경남	130	121,439	89,957	93,017	692	716	246	255
제주	28	35,967	28,631	29,997	1,023	1,071	78	82

※ 2010년 22.1초당 1건(1분당 2.7건), 21.3초당 1명(1분당 2.8명) 이송
1시간당 233건 출동, 163건(169명) 이송

시도 · 시간대별 이송인원

구분 시도	합계	0~3	3~6	6~9	9~12	12~15	15~18	18~21	21~00
합 계	1,481,379	147,966	102,424	170,250	242,094	217,077	203,466	202,665	195,437
종 앙	91	12	14	21	14	10	5	10	5
서 울	276,822	30,836	21,651	30,576	42,677	38,233	36,167	37,570	39,112
부 산	98,037	8,943	6,626	11,635	17,743	15,317	13,084	12,590	12,099
대 구	59,707	6,317	4,250	6,614	9,627	8,577	7,943	8,428	7,951
인 천	74,799	8,372	5,622	8,184	11,708	10,245	9,690	10,334	10,644
광 주	48,018	4,084	2,852	4,632	9,667	8,342	7,340	5,698	5,403
대 전	43,494	4,549	3,063	4,832	7,590	6,061	5,512	5,921	5,966
울 산	25,115	2,765	1,721	2,720	3,868	3,410	3,410	3,569	3,652
경 기	322,067	34,880	23,796	36,251	49,609	45,375	42,810	44,129	45,217
강 원	66,243	5,910	4,021	8,382	11,674	10,520	9,743	8,268	7,725
충 북	53,044	4,877	3,257	6,278	8,928	8,204	7,604	7,302	6,594
충 남	73,435	6,843	4,668	8,795	12,003	10,823	10,341	10,574	9,388
전 북	66,030	5,493	3,894	8,429	11,258	10,241	9,585	9,334	7,796
전 남	67,377	5,403	4,002	8,572	11,092	10,267	10,132	9,695	8,214
경 북	84,086	7,296	5,324	10,271	13,731	12,605	12,430	12,157	10,272
경 남	93,017	8,478	5,779	10,111	15,618	14,382	13,478	13,367	11,804
제 주	29,997	2,908	1,884	3,947	5,287	4,465	4,192	3,719	3,595

9. 연도별 구급활동 현황

구분 연도	구급 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 송 환자수	1일 평균		구급대당 건/환자
					건	환자	
2010년	1,254	2,045,097	1,428,275	1,481,379	3,913	4,059	1,139/1,181
2009년	1,283	1,998,314	1,387,396	1,439,688	3,801	3,944	1,081/1,122
2008년	1,310	1,809,176	1,269,189	1,316,942	3,447	3,608	968/1005
2007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257	3,385	914/950
2006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044	3,160	876/910
2005년	1,209	1,493,416	1,058,996	1,100,737	2,901	3,016	876/910
2004년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950	876/912
2003년	1,154	1,373,141	973,475	1,013,874	2,667	2,778	844/879
2002년	1,107	1,290,332	944,775	982,697	2,588	2,692	853/888
2001년	1,095	1,280,144	944,435	985,618	2,587	2,700	862/900
2000년	1,083	1,211,810	899,004	945,834	2,463	2,591	830/873
1999년	1,071	1,186,627	896,298	951,867	2,456	2,608	837/889
1998년	1,031	911,318	672,778	709,184	1,843	1,943	653/688
1997년	967	722,054	539,261	567,750	1,477	1,555	558/587
1996년	857	592,267	440,752	463,884	1,208	1,271	514/541
1995년	619	425,017	322,051	335,086	882	918	520/541
1994년	505	210,692	163,164	167,252	447	458	323/331
1993년	406	153,606	122,717	125,202	336	343	302/308
1992년	353	116,560	93,287	95,491	256	262	264/271
1991년	281	106,508	85,467	87,657	234	240	304/312
1990년	207	85,657	68,096	70,247	187	192	329/339
1989년	151	69,962	55,408	57,444	152	157	367/380
1988년	128	54,081	47,744	49,493	131	136	373/387
1987년	117	45,068	36,863	39,027	101	107	315/334
1986년	94	37,557	29,813	31,632	80	87	317/336
1985년	78	31,298	24,291	25,880	67	71	311/332

10. 2급 응급구조사 현황

구분 시도	연도별 2급 응급구조사 현황												
	총 계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9
계	4,734	347	388	512	416	330	301	386	336	425	510	465	318
중 앙	17	0	0	0	2	4	0	3	1	1	4	1	1
서 울	1,111	89	89	94	94	73	82	73	37	65	127	134	154
부 산	198	10	12	15	17	14	17	19	23	27	15	15	14
대 구	147	9	14	15	13	7	11	10	5	14	9	25	15
인 천	109	3	1	6	10	16	15	6	8	12	6	10	16
광 주	121	8	10	12	9	4	5	14	16	20	14	7	2
대 전	69	3	8	5	10	1	5	3	3	1	7	10	13
울 산	96	7	8	20	7	5	4	7	2	2	8	20	6
경 기	1,289	144	152	228	122	102	57	85	129	88	83	81	18
강 원	378	0	9	13	33	44	28	51	1	47	54	80	18
충 북	99	0	1	14	13	9	6	8	8	9	7	12	12
충 남	181	10	5	7	2	5	13	34	28	32	34	6	5
전 북	186	13	19	12	10	4	7	17	21	23	31	16	13
전 남	115	6	7	13	7	9	11	8	12	14	21	6	1
경 북	256	19	25	35	42	18	11	20	11	17	21	23	14
경 남	291	21	23	18	16	12	23	23	24	46	63	9	13
제 주	71	5	5	5	9	3	6	5	7	7	6	10	3

11.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양 성 기 관	정원(명)	주 소	대 상
중앙소방학교	250	충남 천안시 유량동 36	소방관
서울소방학교	1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3	소방관
경기소방학교	300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646-2	소방관
경북소방학교	150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60	소방관
광주소방학교	80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232-2	소방관
영진전문대학	150	대구시 북구 복현2동 218	일반인
국군군의학고	80	대전시 유성구추목동 사서함 78-501	군 인

다. 2010년도 긴급구조훈련

1. 총 괄

실시횟수	훈련 참여 기관·단체	동원인원	동원장비	비 고
270	4,412	78,265	9,672	종합훈련

2. 참여기관·단체

구 분	계	소방	시도 (시군구)	경찰	군부대	보건소	병원	적십자사	공공 단체	민간 단체	기타
기관단체	4,412	693	294	262	411	221	498	215	789	605	424
동원인원	78,265	22,176	5,007	3,303	5,378	1,263	1,557	1,772	6,196	13,948	17,665
동원장비	9,672	4,517	916	549	810	422	512	262	751	571	362

3. 실시기관별

구 분		계	간급구조기관	
			소방본부	소방서
실시횟수		270	6	254
참여기관		4,412	247	3,720
동원 사항	인원	78,265	4,361	68,115
	장비	9,672	456	8,635

4. 시·도별 훈련현황

연번	시도	일 자	훈 련 대 상	훈 련 유 형
1	대구	6.15	엑스코 및 호텔인터볼고	테러 대응
2	인천	10.7	인천국제공항	테러 및 항공기 추락
3	대전	10.28	한국철도기관 공동사옥	테러 및 건물붕괴
4	울산	10.20	한국석유공사	테러 및 위험물 화재
5	전남	10.17	무안국제공항	테러 및 대형화재
6	제주	5.13	제주 롯데호텔	테러 및 대형화재

5-3

119 국제구조대 <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가. 기본현황

1. 목 적

해외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3개팀 31명으로 발대

2. 주요임무

- ✦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탐색·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 ✦ 기타 재난현장 구호활동

3. 조 직 : 6개반 41명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4. 장 비 : 인명탐색 및 첨단구조장비 등 42종 142점

나. 출동체계 : 재난발생 ⇒ 비상대기 ⇒ 출동명령 ⇒ 구조출동

다. 활동실적

1. 제1차 파견 - '97. 9. 4 ~ 9. 8 / 캄보디아 프놈펜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5명, 유압스프레다 등 17종 45점
- ✦ 활동실적 : 유품수거 27점, 사체 입관 및 유해 운구 작업(20구)

2. 제2차 파견 - '99. 8. 20 ~ 30 / 터키 이즈밀

- ✦ 인원장비 : 구조구급과장 등 17명, 매몰자탐지기 등 36종 93점
- ✦ 활동실적 : 사체 154구 발굴

3. 제3차 파견 - '99. 9. 22 ~ 27 / 대만 난터우현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16명, 지중음향탐지기 등 40종 97점, 구조견 2두
- ✦ 활동실적 : 인명구조견,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작업 생존자 1명(장칭홍-남, 6세) 구조, 사체 21구 발굴

4. 제4차 파견 - '03. 5. 23 ~ 31 / 일제리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의 21명, 매몰자탐지기 등 41종 185점
 - ✚ 활동실적 : 사체발굴 및 수습(22구), 응급의료서비스제공

5. 제5차 파견 - '03. 12. 27 ~ '04. 1. 3 / 이란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24명(세계 54개국 1,618명 구조대원 현지지원), 지중음향탐지기 등 42종 68점(인명구조견 2두 포함)
 - ✚ 활동실적 : 사상자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활동
→ 사체발굴(수습) 57구

6. 제6차 파견 - '04. 12. 29 ~ '05. 1. 7 / 태국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15명, 매몰자탐지기 등 42종 202점
 - ✚ 활동실적 : 사체발굴·수습(14구) 및 유류품(145점) 수거

7. 제7차 파견 - '08. 5. 16 ~ 5. 23 / 중국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41명, 매몰자탐지기등 112종 337점
 - ✚ 활동실적 : 사체발굴·수습(27구)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8. 제8차 파견 - '08. 6. 5 ~ 6. 15 / 미얀마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5명, 방역장비등 59종122점
 - ✚ 활동실적 : 방역활동(1697개소) 및 전염병 확산 저지 등 피해 수습 지원

9. 제9차 파견 - '09. 10. 1 ~ 10. 7 / 인도네시아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41명, 방역장비등 117종427점
 - ✚ 활동실적 : 사체발굴·수습(3구)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0. 제10차 파견 - '10. 1. 15 ~ 1. 25 / 아이티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25명, 방역장비등 95종 287점
- ✦ 활동실적 : 사체발굴·수습(33구)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방역활동 등 지원

11. 제11차 파견 - '11. 3. 12 ~ 3. 23 / 일본

-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단원 61명, 시·도 구조대원 44명
구조·구급장비 등 128종 1,926점
- ✦ 활동실적 : 사체발굴·수습(18구) 및 재외국민 및 일본국민 생수 및 물자지원 등

5-4

소방왕 선발대회

가. 대회연혁

1. 대회연혁

- ❖ 1983년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개최(내무부장관 방침)
- ❖ 1989년 대회명칭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로 변경
- ❖ 1996년 경연종목에 응급처치분야(3종목) 신설
- ❖ 2000년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방침변경
- ❖ 2001년 경연종목을 소방여건에 맞도록 개선
- ❖ 2004년 친선경기 추가, 특별승진 확대(최강소방관경기 2위)
- ❖ 2005년 의용소방대경기 추가, 특별승진 확대
(응급처치2위, 최강소방관 3위)
- ❖ 2006년 대학생경연 추가(기도삼관법), 사랑의 119바자회 개최
- ❖ 2007년 출전횟수 1회제한 적용,
시상훈격 격상(종합1위 : 대통령상)
- ❖ 2008년 소방기술경연과 체력경기 운번 개최
- ❖ 2009년 소방왕선발 및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개최
- ❖ 2010년 소방왕선발대회 개최(세계소방관경기대회 기간중 대구에서 개최)

2. 제23회 소방왕선발대회

구분	종합성적	최강소방관	소방차운전	심폐소생술	수종인명구조
1위	경북본부	전북본부	경북본부	경북본부	경남본부
2위	경남본부	경기본부	경북본부	경기본부	경기본부
3위	경기본부	경북본부	경남본부	경남본부	경기본부

나. 응급구조학과 개설대학 현황

(2009. 12. 31 현재)

학 교 명	교육 기간	주 소 / 전 화	학과장 /교수
공주대학교	4	(314-712) 충남 공주시 옥룡동 326 (041)850-6219, 6119 (F)856-0740	김진회
삼척대학교	4	(245-711) 강원 삼척시 교동 산 253 (033)570-6440	문태영 김지희
가천의과학 대학교	4	(405-701)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27-1 (032)450-9240, 9245 (F)450-9241	손인아 강경희
을지대학교	3	(461-7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 (031)740-7217, 7227, (F)740-7236	유순규 최혜경
충주대학교	3	(367-70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24 (043)820-5211, 5214 (F)820-5212	이인수 신동민
서강정보대학	3	(500-742) 광주시 북구 운암동 789-1 (062)520-5040, 5174, (F)523-1603	박희진 (학회회장)
광주보건대학	3	(506-701) 광주 광산구 신창동 683-3 (062)958-7753, (F)953-4946	권혜란 이영현
대원과학대학	3	(390-702) 충북 제천시 신월동 599 (043)649-3548	이경희 함영림
대전보건대학	3	(300-711) 대전 동구 가양2동 77-3 (042)670-9412, (F)670-9410	조진만 (학회회장)
동남보건대학	3	(440-714) 경기 수원시 정자동 937 (031)2496-561 (F)2496-560	고봉연 이정은
광양보건대학	3	(545-703)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3-1 (061)760-1423	김광석 장근실
동아인제대학	3	(526-872)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산22-1 (061)470-1754	정은순
동 주 대 학	3	(604-751)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산 15-1 (051)200-3256	류병일
마 산 대 학	3	(630-729)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 (055)230-1335, 1337 (F)230-1335	김정현 길은미
포항선린대학	3	(795-94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동 146-1 (054)260-2177, 261-2381, (F)261-9455	박정미 김순심

제3장 소방정책 분야

학교 명	교육 기간	주 소 / 전 화	학과장 /교수
성 화 대 학	3	(527-812)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224 (061)430-5255	김 울
순천청암대학	3	(540-740) 전남 순천시 덕월동 224-9 (061)740-7249	김경완
전주기전여자대학	3	(560-7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77 (063)231-5733	유오근
제주한라대학	3	(690-708) 제주 제주시 노형동 1534 (064)741-7683, 7671, (F)747-3989	김태민 고재문
춘 해 대 학	3	(689-872)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산72-10 (052)270-0290	박대성
백석대학교	4	(330-70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번지 (041)550-2827	함순예
호원대학교	4	(573-718) 전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727번지 (063)450-7490	김진동
동강대학	3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로 160(두암동) (062)520-2526	최길순
포항1대학	3	(791-711) 포항시 북구 용해읍 죽천동 산55번지 (051)245-1158	명형옥
대전대학교	4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042)280-2940	백홍석
주성대학	3	(363-764) 충북 창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4번지 (043)210-8330	김진우
성덕대학	3	(770-811)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1135-5번지 (054)330-8722	안주영
나사렛대학교	4	(331-7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456번지 (041)570-1438	송병창
충청대학	3	(363-792) 충북 창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 (043)230-2580	구종현

6. 긴급구조통제단업무

6-1 긴급구조 대응계획

가.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제6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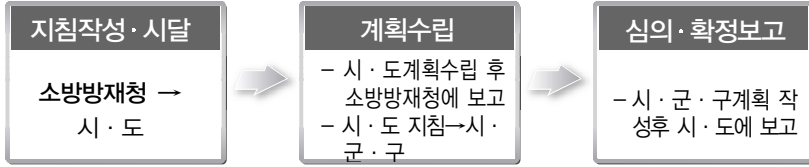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7장

나. 내용

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

- ◆ 재난발생시 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조직이 신속, 효과적인 대응과 긴급 복구활동 수행을 위해 계획가동 권한과 책임, 자원동원체계, 현장지휘체계, 표준작전절차(SOP)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 기술서로 국가·시·도, 시·군·구단위의 수준별 계획으로 구성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 ◆ 최상위 수준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의 집행을 총괄·조정차원에서 운영하고 ①기본계획, ②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③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 ◆ 기능별대응계획은 11개의 기능으로 나뉘어, 해당기능마다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민간협정자원이 통제단의 조정을 통하여 협력
 - ※ 내용 : ①지휘통제 ②비상경고 ③대중정보 ④상황분석 ⑤구조진압 ⑥응급의료 ⑦오염통제 ⑧현장통제 ⑨긴급복구 ⑩긴급구조 ⑪재난통신

다. 수립절차



라. 작성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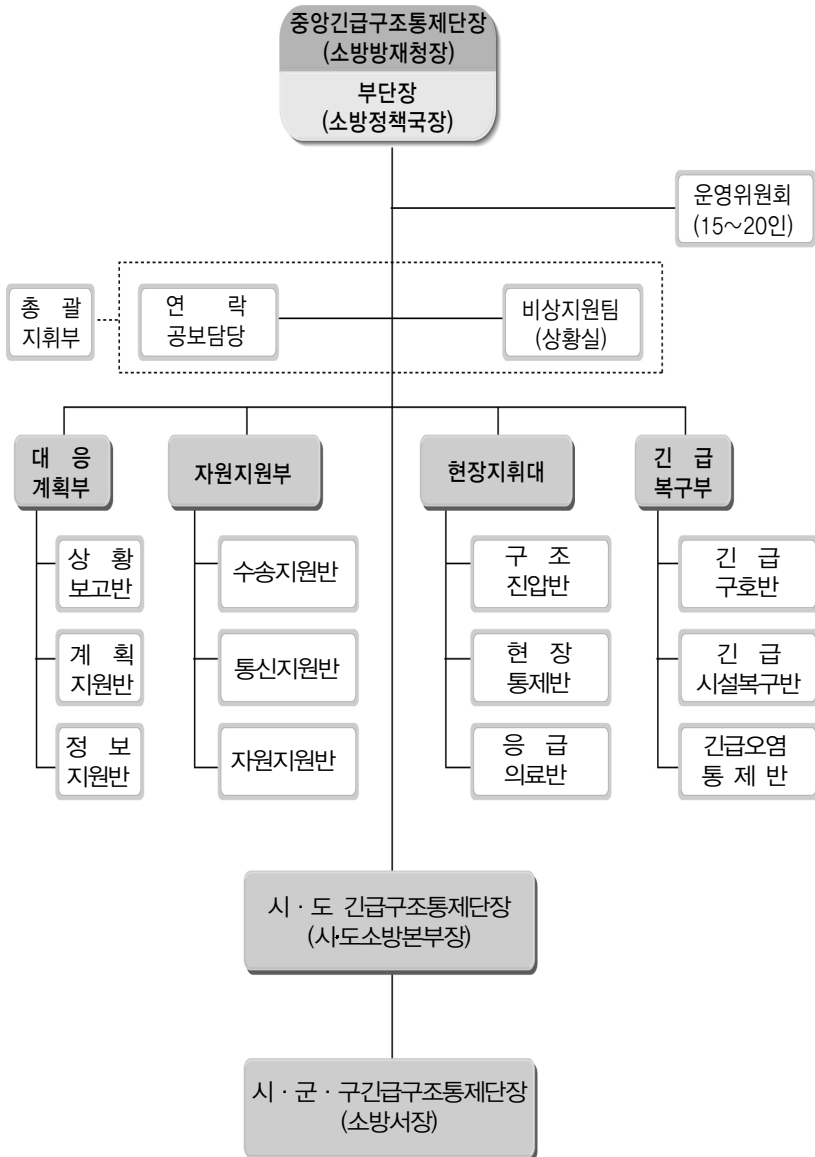
※ 기능별계획(시행령 제63조의 바목 내지 카목)을 책임지원기관과 공동 작성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장

6-2 현장지휘체계

- ✦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내지제52조
- ✦ 조 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 기 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 기 구



2. 기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중앙통제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지휘관	연락공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비상지원팀(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각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대계획부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계획지원반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 지원
	정보지원반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지원부	수송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자원지원반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현장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구복부	긴급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급시설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나. 중앙긴급구조 지원기관

1. 임무분담

기능별 기관별	지휘 통제	비상 경고	대중 정보	상황 분석	구조 진압	응급 의료	오염 통제	현장 통제	긴급 복구	긴급 구호	재난 통신	비고
소 방 방 재 청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국 방 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 식 경 제 부				지원			지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환 경 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국 토 해 양 부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경 찰 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지원	
해 양 경 찰 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 상 청			지원									
산 림 청					지원						지원	
대 한 적 십 자 사						지원	지원		지원	책임		

－ 책임 : 책임지정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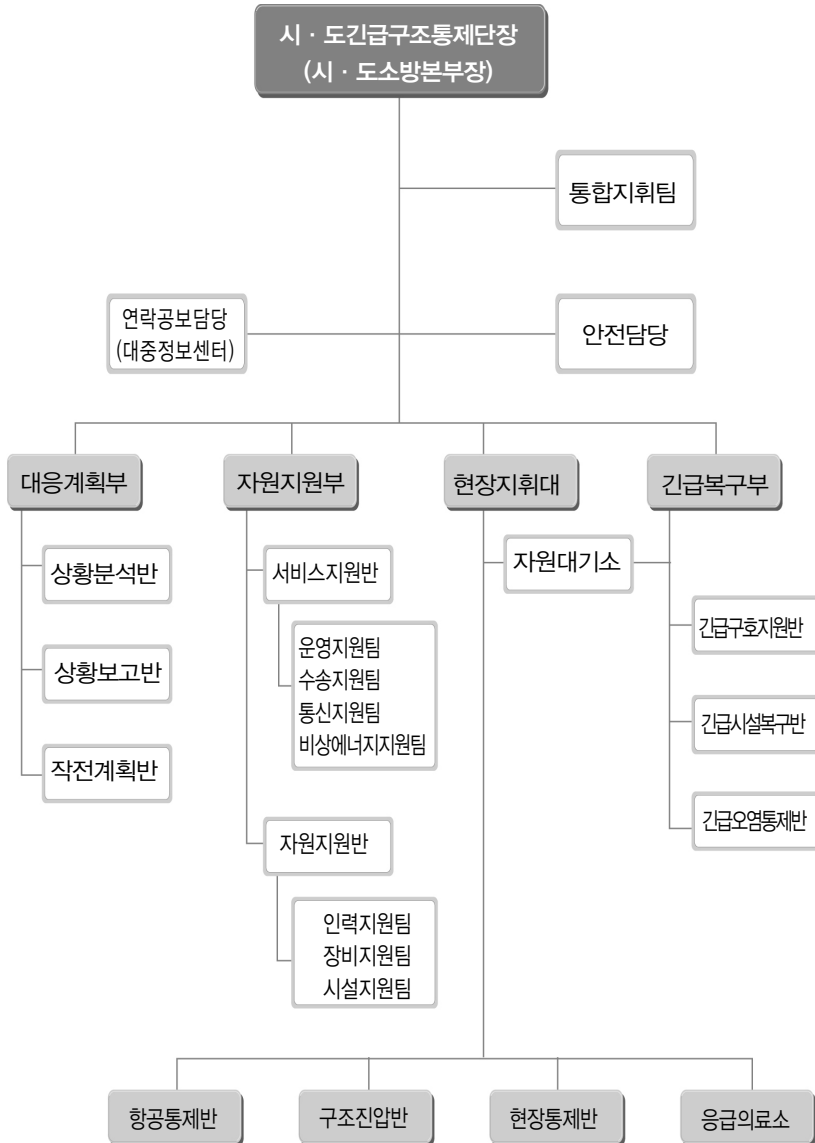
－ 지원 : 책임지정 기관에 대한 지원 기관

2. 지원기관 임무

- ❖ 연락관 파견의무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원의무
- ❖ 지휘통제 복종의무 및 문책요구시 조치 및 통보의무

3.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기 구



기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시·도 통제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 공 보 담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전 담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 비 지 원 스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팀: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팀: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기타 각 시·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 급 시 설 복 구 설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 급 오 염 통 제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4. 현장지휘체계

⚙️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 ❖ 지역통제단장에게 1·2차 지휘권 부여
(1차 :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 2차 :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
 -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지역통제단장에게 1·2차적 지휘 권한·임무 및 통제권 부여
- ❖ 위의 지휘 규정 불구하고 필요시 중앙통제단장이 지휘권 행사

⚙️ 중앙통제단장의 현장지휘 대상

- ❖ 대규모로 재난 발생시
-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부득이한 경우 부단장 지휘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 현장지휘 사항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배치와 운용
 - 추가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의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련업무 실무책임자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1.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 정 의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3. 긴급구조지원기관

❁ 시행령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 ❖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 시행규칙 제2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 지방국토관리청
- ❖ 지방항공청
-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 ❖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 ❖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
사업자

4장

방재관리 분야

1. 재난의 이해
2.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3. 자연재난 사전대비/예방대책
4. 자연재난 복구지원
5. 풍수해 보험
6.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7. 국제방재협력
8. 방재교육·연구현황

4step

방재관리 분야

1. 재난의 이해

1-1 자연재난의 정의

- ❁ 태풍 · 홍수 · 호우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 황사 ·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1-2 재난관리의 책무

가. 국가 등의 책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재난관리 책임기관(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사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나. 국민의 책무

-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재난의 신고

-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 및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1-3 자연재난의 발생유형

가. 태 풍

- ❁ 태풍은 일반적으로 중심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
- ❁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Typhoon),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
- ❁ 태풍의 크기는 풍속 15 % 이상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
- ❁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보다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분류
- ❁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려면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온도가 보통 27℃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공기의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남·북위 5° 이상에서 발생
- ❁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을 동반하며 태풍권역이나 진행방향의 우측(동측)은 강한 바람이 불고, 중심권역이 가까이 다가오면 폭풍우가 발생
- ❁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수목이 꺾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통신 두절과 정전이 발생하며,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 ❁ 그러나 태풍이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고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고 저위도 지방에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

나. 호 우

- ❁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비
- ❁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우량·강우강도·지속시간 등에 따른 명확한 정의는 없음. 각각의 강우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
- ❁ 호우는 발생하는 위치와 시각 및 강수량을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고, 태풍 등으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어 엄청난 손실발생
- ❁ 호우에 의한 피해는 지대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발생.
 - ❖ 호우가 높은 산에 발생하면 고지대는 도로의 붕괴로 고립 현상이 나타나고 저지대는 유수에 의한 침수 발생

다. 대 설

- ❁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같은 양이라 하여도 도심 지역에 내린 경우와 기타 지역에 내린 경우 대처 방법이 다름
- ❁ 도심지역은 산간지역에 비하여 적은 양이 적설이 있어도 교통 두절 상황이 발생. 산간지역의 과다한 적설은 도로두절을 초래하여 마을간 고립상황을 초래

2.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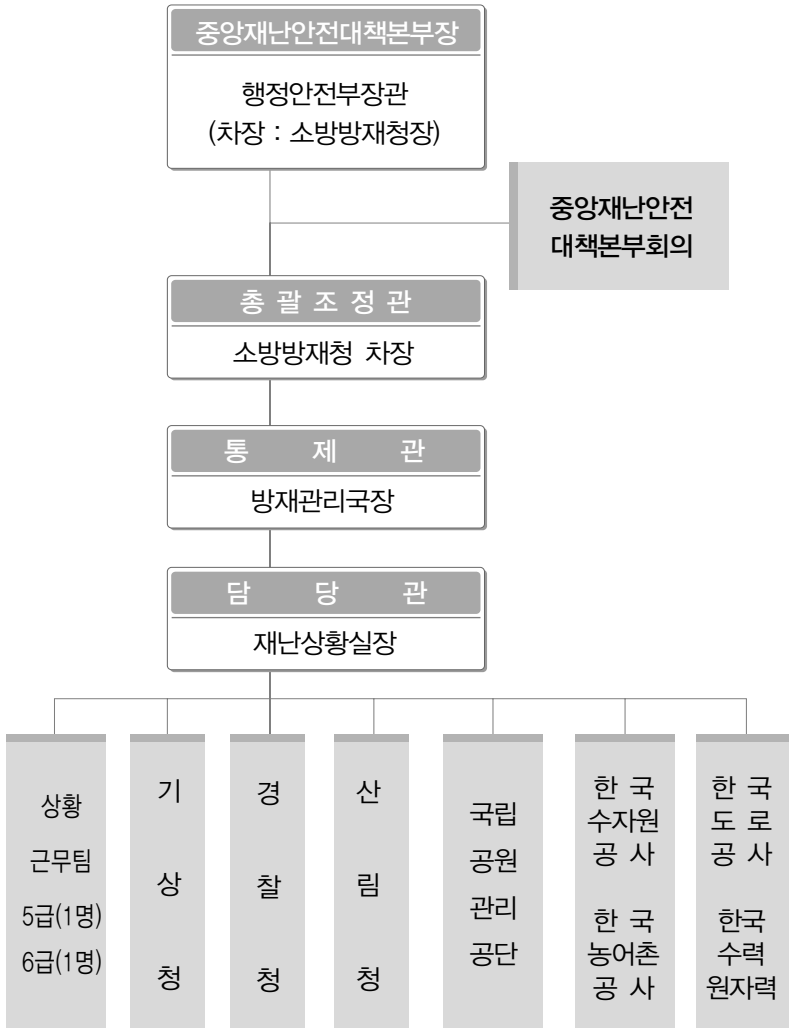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 재난대책에 관한 부처 및 유관기관 총괄 조정
- ❁ 재난예방,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
-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작성
- ❁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제반조치 요청 등

2-2 구성원별 임무

- ❁ **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
- ❁ **차장(소방방재청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
- ❁ **총괄조정관(소방방재청차장)** : 비상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을 보좌함
- ❁ **통제관(방재관리국장)** : 준비단계에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단계에 총괄조정관을 보좌함
- ❁ **담당관(방재대책과장)** :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함
- ❁ **실무반**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가. 상시대비단계



나.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



3. 자연재난 사전대비/예방대책

3-1 자연재난 사전대비 개요

가. 근거법령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나. 사전대비 기간

- ❁ 여름철 : 3.16~5.14(재해대책기간 5.15~10.15)
- ❁ 겨울철 : 10.16~11.30(재해대책기간 12.1~익년 3.15)

다. 주요내용

- ❁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 재해취약시설 및 지역 점검·관리
- ❁ 재난대비 물자·자재의 비축·관리
- ❁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라. 관련기관

- ❁ 중앙관계부처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상·산림·해경청 등
- ❁ 지방자치단체 : 전체 시·도, 시·군·구
- ❁ 관계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립 공원관리공단 등

3-2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가. 목 적

- ❁ 풍수해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 특별관리를 통해 피해최소화 및 안전도 개선

나. 선정기준

- ❁ 풍수해 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사업장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것
 - ❖ 침수·붕괴·해일 등 위험도가 매우 높으면서, 인구 및 건축물 밀집지역, 국가기반시설 소재 지역
 - ❖ 상습적 재해위험지역으로 개선되지 않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대규모 공사장으로 풍수해시 피해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

다. 관리대책

- ❁ 각 위험지역별로 관리 책임자 지정
 - ❖ 사전대비기간 또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에 현장점검 등 지속관리
- ❁ 관리카드는 각 위험지역별로 작성하여 관리

라. 특별관리지구 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13개 지구)

시·도	지구명	위 치	위험 유형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억원)
서울	서초지구	서초구	침수	2006~ 2012	231
부산	감전지구	사상구	침수	2010~ 2012	360
대구	노곡조야지구	북구	침수	2009~ 2013	335
울산	삼산·여천 지 구	남구	침수	2004~ 2011	262
경기	두일지구	연천시	침수	2004~ 2011	201
강원	시가지지구	삼척시	침수	2006~ 2011	270
충북	화성지구	증평군	유실	2011~ 2014	105
충남	방축지구	논산시	침수	2007~ 2014	418
전북	목천·포천 지 구	익산시	침수	2008~ 2011	168
전남	연등지구	여수시	침수	2006~ 2011	407
경북	죽도2지구	포항시	침수	2004~ 2012	362
경남	남망산지구	통영시	붕괴	2007~ 2009	144
제주	온평지구	서귀포	침수	2008~ 2010	156

주요 수해복구사업(14개소)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피해 발생	시행청
곤지암천 수해복구	경기도 실춘읍	호안 3.21km	7,500	'10. 9.21	광주시
가곡소하천 수해복구	원주시 지정면	호안 2.0km	6,506	'10. 9.21	원주시
황룡천 수해복구	보령시 청라면	호안 2.35km	9,114	'10. 7.23	보령시
은산천 수해복구	부여군 은산면	호안 3.2km	9,304	'10. 7.29	부여군
장벌천 수해복구	부여군 석포면	호안 3.4km	8,929	'10. 7.29	부여군
낙상천 수해복구	예산군 덕산면	호안 1.79km	5,999	'10. 9. 2	예산군
명도방파제 수해복구	군산시 옥도면	방파제 147m	8,042	'10. 8.18	군산시
대상천 수해복구	남원시 산동면	호안 5.07km	11,400	'10. 8.18	남원시
만경강 수해복구	완주군 동상면	호안 2.96km	11,192	'10. 8.18	완주군
정자천 수해복구	진안군 부귀면	호안 4.43km	9,493	'10. 8.18	진안군
임실천 수해복구	임실군 임실읍	호안 1.61km	8,675	'10. 8.18	임실군
두가현수교 수해복구	곡성군 두가면	교량 1개소(200m)	4,641	'10. 8.18	곡성군
묘산천 수해복구	합천군 묘산면	호안 3.5km	9,650	'10. 7.16	경남도
묵촌천 수해복구	합천군 야로면	호안 2.98km	7,030	'10. 7.16	합천군

댐 · 저수지(39개소)

구 분	점검 대상 댐
합 계	39개댐
다목적댐(5)	강원(1) : 소양강댐 충북(1) : 대청댐 전북(1) : 섬진강댐 경북(2) : 임하댐, 안동댐
용수전용댐(1)	울산(1) : 대암댐
농업용댐(20)	대구(1) : 달창댐 경기(3) : 기흥댐, 이동댐, 금광댐 강원(1) : 오봉댐 충북(2) : 원남댐, 맹동댐 충남(6) : 반산댐, 동부댐, 서부댐 청천댐, 고풍댐, 궁평댐 전북(2) : 경천댐, 구이댐 전남(2) : 담양댐, 장수댐 경북(2) : 상판댐, 경천댐 경남(1) : 하동댐
상수원댐(8)	부산(1) : 회동댐 대구(2) : 가창댐, 공산댐 광주(1) : 동북댐 울산(1) : 회야댐 전남(2) : 대동댐, 연암댐 경북(1) : 덕동댐
발전용(5)	경기(2) : 팔당댐, 청평댐 강원(2) : 춘천댐, 의암댐 전남(1) : 보성강댐

대규모 사업장(9개 지구)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시행청
		면적(m ²)	사업비(억원)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인천 서구 경서동 등	17,771천	5조 3,798	'03.8.11 ~ '12.12.31	토지공사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대전 유성구 대정동 등	6,112천	3조 571	'03.12.16 ~ '11.06.30	토지공사
김포 양촌 택지개발사업	경기 김포시 양촌면 등	10,849천	6조 0,416	'06.12.13 ~ '12.12.30	토지공사
평택 청북 택지개발사업	경기 평택시 청북면 등	2,015천	5,730	'02.07.25 ~ '09.12.31	토지공사
원주 무실2 택지개발사업	강원 원주시 무실동 등	806천	2,395	'03.04.25 ~ '10.12.31	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충남 연기군, 공주시 등	72,908천	13조 9,988	'05.05.24 ~ '30.12.31	토지공사
익산 배산 택지개발사업	전북 익산시 모현동 등	766천	1,721	'05.06.03 ~ '09.12.31	토지공사
경북 김천 혁신도시	경북 김천시 남면 등	3,829천	9,185	'07.03.19 ~ '12.12.31	토지공사
제주삼화 택지개발사업	제주 제주시 삼양동 등	722천	1,770	'04.12.29 ~ '09.09.30	토지공사

3-3

홍수대책비상기획단 구성·운영

가. 목 적

-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댐·저수지 관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 설치·운영

나. 구 성

- ☼ 중앙 및 유역 홍수대책비상기획단 구성
 - ☞ 중앙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
 - ☞ 13개 시·도 5개 권역 23개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

다. 주요내용

- ☼ 종합적인 홍수정보의 정확한 파악 및 대책 추진
 - ☞ 주민대피, 펌프장 가동, 침수피해방지대책 등
 - ※ 홍수조절 등 홍수대책은 국토해양부 홍수통제소에서 담당

라. 운영실적

〈2008년〉

- ☼ 7.19 호우 및 제7호 태풍 「갈매기」 내습시(7.19~7.21)
 - ☞ 중앙 및 5개 시·도 9개 유역비상기획단 320명 운영
- ☼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시(7.23~7.26)
 - ☞ 중앙 및 5개 시·도 7개 유역비상기획단 344명 운영

〈2009년〉

- ☼ 23개 유역비상기획단 61회 가동 2,134명 투입·운영

〈2010년〉

- ☼ 23개 유역비상기획단 66회 가동 1,430명 투입·운영

마. 유역 홍수대책비상기획단 설치 현황

연 번	시·도별	권역	기획단 설치 유역현황	
			계	유역명
합 계	13개 시·도	5개권역	23	23
1	서울시	한 강	1	한강유역
2	부산시	낙동강	1	수영강유역
3	대구시	낙동강	1	금호강유역
4	광주시	영산강	1	영산강상류
5	울산시	낙동강	1	태화강유역
6	경기도	소 계	3	3
		한 강	1	남한강유역
		"	1	임진강유역
		"	1	안성천유역
7	강원도	한 강	1	북한강유역
8	충북도	소 계	2	2
		한 강	1	충주댐상류
		금 강	1	대청댐상류
9	충남도	소 계	2	2
		금 강	1	금강유역
		"	1	삽교천유역
10	전북도	소 계	3	3
		섬진강	1	섬진강상류
		영산강	1	만경강유역
		"	1	동진강유역
11	전남도	소 계	3	3
		섬진강	1	섬진강하류
		영산강	1	영산강하류
		"	1	탐진강유역
12	경북도	소 계	2	2
		낙동강	1	안동댐상류
		"	1	형산강유역
13	경남도	소 계	2	2
		낙동강	1	황강유역
		"	1	낙동강하류

3-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가. 배 경

- ❁ 자연재난의 관리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 '05년 도입(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10.12.31 현재)

구분	방재단 구성					구성율 (%)
	계	완료	구성중	미추진	인원수(명)	
계	229	219	8	2	64,038	95.6
서울	25	15	8	2	5,479	60
부산	16	16	0	0	4,495	100
대구	8	8	0	0	2,313	100
인천	10	10	0	0	2,691	100
광주	5	5	0	0	1,542	100
대전	5	5	0	0	766	100
울산	5	5	0	0	1,461	100
경기	31	31	0	0	10,483	100
강원	18	18	0	0	5,246	100
충북	12	12	0	0	4,987	100
충남	16	16	0	0	3,608	100
전북	14	14	0	0	3,630	100
전남	22	22	0	0	4,871	100
경북	23	23	0	0	5,025	100
경남	18	18	0	0	6,385	100
제주	1	1	0	0	1,056	100

3-5

이재민 구호물자 비축 관리

시·도	합계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계	53,350	87,854	8,006	30,213	28,817	34,890	16,527	22,751
서울	2,268	21,800	342	12,746	1,227	7,351	699	1,703
부산	2,335	3,296	348	1,061	1,261	1,398	726	837
대구	590	786	90	200	319	329	181	257
인천	1,435	2,077	215	486	775	871	445	720
광주	620	521	93	95	335	298	192	128
대전	360	410	55	55	195	195	110	160
울산	894	1,244	134	347	483	528	277	369
경기	12,826	11,470	1,926	2,991	6,928	2,702	3,972	5,777
강원	5,582	8,430	834	1,614	3,018	4,330	1,730	2,486
충북	4,752	4,734	713	713	2,567	2,559	1,472	1,462
충남	2,648	4,516	397	1,148	1,429	2,008	882	1,360
전북	1,061	2,378	161	459	574	1,053	326	866
전남	3,176	6,075	476	2,798	1,715	1,956	985	1,321
경북	6,488	6,773	975	1,353	3,502	3,445	2,011	1,975
경남	8,089	12,382	1,213	3,926	4,367	5,555	2,509	2,901
제주	226	962	34	221	122	312	70	429

3-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구분	계			학 교			마을회관		
	개소	면적 (평)	수용능력 (명)	개소	면적 (평)	수용능력 (명)	개소	면적 (평)	수용능력 (명)
계	12,162	19,478,306	3,623,026	5,225	15,379,448	2,898,051	3,629	554,503	151,448
서울	762	2,865,977	785,452	488	2,383,270	636,726	1	6,640	2,012
부산	349	701,254	135,228	220	658,765	124,242	67	14,644	3,123
대구	81	207,875	63,332	52	192,916	58,892	24	4,944	1,430
인천	428	572,083	129,572	221	534,036	114,768	32	5,787	1,727
광주	156	362,146	44,991	140	354,463	42,886	2	1,060	379
대전	126	165,032	24,955	64	132,894	20,452	11	2,004	531
울산	239	457,254	113,534	153	414,877	103,335	48	6,837	1,788
경기	2,402	2,815,569	590,346	1,056	2,440,030	496,369	721	99,049	29,247
강원	959	1,729,451	210,795	417	1,303,160	176,726	236	47,290	8,673
충북	378	431,538	96,249	214	377,610	80,605	85	15,798	4,511
충남	1,856	1,424,568	300,006	452	1,126,793	225,152	831	111,818	33,960
전북	448	1,123,768	156,726	242	368,971	83,777	74	10,244	3,340
전남	983	2,052,453	312,358	440	1,013,401	192,281	302	71,049	15,295
경북	1,723	1,999,231	284,849	563	1,738,781	233,032	647	92,366	19,739
경남	1,230	2,537,471	363,897	496	2,332,535	305,818	527	60,398	23,437
제주	42	32,636	10,736	7	6,946	2,990	21	4,575	2,256

제4장 방재관리 분야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면적 (평)	수용능력 (명)	개소	면적 (평)	수용능력 (명)	개소	면적 (평)	수용능력 (명)
1,746	336,344	63,829	642	1,230,502	188,502	920	1,977,508	321,196
87	15,229	4,442	69	86,660	27,065	117	374,178	115,207
25	4,315	1,103	13	4,540	2,185	24	18,990	4,575
			4	8,869	2,670	1	1,146	340
88	5,128	3,603	31	9,598	3,620	56	17,534	5,854
4	81	91	3	391	185	7	6,151	1,450
37	7,678	1,691	1	6,797	432	13	15,659	1,849
8	1,622	280	15	15,162	1,871	15	18,755	6,260
322	56,151	11,856	79	73,597	20,017	224	146,742	32,857
196	93,097	5,683	41	49,513	4,257	69	236,391	15,456
37	3,640	1,227	24	18,254	5,097	18	16,236	4,809
472	98,723	16,912	31	52,004	15,320	70	35,230	8,662
52	6,524	1,832	55	712,321	63,155	25	25,708	4,622
56	4,695	2,074	102	80,287	21,792	83	883,021	80,916
294	28,596	10,161	87	55,011	8,574	132	84,477	13,343
68	10,865	2,874	79	42,549	9,422	60	91,124	22,346
			8	14,949	2,840	6	6,166	2,650

4. 자연재난 복구지원(복구지원과)

4-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하에서 “보통세 등 연평균액” 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 ❁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
 - ❖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비우심)에 대하여는
 -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4-2 특별재난지역

❁ 근 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 ❖ 동법시행령 제68조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지정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 정 기 준
100억원 미만 시·군·구	피해액이 35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피해액이 65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피해액이 80억원 이상
850억원 이상 시·군·구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 선포절차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에게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특별지원 내용

- ❖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

구 분	국 고 의 추 가 지 원 액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 지원율은

-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α)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고추가 지원율

$$= (\text{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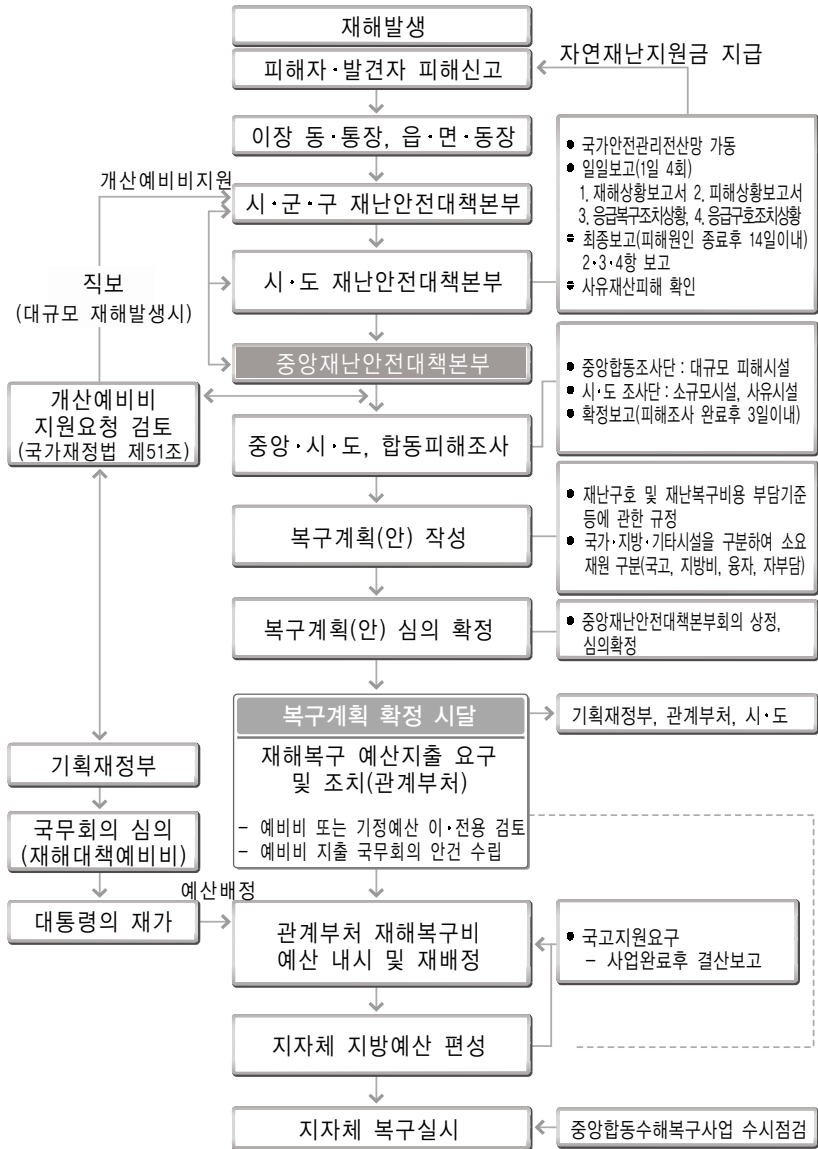
$$+ (\text{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1 + \alpha)$$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

연번	구분	피해일시	선포지역	피해내용 (명/억원)	선포 날자
1	제15호 태풍 루사	'02. 8.30 ~9. 1	16개 시도 203개 시군 (전국 일원)	246/51,479	9.16
2	제14호 태풍 매미	'03. 9.12 ~9.13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 (전국 일원)	131/42,225	9.22
3	대설피해	'04. 3. 4 ~3. 5	10개시도 82개 시·군·구 (전국 일원)	-/6,734	3.10
4	대설피해	'05.12. 3 ~12.23	9개 시도 57개 시·군·구 (전국 일원)	14/5,206	12.29
5	제3호 태풍 에위니아	'06.7.9 ~7.29	7개 시도 39개 시군	62/18,344	7.18 8.10
6	10.22~10.24 호우 및 강풍·풍랑	'06.10.22 ~10.24	1개도 6개시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1/699	11.15
7	8.4~15 집중호우	'07.8.4~	강원도 양구군	0/85	9.11
8	제11호 태풍 나리	'07.9.13 ~9.16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고흥, 보성, 화순, 완도	16/1,592	9.20 10.8
9	7.23~26 집중호우	'08.7.23 ~7.26	경북 봉화군	10/46,374	8.1
10	7.11~16 호우피해	'09. 7.11 ~7.16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2/811	7.31
11	12.4~6 강풍·풍랑	'09.12.4 ~12.6	충남 서천군	0/67	12.24
12	7월 호우	'10.7.16 ~7.24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4/318	8.11
13	8.13~18 호우	'10.8.13 ~8.18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곡성	1/851	9.3
14	제7호 태풍 곤파스	'10.9.1 ~9.3	화성,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신안	6/1,674	9.16
15	12.29~1.4 대설	'10.12.29 ~11.1.4	영암, 포항	383	1.24
16	2.11~14 대설	'10.2.11 ~2.14	강릉, 삼척, 울진	360	3.2

4-3

복구계획수립 흐름도



4-4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비 현황

가. 대규모 자연재난 현황

(단위 : 명, 억원)

재 해 명	발생년월일	우심피해 지역
1. 을축년 대홍수	'25. 7.18~ 9. 7	중부
2. 태풍 '사라'	'59. 9.15~ 9.17	영동, 영남, 호남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72. 8.19~ 8.20	서울, 경기, 강원, 충북
4. 태풍 「쥬디」	'79. 8.25~ 8.26	제주
5. 호우	'80. 7.21~ 7.23	충북, 충남, 경기, 강원
6. '84 대홍수	'84. 8.31~ 9. 4	서울, 경기, 강원
7. 태풍 「셀마」	'87. 7.15~ 7.16	남해, 동해
8. 중부지방 호우	'87. 7.21~ 7.23	중부
9. 영·호남 호우	'89. 7.25~ 7.27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10. 태풍 「쥬디」	'89. 7.28~ 7.29	서울 외 전지역
11. 한강 대홍수	'90. 9. 9~ 9.12	서울, 경기, 강원, 충북
12. 중부 호우	'91. 7.20~ 7.26	경기, 강원, 충북
13. 태풍 「글래디스」	'91. 8.22~ 8.26	부산, 강원, 경북, 경남
14. 태풍 「재니스」 및호우	'95. 8.19~ 8.30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15. 경기·강원 북부 호우	'96. 7.26~ 7.28	경기, 강원
16. '98 대홍수	'98. 7.31~ 8.18	전국(제주제외)
17. 태풍 「예니」	'98. 9.29~10.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8. 집중호우·태풍 「올가」	'99. 7.23~ 8. 4	전국
19. 집중호우·태풍「프라피룬」	'00. 8.23~ 9. 1	전국(대구, 울산 제외)
20. '01 폭풍설	'01. 1. 7~ 1. 9	전국
21. 8.4~8.11호우	'02. 8. 4~ 8.11	경기, 강원, 충북, 경남·북 등
22. 태풍 「루사」	'02. 8.30~ 9. 1	전국
23. 태풍 「매미」	'03. 9.12~ 9.13	전국(서울, 인천제외)
24. 대설	'04. 3. 4~ 3. 5	충남, 충북, 대전, 경북 등
25. 대설	'05.12. 3~12.24	광주, 충남, 전북, 전남
26.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06. 7.11~ 7.20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재해명	기상상황(단위: mm)	피해내용	
		인명	재산
1. 을축년 대홍수	-	517	0,89
2. 태풍 「사라」	최대일강우량 : 168.1(제주)	849	662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최대일강우량 : 313.6(수원)	550	265
4.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 : 260.6(서귀포)	136	502
5. 호우	최대일강우량 : 217.0(제주)	160	1,255
6. '84 대홍수	최대일강우량 : 314(속초)	189	1,643
7. 태풍 「셀마」	최대일강우량 : 216.8(고흥)	345	3,913
8. 중부지방 호우	최대일강우량 : 517.6(부여)	167	3,295
9. 영·호남 호우	최대일강우량 : 335.6(광주)	128	2,943
10.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 : 221(거제)	20	1,192
11. 한강 대홍수	최대일강우량 : 330.8(대관령)	163	5,203
12. 중부 호우	최대일강우량 : 308.5(춘천)	70	1,132
13. 태풍 「글래디스」	최대일강우량 : 439(부산)	103	2,357
14. 태풍 「재니스」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 : 361.5(보령)	65	4,562
15. 경기·강원 북부 호우	최대일강우량 : 268(철원)	29	4,275
16. '98 대홍수	최대일강우량 : 481(강화)	324	12,478
17. 태풍 「예니」	최대일강우량 : 516.4(포항)	57	2,749
18. 집중호우·태풍 「올가」	최대일강우량 : 280.3(철원)	67	10,490
19. 집중호우·태풍 「프라피룬」	최대일강우량 : 310(군산)	28	2,521
20. '01폭풍설	최대적설량 : 98.2cm(대관령)	4	6,590
21. 8.4~8.11호우	최대일강우량 : 571(양평)	23	9,181
22. 태풍 「루사」	최대일강우량 : 897(강릉)	246	51,479
23. 태풍 「매미」	최대일강우량 : 453(남해)	131	42,225
24. 대설	최대적설량 : 49cm(대전, 문경)	-	6,734
25. 대설	최대적설량 : 59cm(정읍)	14	5,206
26.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 : 921.0mm(횡성)	62	18,344

※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나.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01~'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적용	이재민(인)	사망(인)	침수면적(ha)	건 물
10년 합계	2010환산 당해년도	275,088	684	275,509	375,765 309,146
10년 평균	2010환산 당해년도	27,509	68	27,551	37,576 30,915
'01	2010환산 당해년도	4,165	82	20,012	13,737 10,813
'02	2010환산 당해년도	71,204	270	61,579	147,592 115,791
'03	2010환산 당해년도	63,133	148	51,411	120,199 96,389
'04	2010환산 당해년도	30,446	14	56,903	9,420 8,012
'05	2010환산 당해년도	9,914	52	26,782	17,297 15,028
'06	2010환산 당해년도	2,883	63	34,759	28,592 25,065
'07	2010환산 당해년도	675	17	4,859	6,649 5,910
'08	2010환산 당해년도	4,627	11	602	1,588 1,533
'09	2010환산 당해년도	11,931	13	5,677	2,335 2,250
'10	2010환산 당해년도	76,110	14	12,925	28,355 28,355

구 분	금액적용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 타	합 계
10년 합계	2010환산	57,889	966,491	14,365,520	5,079,781	20,845,446
	당해년도	47,490	785,310	11,718,074	4,184,044	17,044,064
10년 평균	2010환산	5,789	96,649	1,436,552	507,978	2,084,544
	당해년도	4,749	78,531	1,171,807	418,404	1,704,406
'01	2010환산	1,269	13,163	486,060	1,081,630	1,595,860
	당해년도	999	10,361	382,598	851,397	1,256,168
'02	2010환산	6,094	556,856	6,272,409	811,846	7,794,797
	당해년도	4,781	436,873	4,920,926	636,922	6,115,293
'03	2010환산	40,389	145,824	3,863,986	1,326,770	5,497,167
	당해년도	32,388	116,938	3,098,573	1,063,952	4,408,241
'04	2010환산	556	24,263	607,630	804,741	1,446,611
	당해년도	473	20,638	516,829	684,484	1,230,436
'05	2010환산	1,118	32,261	513,610	644,079	1,208,365
	당해년도	971	28,029	446,229	559,582	1,049,839
'06	2010환산	1,831	160,919	1,931,203	93,882	2,216,426
	당해년도	1,605	141,066	1,692,948	82,300	1,942,984
'07	2010환산	2,939	12,344	175,648	85,738	283,318
	당해년도	2,612	10,971	156,114	76,204	251,811
'08	2010환산	179	3,972	53,867	6,390	65,996
	당해년도	172	3,834	51,995	6,168	63,703
'09	2010환산	735	7,927	253,429	45,698	310,125
	당해년도	708	7,638	244,182	44,030	298,808
'10	2010환산	2,780	8,962	207,680	179,005	426,782
	당해년도	2,780	8,962	207,680	179,005	426,782

다. 시설별·시·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426,782	22,207	301	12,500		
	이 재 민	세 대	32,550	17,905		12	6,081		
		명	76,110	41,529		36	14,524		
	사 망·실 종		명	14	3				
	침 수 면 적		ha	12,925	11,115		22	31	
	주택	전 파·반 파	동	633	9	1	15		
		피 해 액	백만원	28,355	10,765	15	3,593		
	선박	전 파·반 파	척	99		1	5		
		피 해 액	백만원	2,780			68		
	농경지	유 실·매 물	ha	833	1		7		
		피 해 액	백만원	8,962	6		63		
	공공 시설	도로	물 량	개 소	461	3		22	
			교량	피해액	백만원	21,312	103	302	
		하천	물 량	개 소	1,365	17		14	
			피해액	백만원	59,550	1,256		785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432			1	
			피해액	백만원	15,671			12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898	3		4	
			피해액	백만원	14,992	32		37	
기타 피해액		백만원	96,156	9,502	286	4,678			
소 계		백만원	207,680	10,892	286	5,814			
기 타 피 해		백만원	179,005	544		2,960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715,406	40,999	298	14	18,504	
	지원 복구	소 계		백만원	556,884	18,436		14	10,687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385,371	12,905		9	7,481
			국 고	백만원	385,371	12,905		9	7,481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171,513	5,531		4	3,206	
	응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158,522	22,564	298		7,817		

구 분		단 위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340	56		74,953	19,317		
	이 재 민	세 대	57			6,773	128		
		명	157			15,890	272		
	사 망·실 종	명				5			
	침 수 면 적	ha							
	주택	전 파·반 파	동	3			85	8	
		피 해 액	백만원	45			5,332	171	
	선박	전 파·반 파	척				11	1	
		피 해 액	백만원				147	3	
	농경지	유 실·매 물	ha	3			120	59	
		피 해 액	백만원	29			1,145	635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102	62	
			피해액	백만원			2,602	2,089	
		하천	물 량 개 소				412	112	
			피해액	백만원			10,657	4,802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66	30	
			피해액	백만원			1,824	1,141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371	51	
			피해액	백만원			4,419	1,064	
기타 피해액	백만원				21,626	2,964			
소 계	백만원				41,128	12,060			
기 타 피 해	백만원	266	56		27,201	6,447			
총 복 구 액	백만원	517	22	3	115,788	43,527			
보 구 비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227	22	3	53,942	34,657	
		중 양 지 원	소 계	백만원	159	15	2	33,943	18,426
			국 고	백만원	159	15	2	33,943	18,426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68	7	1	19,998	16,231		
	응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290			61,847	8,870			

제4장 방재관리 분야

구 분		단 위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20,194	134,416	75,901	46,709		
	이 재 민		세 대	13	854	444	190		
			명	19	2,010	1,036	426		
	사 망·실 종		명		5	1			
	침 수 면 적		ha		1,294	382	79		
	주택	전 파·반 파	동	6	458	10	22		
		피 해 액	백만원	109	7,395	195	420		
	선박	전 파·반 파	척		54	8	13		
		피 해 액	백만원		767	86	120		
	농경지	유 실·매 물	ha	5	350	225	27		
		피 해 액	백만원	50	4,101	2,304	262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13	70	78	74		
			피해액	백만원	382	2,095	7,695	3,313	
		하천	물 량 개 소	9	175	349	228		
			피해액	백만원	257	6,872	23,740	6,965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6	177	104	43		
피해액			백만원	248	4,421	6,185	1,427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12	125	200	89			
		피해액	백만원	121	2,368	3,827	1,248		
기타 피해액	백만원	126	22,700	23,784	8,318				
소 계		백만원	1,133	38,458	65,231	21,866			
기 타 피 해		백만원	18,902	83,695	8,085	24,636			
복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11,166	176,724	198,750	61,577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6,922	166,221	186,006	43,208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4,845	118,616	134,331	28,527
				국 고	백만원	4,845	118,616	134,331	28,527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2,076	47,604	51,675	14,681			
	응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4,245	10,504	12,743	18,369			

구 분		단 위	경북	경 남	제 주	본 부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1,641	11,474	6,774	
	이 재 민		세 대	48	35	10	
			명	100	83	28	
	사 망·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1		
	주택	전 파·반 파	동	6	6	4	
		피 해 액	백만원	105	135	75	
	선박	전 파·반 파	척			6	
		피 해 액	백만원			1,587	
	농경지	유 실·매 물	ha	12	22	2	
		피 해 액	백만원	120	207	39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3	34		
			피해액	백만원	73	2,658	
		하천	물 량 개 소	1	48		
			피해액	백만원	8	4,208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5		
피해액			백만원		412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41	2		
		피해액	백만원		1,852	25	
기타 피해액		백만원		1,244	928		
소 계		백만원	81	10,373	953		
기 타 피 해		백만원	1,336	759	4,119		
복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1,294	42,392	3,831	
	지원 복구	소 계	백만원	381	34,554	1,607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267	24,720	1,125
			국 고	백만원	267	24,720	1,125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114	9,834	482	
	응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913	7,838	2,225		

라. 시설별·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합계	1.3~8	1.30~21	2.10~16	3.1~2		
			대설	풍랑	대설	풍랑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426,782	10,608	880	3,155	2,063
	이 재 민	세 대	명	32,550	1		4	
		명	76,110	1		6		
	사 망·실 종		명	14				
	침 수 면 적		ha	12,925				
	주택	전파·반파	동	633	1		3	
		피 해 액	백만원	28,355	15		45	
	선박	전파·반파	척	99				
		피 해 액	백만원	2,780				
	농경지	유실·매몰	ha	833				
		피 해 액	백만원	8,962				
	공 공 시 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461				
			피해액	백만원	21,312			
		하천	물 량 개 소	1,365				
			피해액	백만원	59,550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432				
			피해액	백만원	15,671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898				
			피해액	백만원	14,992			
		기타 피해액		백만원	96,156			
소 계		백만원	207,680					
기 타 피 해		백만원	179,005	10,593	880	3,110	2,063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715,406	4,084		951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556,884			
		중 앙 지 원	소 계	백만원	385,371			
			국 고	백만원	385,371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171,513				
	응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158,522	4,084		951		

구 분		단 위	3.9~10	3.11~13	3.17	3.20~21	4.28
			대설	강풍풍랑	대설	강풍풍랑	강풍풍랑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23,862	187	381	411	1,838
	이 재 민	세 대	1	1			
		명	1	3			
	사 망·실 종	명					
	침 수 면 적	ha					
	주택	전파·반파	동		2		1
		피 해 액	백만원		30		30
	선박	전파·반파	척				1
		피 해 액	백만원				4
	농경지	유실·매몰	ha				
		피 해 액	백만원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피해액	백만원			
		하천	물 량 개 소				
피해액			백만원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피해액	백만원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피해액	백만원				
기타 피해액	백만원			24			
소 계	백만원			24			
기 타 피 해	백만원	23,862	157	357	411	1,804	
복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9,475	4	23	25	
	지원 복구	소 계	백만원	9,475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6,632		
			국 고	백만원	6,632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2,842				
	용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4	23	25		

제4장 방재관리 분야

구 분		단 위	7.10~11	7.16~18	7.23~24	8.9~12	8.13~18		
			호우	호우	호우	태풍	호우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370	10,837	21,045	3,442	85,061		
	이 재 민	세 대	26	146	432	104	931		
		명	78	328	1,009	263	2,271		
	사 망·실 종	명			4	1	1		
	침 수 면 적	ha		1	1,294		483		
	주택	전파·반파	동	2	5	9	10	24	
		피 해 액	백만원	45	90	195	195	465	
	선박	전파·반파	척				3	4	
		피 해 액	백만원				6	9	
	농경지	유실·매몰	ha	10	28	350		283	
		피 해 액	백만원	98	254	4,096	8	2,880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1	39	49	16	139	
			피해액	백만원	13	1,239	936	808	11,388
		하천	물 량 개 소	16	101	141	12	536	
			피해액	백만원	49	5,803	5,795	99	29,464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5	7	154		148	
			피해액	백만원	8	30	3,431		8,548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66	120	15	285	
			피해액	백만원		2,012	2,149	177	5,175
기타		피해액	백만원		1,307	4,102	1,483	26,077	
소 계		백만원	70	10,390	16,413	2,567	80,652		
기 타 피 해	백만원	156	102	341	666	1,055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1,648	38,883	64,312	7,167	231,608		
	지원 복구	소 계	백만원		28,789	55,140		205,722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21,465	35,836		147,414
			국 고	백만원		21,465	35,836		147,414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7,324	19,304		58,309		
	용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1,648	10,095	9,172	7,167	25,886			

구 분		단 위	8.23~29	9.1~3	9.5~7	9.9~10	
			호우	태풍	태풍	호우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569	167,385	1,679	3,604
	이 재 민	세 대		79	719	77	247
		명		173	1,711	200	612
	사 망·실 종		명		6		
	침 수 면 적		ha	11,114			
	주택	전파·반파	동	4	543	6	8
		피 해 액	백만원	60	8,670	90	120
	선박	전파·반파	척	3	73	6	
		피 해 액	백만원	60	1,051	1,587	
	농경지	유실·매몰	ha	3	2	0	
		피 해 액	백만원	53	22	2	153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1	31		
			피해액	백만원	236	1,761	446
		하천	물 량 개 소	7	30		68
			피해액	백만원	85	1,221	1,646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24		6
피해액			백만원		1,028	248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7	22		46	
		피해액	백만원	41	398	334	
기타 피해액		백만원	34	50,787		289	
소 계		백만원	395	54,779		2,963	
기 타 피 해		백만원	2	102,864		367	
복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3,096	179,344	436	15,347
	지원 복구	소 계		백만원		157,122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114,529	
			국 고	백만원		114,529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42,593		
		용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3,096	22,221	436	15,347	

제4장 방재관리 분야

구 분		단 위	9.21~22	10.25~27	12.10	12.29~1.1		
			호우	강풍풍랑	강풍	대설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59,277	1,658	174	28,296	
	이 재 민	세 대		29,780			2	
		명		69,450			4	
	사 망·실 종		명	2				
	침 수 면 적		ha	32				
	주택	전파·반파	동	13			2	
		피 해 액	백만원	18,260			45	
	선박	전파·반파	척	4	4		1	
		피 해 액	백만원	24	31		8	
	농경지	유실·매몰	ha	139				
		피 해 액	백만원	1,397				
	공공 시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162				
			피해액	백만원	4,902			
		하천	물 량 개 소	454				
			피해액	백만원	15,388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88				
			피해액	백만원	2,377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337				
			피해액	백만원	4,706			
기타 피해액		백만원	12,034			20		
소 계		백만원	39,407			20		
기 타 피 해		백만원	189	1,627	174	28,223		
복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147,833		1	11,171	
	지원 복구	소 계	백만원	89,486			11,151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51,452			8,043
			국 고	백만원	51,452			8,043
			의연금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38,034			3,108	
		용 자	백만원					
		자 부 담	백만원					
자 체 복 구		백만원	58,348		1	20		

(단위 : 백만원)

순번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 계	426,782	22,207	301		12,500	340	56		74,953
1	1.3~8 대설	10,608				186				6,187
2	1.30~2.1 풍랑	880								
3	2.10~16 대설	3,155				2				37
4	3.1~2 강풍풍랑	2,063								
5	3.9~10 대설	23,862				20		56		3,256
6	3.11~13 강풍풍랑	187				3				7
7	3.17 대설	381								78
8	3.20~21 강풍풍랑	411				2				
9	4.28 강풍풍랑	1,838								
10	7.10~11 호우	370					31			
11	7.16~18 호우	10,837	538							26
12	7.23~24 호우	21,045								278
13	8.9~12 태풍 덴무	3,442		301						15
14	8.13~18 호우	85,061	32			8	15			3,695
15	8.23~29 호우	569				44				142
16	9.1~3 태풍 곤파스	167,385	4,479			5,106	15			35,273
17	9.5~7 태풍 말로	1,679	45							
18	9.9~10 호우	3,604				82	15			2,097
19	9.21~22 호우	59,277	17,113			7,034				23,860
20	10.25~27 강풍풍랑	1,658				13				
21	12.10 강풍	174								
22	12.29~1.1 대설	28,296					264			2

제4장 방재관리 분야

(단위 : 백만원)

순번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9,316	20,194	134,416	75,901	46,709	1,641	11,474	6,774
1	1.3~8 대설	2,979	1,173	8	16		60		
2	1.30~2.1 풍랑					880			
3	2.10~16 대설	1,917	637				562		
4	3.1~2 강풍풍랑					2,063			
5	3.9~10 대설	742	16,997	1,014	1,260		233	284	
6	3.11~13 강풍풍랑	69		74	1	20	8	5	
7	3.17 대설		48	225	24		6		
8	3.20~21 강풍풍랑	2		5	10		392		
9	4.28 강풍풍랑	10		1,789			8	31	
10	7.10~11 호우				36	303			
11	7.16~18 호우			99		3,300	55	6,819	
12	7.23~24 호우			20,736	30	1			
13	8.9~12 태풍 덴무					1,097	11	946	1,072
14	8.13~18 호우	1,617	124	319	64,030	12,000	261	2,960	
15	8.23~29 호우			11		96		235	41
16	9.1~3 태풍 곤파스	742	97	109,725	4,927	6,945	30	1	45
17	9.5~7 태풍 말로					15	14	3	1,602
18	9.9~10 호우	30	1,096	190		94			
19	9.21~22 호우	11,208	22	40					
20	10.25~27 강풍풍랑			9		1,636			
21	12.10 강풍			172			2		
22	12.29~1.1 대설				5,567	18,259		190	4,015

5. 풍수해 보험

5-1 사업 개요

- ❁ 전국사업 : '08. 4. 1 ~ 계속
※ 시범사업 : '06. 5. 16 ~ '08. 3. 31
-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 사업지역 : 전국 기초자치단체
- ❁ 시행주체/운영 : 소방방재청/민영보험사

5-2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구분 상품	영업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시설물 복구기준액 50%, 70% 가입형	50%(국비35%+지방비15%)	90%(국비)
시설물 복구기준액 90% 가입형	40%(국비28%+지방비12%)	90%(국비)

5-3

보상금액 및 대상시설물별 기준단가

가. 보상금액

 주택

피해유형		보 상 금 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상형
전파	50㎡ 이하	1,500만원	2,100만원	2,70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 50% × 60만원	주택면적(㎡) × 70% × 60만원	주택면적(㎡) × 90% × 6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	50㎡ 이하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50㎡ 초과	90만원 + {6천원 × 주택면적(㎡)}	80만원 + {1만2천원 × 주택면적(㎡)}	70만원 + {1만8천원 × 주택면적(㎡)}

 온실

피해유형	보 상 금 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상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상형
전파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 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단가

☼ 주택

시설물 명칭	단 가	비 고
주택	600,000원/㎡	

☼ 온실

시설물 명칭		단 가	비 고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원/㎡	※ 농가표준형 규격 하우스는 2016년 까지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2017년부터 불허	
철골유리온실		104,150원/㎡		
자동화비닐하우스		59,186원/㎡		
농가표준형규격	단 동 하 우 스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9,644원/㎡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11,853원/㎡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4,402원/㎡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4,555원/㎡
	연 동 하 우 스	1-2W		17,900원/㎡
		1-2W각관 A형		
		1-2W각관 B형		
		1-2W서까래 보강형		
1-2W보완형				
목재하우스		3,420원/㎡		
철재하우스		2,280원/㎡		
1-A2형(표고, 양묘)		25,000원/㎡		

		시설물 명칭	단 가	비 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전문 기관 개발 규격 22 종	07-단동-1	17,100원/m ²	※ 지역별 내재해 시설 설계강도 기준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내재형규격으로 인정
		07-단동-2	17,600원/m ²	
		07-단동-3	16,800원/m ²	
		07-단동-4	17,000원/m ²	
		07-단동-5	15,800원/m ²	
		07-단동-6	15,600원/m ²	
		07-단동-7	14,800원/m ²	
		07-단동-8	14,600원/m ²	
		07-단동-9	13,500원/m ²	
		07-단동-10	12,900원/m ²	
		07-단동-11	12,800원/m ²	
		07-단동-12	17,500원/m ²	
		07-단동-13	17,000원/m ²	
		07-단동-14	16,500원/m ²	
		07-단동-15	16,100원/m ²	
		07-단동-16	15,200원/m ²	
		07-단동-17	14,500원/m ²	
		07-단동-18	17,700원/m ²	
		07-자동화-1	60,400원/m ²	
		07-포도-1	24,300원/m ²	
		07-포도-2	23,200원/m ²	
		07-감굴-1	28,400원/m ²	

시설물 명칭		단 가	비 고
민간전문업체개발규격8층	07-단동(민)-1	13,600원/㎡	
	07-단동(민)-2	18,200원/㎡	
	07-단동(민)-3	22,700원/㎡	
	07-단동(민)-4	27,300원/㎡	
	07-광폭(민)-1	45,800원/㎡	
	07-광폭(민)-2	45,800원/㎡	
	07-광폭(민)-4	47,300원/㎡	
	07-연동(민)-1	40,000원/㎡	

5-4 보험금 지급현황('06~'10)

(단위:천원)

연도	계		주택		온실		축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41	3,255,359	784	1,891,579	449	1,208,893	8	154,887
'06	4	23,900	3	23,700	1	200	-	-
'07	100	480,941	35	211,354	62	258,474	3	11,113
'08	67	198,299	29	101,734	38	96,565	-	-
'09	442	1,018,133	287	788,681	153	208,026	2	21,426
'10	628	1,534,086	430	766,110	195	645,628	3	122,348

6.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6-1

세계의 주요지진

(사망자 : 만명 이상)

발생년월일	지역	사망자 수(명)	규모(M)
1908. 12. 28	이태리, Messina	120,000	7.5
1915. 1. 13	이태리, Avezzano	30,000	7.0
1920. 12. 16	중국, Kansu	180,000	8.5
1923. 9. 1	일본, Kwanto	143,000	8.2
1932. 12. 26	중국, Kansu	70,000	7.6
1935. 5. 31	파키스탄, Quetta	60,000	7.5
1939. 1. 24	칠레, Chillan	30,000	7.8
1939. 12. 27	터키, Erzincan	23,000	8.0
1960. 2. 29	모로코, Agadir	14,000	5.9
1962. 9. 1	이란북서부	14,000	7.3
1968. 8. 31	이란	11,600	7.4
1970. 5. 31	페루	66,000	7.8
1976. 2. 4	과테말라	22,000	7.9
1976. 7. 27	중국, Tangshan	242,000	7.6
1978. 9. 16	이란, Tabas	15,000	7.7
1988. 12. 7	아르메니아(구소련)	25,000	6.8
1990. 6. 20	이란, Rasht	45,000	7.7
1999. 8. 17	터키, Izmit	15,657	7.4
2001. 1. 26	인도, Gujrat	20,000	7.7
2003. 12. 26	이란, 남동부	26,200	6.6
2004. 12. 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100	9.0
2005. 10. 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000	7.6
2008. 5. 12	중국, 쓰촨성	69,000	8.0
2010. 1. 13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222,570	7.0

※ 역사적 최대피해 : 1556년 1월 23일 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명 사망

최근의 세계주요지진

발생년월일	지 역	사망자 수 (명)	규모 (M)
1995. 1. 17	일본, 고베	6,432	7.2
1995. 5. 27	러시아, 사할린	1,989	7.5
1996. 2. 3	중국, 운남성	3,400	7.0
1997. 2. 28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국경	965	6.1
1997. 5. 10	이란 - 아프가니스탄 국경	1,567	7.3
1998. 2. 4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2,323	6.1
1998. 5. 30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4,000	6.9
1998. 7. 17	파푸아뉴기아	2,183	7.1
1999. 1. 26	콜롬비아, 서부	1,170	5.8
1999. 8. 17	터키, 이즈미트	15,657	7.4
1999. 9. 21	대만, 타이중	2,400	7.6
1999. 11. 12	터키, 두즈체	834	6.3
2001. 1. 14	엔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844	7.6
2001. 1. 26	인도, 구자라트	20,085	7.7
2001. 2. 23	엔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315	6.6
2002. 3. 3	아프카니스탄	150	7.4
2002. 3. 25	아프카니스탄	1,000	6.1
2003. 2. 24	중국, 북서부(자스현 자스시)	263	6.4
2003. 5. 21	알제리, 북부지역	2,266	6.8
2003. 12. 26	이란, 남동부 지진	26,200	6.5
2004. 2. 24	모로코, 북부해안	628	6.4
2004. 12. 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100	9.0
2005. 10. 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000	7.6
2008. 5. 12	중국, 쓰촨성	69,000	8.0
2010. 1. 13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222,570	7.0

6-2

우리나라 주요지진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양 지
1978. 9. 16	5.2	충북 속리산부근지역
1978. 10. 7	5.0	충남 홍성군 홍성읍지역
<p>- 홍성피해 : 인명 → 부상 2명, 재산 → 3억원(당해년도 산정금액) ※ 건물파손 118동, 성곽 25m 파손, 학교 9개교 149개 교실 파손</p>		
1980. 1. 8	5.3	평북 서부 의주, 삭주-귀성지역
1982. 2. 14	4.5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2003. 3. 30	5.0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2004. 5. 29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2007. 1. 20	4.8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계지역

최근의 지진발생현황 - 규모(M) 4.0 이상

(단위 : 회)

발생년월일	규모(M)	진앙지
1982. 2. 14	4.5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1982. 3. 1	4.7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1982. 8. 29	4.0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1983. 9. 17	4.2	황해도 멸악산 북서 지역
1985. 1. 14	4.2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1985. 6. 25	4.0	서해중부 영흥도부근 해역
1987. 3. 6	4.0	평남 대동강하구 남포부근 지역
1992. 1. 21	4.0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50km 해역
1992. 11. 4	4.4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1992. 12. 13	4.0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70km 해역
1993. 3. 28	4.5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1994. 4. 22	4.6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1994. 4. 23	4.5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1994. 4. 23	4.1	울산광역시 동쪽 약 150km 해역
1994. 7. 26	4.9	전남 흥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1995. 7. 24	4.2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1996. 1. 24	4.2	강원도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1996. 12. 13	4.5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1997. 6. 26	4.2	경북 경주 남동쪽 약 9km 지역
1998. 2. 10	4.1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약 90km해역
1999. 1. 11	4.2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2001. 11. 24	4.1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2002. 8. 10	4.0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해역
2003. 3. 23	4.0	전남 흥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2003. 3. 30	5.0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서쪽 약 80km 해역
2003. 6. 9	4.0	전북 군산시 서쪽 약 280km 해역
2004. 5. 29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2005. 6. 29	4.0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2007. 1. 20	4.8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계지역
2008. 5. 31	4.2	제주 제주시 서쪽 78Km 해역
2009. 5. 2	4.0	경북 안동 서남서쪽 2Km 지역

6-3

규모별 지진발생 현황

(단위 : 회)

규모	계	$2 \leq M < 3$	$3 \leq M < 4$	$4 \leq M < 5$	$5 \leq M < 6$
년도별					
총 계	918	627	253	33	5
1978	6	1	1	2	2
1979	22	5	16	1	-
1980	16	10	5	-	1
1981	15	5	9	1	-
1982	13	2	8	3	-
1983	20	10	9	1	-
1984	19	12	7	-	-
1985	26	15	9	2	-
1986	15	3	12	-	-
1987	11	7	3	1	-
1988	6	2	4	-	-
1989	16	3	13	-	-
1990	15	12	3	-	-
1991	19	12	7	-	-
1992	15	8	4	3	-
1993	23	16	6	1	-
1994	25	14	7	4	-
1995	29	18	10	1	-
1996	39	25	12	2	-
1997	21	13	7	1	-
1998	32	25	6	1	-
1999	37	21	15	1	-
2000	29	21	8	-	-
2001	43	36	6	1	-
2002	49	38	10	1	-
2003	38	29	6	2	1
2004	42	36	5	-	1
2005	37	22	14	1	-
2006	50	43	7	-	-
2007	42	40	1	1	-
2008	46	36	9	1	-
2009	60	50	9	1	-
2010	42	37	5	-	-

6-4

시·도별 지진발생 현황 (북한지역 포함)

(단위 : 회)

시·도별 년도별	계	남	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661	556	105	0	1	5	2	1	7	3	9
1994	25	20	5	-	-	-	-	1	-	-	-
1995	29	19	10	-	-	-	-	-	-	-	-
1996	39	31	8	-	1	-	-	-	-	1	-
1997	21	19	2	-	-	1	-	-	-	1	1
1998	32	28	4	-	-	-	-	-	1	-	-
1999	37	35	2	-	-	1	-	-	-	-	-
2000	29	22	7	-	-	-	-	-	1	-	-
2001	43	42	1	-	-	-	-	-	-	-	1
2002	49	43	6	-	-	-	-	-	-	-	1
2003	38	38	-	-	-	1	-	-	1	-	-
2004	42	36	6	-	-	2	1	-	1	-	1
2005	37	30	7	-	-	-	-	-	-	1	-
2006	50	46	4	-	-	-	-	-	3	-	-
2007	42	35	7	-	-	-	-	-	-	-	-
2008	46	34	12	-	-	-	1	-	-	-	3
2009	60	46	14	-	-	-	-	-	-	-	1
2010	42	32	10	-	-	-	-	-	-	-	1

제4장 방재관리 분야

시·도별 년도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역	북한	
										지역	해역
계	38	19	37	20	20	81	26	2	285	89	16
1994	1	-	1	-	-	3	1	-	13	5	-
1995	-	-	1	-	1	6	-	-	11	6	4
1996	6	2	2	2	1	5	1	-	10	8	-
1997	3	1	-	1	-	2	1	-	8	2	-
1998	2	1	-	2	-	7	1	-	14	3	1
1999	8	2	3	1	-	4	-	1	15	2	-
2000	1	-	3	1	2	4	2	-	8	6	1
2001	2	2	4	5	3	8	2	-	15	1	-
2002	2	2	5	1	5	4	5	-	18	5	1
2003	-	1	4	-	1	8	-	-	22	-	-
2004	2	-	1	1	-	2	3	1	21	4	2
2005	1	2	1	-	3	3	-	-	19	3	4
2006	4	3	2	1	-	1	4	-	28	4	-
2007	6	3	1	-	1	6	2	-	16	6	1
2008	-	-	2	1	-	3	2	-	22	11	1
2009	-	-	2	3	1	10	2	-	27	13	1
2010	-	-	5	1	2	5	-	-	18	10	-

6-5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규 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2.9 미만	I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다.
3.0 ~ 3.9	II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느낀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가 흔들린다.
	III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진이 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린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 지속시간이 산출된다.
4.0 ~ 4.9	IV	낮에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밤에는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깬다.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낸다. 대형 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준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움직인다.
	V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어떤 곳에서는 석고(plaster)에 금이 간다.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나무, 전산주 등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다. 추시계가 멈춘다.
5.0 ~ 5.9	VI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간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인다. 떨어진 석고와 피해를 입은 굴뚝이 일부 있다.
	VII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온다. 설계 및 건축이 잘된 건물에서는 피해가 무시될 수 있고, 보통 건축물에서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열등한 건축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이 무너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6.0 ~ 6.9	VIII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은 부분적인 붕괴(崩壞)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열등한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 공장 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쏟아져 나온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고, 운전자가 방해 받는다.
	IX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주며, 부분 적으로 붕괴 한다. 일반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난다. 땅에는 금이 명백하게 간다. 지하 파이프도 부러진다.

규 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7.0 이상	X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된다. 대개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땅에 심한 금이 간다. 철도가 휘어진다. 산사태가 강둑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된다. 물이 튀어나오며, 독을 넘어 쏟아진다.
	XI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간다.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된다. 연약한 땅이 폭 꺼지고 지층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
	XII	전면적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하늘로 던져진다.
6.0 ~ 6.9	VIII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은 부분적인 붕괴(崩壞)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열등한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 공장 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쏟아져 나온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고, 운전자가 방해를 받는다.
	IX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주며, 부분 적으로 붕괴한다. 일반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난다. 땅에는 금이 명백하게 간다. 지하 파이프도 부러진다.
7.0 이상	X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된다. 대개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땅에 심한 금이 간다. 철도가 휘어진다. 산사태가 강둑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된다. 물이 튀어나오며, 독을 넘어 쏟아진다.
	XI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간다.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된다. 연약한 땅이 폭 꺼지고 지층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
	XII	전면적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하늘로 던져진다.

7.

국제방재협력

7-1

국제방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세계 여러 나라의 재난관리 담당기관과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제사회의 재해저감에 기여코자 함

❁ 「재난관리 상호협력 MOU」 개념

- ❖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외국기관과 약정한 문서로 소방방재청·차장이 친필 서명하고,
- ❖ 기관간 약정, 협정서, 양해각서(또는 PROTOCOL, ARRANGEMENT, MOU)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상호협력 MOU 체결현황

체결 순서	국가(체결기관명)	형식	일시	장소	한국측 서명자
1	미국(FEMA)	Protocol	'00. 5. 26	워싱턴	김재영차관
2	벨라루스(비상사태부)	Arrangement	'06. 5. 12	민스크	문원경청장
3	몽골(재난관리부)	MOU	'06. 9. 30	울란바투르	문원경청장
4	미국(오클라호마주립대)	MOU	'07. 3. 26	오클라호마대	문원경청장
5	UAE(두바이민방위청)	MOU	'07. 4. 1	두바이	문원경청장
6	아제르바이잔(비상사태부)	MOU	'07. 4. 23	서울(B,H)	문원경청장
7	UN(ISDR: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사무국)	MOU	'08. 3. 31	제네바	박연수차장
8	몰디브(주거환경부)	MOU	'10. 9.13	말레	박연수청장
9	World Bank	MOU	'11. 1.21	워싱턴	박연수청장

※ 「미국 FEMA와 체결한 Protocol ('00. 5. 26)」은 청 개청 전에 체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청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고, 미국 FEMA와 합의하여 우리 청 소관으로 분류

7-2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 개최

개최배경

- ❖ VIP,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노력 동참의지 천명(G8정상회의-'08.7)
- ❖ 아시아국가 관계중시 “新 아시아 외교구상” 천명('09.3)
- ❖ 발전된 IT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도권 확보 필요

회의개요

- ❖ 명 칭 : 제4차 UN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MCDRR)
 〈AMCDRR : Asian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 ※ 회의성격 : 아시아지역 재난관리 각료, UN기구, NGO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UN 회의
 - 제1차(중국, '05), 2차(인도, '07), 3차(말레이시아, '08)
- ❖ 일 시 : 2010.10.25 ~ 28(인천 송도)
- ❖ 주 관 : UN ISDR, 소방방재청, 인천광역시
- ❖ 규 모 : 아·태 53개국 재난관리 각료, UN기구·NGO 대표 등 922명 (국외 473명, 국내 449명)
 - ※ 김황식 국무총리, 부탄총리(행정수반)를 비롯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아·태지역 각료 및 UN ISDR, UN ESCAP 등 UN기구, IFRC, WB, APEC 등 국제기구
- ❖ 회의주제 : 기후변화적응을 통한 재해위험경감
 - 제1주제 : 기후변화적응 방재역량 강화
 - 제2주제 : 기후변화대응 선진사례 개발 및 공유
 - 제3주제 : 기후변화대응 방재전략을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

❁ 주요성과

❖ ‘인천선언문’ 도출

- 아·태지역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방재역량 강화”, 기술·정보의 공유, “재해위험을 고려한 개발정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선언문 채택
- 2005년 168개국이 일본에서 합의한 “효고행동계획” 이행을 촉구 하고, 각국이 재해경감을 위한 투자를 확장 합의

❖ ‘기후변화 대응 방재실천계획’ 합의

-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국가간 재해경감 협력을 위해 현존 산재된 기후변화 및 재해경감 관련 정보와 기술이 모이는 방재플랫폼 구축
- 성장위주 난개발로 인하여 재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개발도상국 정책 결정을 위해 기후변화와 재해경감을 고려한 정책개발 지침서 마련 등

❖ 양자회담을 통한 상호 관심사항 협의 및 협조체계 구축

- 9개 국가 3개 국제기구와 양자회담을 통하여 기술·정보의 교환 및 지원방안 협의

※ 9개 국가 : 일본, 카자흐스탄, 호주, 네팔, 베트남, 몰디브,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부탄

3개 국제기구 : Aus-AID, 세계은행(GFDRR), ADPC

❁ 기대효과

- ❖ 지구촌 재해의 공동대응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선제권 확보
- ❖ ‘Asia Initiative for DRR through OCA’를 선언, 국제활동에서 한국 위상 강화로 국격 제고
- ❖ 첨단 IT 방재기술 수출 등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산업 발전기틀 마련
- ❖ 친절하고 안전한 한국 이미지 창출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여

각료회의 일정표

Day 1 (10.25)	Day 2 (10.26)		Day 3 (10.27)			Day 4 (10.28)	
사전회의 (전일) -ISDR지역 협의체 회의 -SAARC 세미나 -한일방재회의 (방재관리국장) -태풍위원회 회의 (방재연구소장)	08:00~10:00 등록·식전행사		08:30~10:30 HLRT 2 참가국 각료연설	08:30~10:30 TS2: 기후변화대응 기술·정보 및 정책사례 공유	Special Session II (Risk Financing)	08:00~10:00 Side Events	
	10:00~11:50 개회식 - 개회식공연 - 개회사 및 축사 - 기조연설(Key-note Speech) - UN ISDR OFFICE 서명식					10:30~11:00 Cofee Break	
	12:00~14:00 Lunch and Side Events(일반참가자) 12:30~13:40 국무총리주최 환영오찬 (행정수반, 각료급)		11:00~12:30 Plenary Discussion			11:00~11:30 기자회견	
			12:30~14:00 Lunch and Side Events			11:30~13:00 환송오찬	
참가국 수석대표급 Technical Visit (廳 상황실 등) 13:30~18:30 *저녁 리셉션 (쉐라톤호텔) 19:00~21:00	14:00~16:00 HLRT 1 참가국 각료연설	14:00~16:00 TS1: 기후변화대응 방재역량 강화	Special Session I (HFA)	14:00~16:00 HLRT 3 참가국 각료연설	14:00~16:00 TS 3: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	Special Session III (Safer Cities) Cultural Visit	
	16:00~16:30 Coffee Break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Plenary Discussion			16:30~18:00 Plenary Discussion			
	19:00~21:30 행안부장관 주최 환영만찬 (회의 참가자)			19:00~20:30 소방방재청장 주최 환영만찬 (참가국·국제기구 대표)			
09:00~18:00 기후변화방재산업전(CADRE) / Seminars(학계 전문가) / 문화행사							

7-3

재해위험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 및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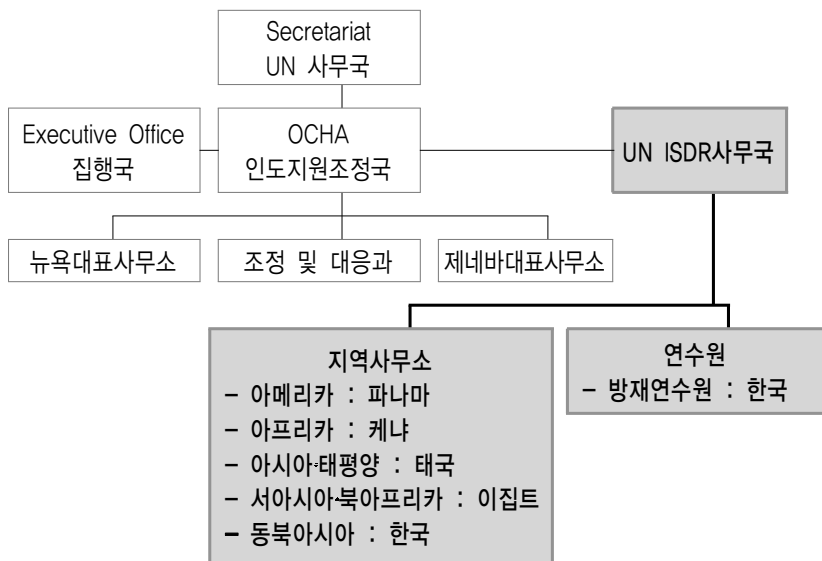
기구 개요

- ✚ 유치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필요
 - ※ '10. 11. 5. 동 기구 설립을 위한 한국정부와 UN 간 협정체결 (조약 제2029호)
-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테크노파크 내 미추홀타워 18층

기능 및 역할

- ①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 최초 방재분야 교육·훈련 국제기구)
 - The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GETI)
 - ✚ 전 세계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방재관련 교육·훈련 실시
 - ✚ 재해경감 기술 축적 및 공유, 네트워킹 구축
 - ✚ UN 및 타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인증자격프로그램 운영 등
- ② UN ISDR 인천 동북아사무소(UN ISDR 산하 동북아 지역사무소)
 - The UN ISDR Office in Incheon for Northeast Asia
 - ✚ 태풍, 황사, 지진, 가뭄 등 재해 공동 예측 및 대응
 - ✚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 동북아지역 재해경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지원 등

UN ISDR 기구표



8. 방재교육연구현황

8-1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기본현황

1. 연 혁

기관연혁

- 1986.12. 26 :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81명) 신설
- 1994. 4. 21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담당관(27명)
- 1997. 5. 27 : 내무부 국립방재연구소(18명) 신설
- 1998.12. 31 :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21명)
- 2004. 6. 1 : 소방방재청 민방위교육관, 국립방재연구소
- 2006. 3. 6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56명) 신설
- 2006. 7. 1 : 국제방재교육 및 연구 기능 확대로 3명 증원
- 2008. 6. 5 : 대국대과 체제로의 기능 통합으로 2과 1소로 개편

법적근거

❁ 설립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361호, 2010.9.1)

❁ 교육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예방교육홍보)
- 자연재해대책법 제48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측 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전문인력 육성)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지진재해대책법 제11조(지진방재교육 및 훈련홍보)
- 저수자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훈련)

2. 기구 및 정원

기구 : 2과 1소



3. 주요기능

- ❁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
- ❁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 재난의 예방·복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와 방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
- ❁ 재난의 경감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4. 교육시설 현황

교육시설		면적(㎡)	수용능력		비고
부	지	260,886	중앙·충청소방학교 포함		
운	동	5,293	1개소		
강	의	462	4실	206명	201호(40명) 301호(96명) 302호(30명) 303호(40명)
분	입	765	10실	150명	
토	의		2실	80명	
NDMS 정보화교육장					
브	레	66	1실	20명	
인	스				
토	밍				
실					
생	활	1,987	33실	57명	1인 9실 2인 24실
관					
안	전	1,440	10종	120명	
체	험				
센	터				
화	생	97	1실	30명	
방	교				
교	육				
장					
야	외	283	4실	320명	
강	의				
의	실				
구	내	1,077	-	225명	소방학교관리
식	당				

구분		과 정		교육기간	횟 수	실 적	연 인원
총 계(71개 과정)				407	285	14,590	112,486
기본 교육 ^ 공무원 연 V	합계(8개 과정)			37	21	387	1,830
	재난 안전 관리	신임	재난 관리 신규 과정	5	2	25	125
		보수	재난 관리 실무 과정	5	4	93	475
	민방위	관리	재난 관리 자 과정	5	2	40	200
			고위 관리 자 과정	2	1	35	70
		신임	민방위 신규 과정	5	2	36	180
			보수	민방위 실무 과정	5	6	92
	관리	민방위 중견 관리 과정	5	3	49	245	
		민방위 관리 자 과정	5	1	17	85	
	합 계(45개 과정)				158	131	3,635
소 계(29개 과정)				110	74	1,627	5,913
재난 안전 관리 · 복구	대비 · 대응	재난 대비 훈련 과정	3	3	53	159	
		상황 관리 실무 과정	5	2	38	190	
		기후 변화 대응 과정	5	1	44	220	
		N D M S - 풍수해 과정	3	15	264	792	
		N D M S - 이재민 과정	2	4	40	80	
		N D M S - 인적 재난 과정	2	5	25	50	
	예방 · 복구	N D M S - 대설 과정	2	8	101	202	
		재해 복구 실무 과정	5	3	70	350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점검 실무 과정	5	2	36	180	
		방재 시설 기준 운영 과정	5	1	20	100	
		풍수해 재감종합계획 과정	5	2	39	195	
		하천 관리 실무 과정	5	4	113	565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과정	5	2	47	235	
		풍수해 보험 실무 과정	2	2	34	68	
		지진 방재 실무 과정	3	2	48	144	
		재해 예경보 시스템 과정	4	2	50	200	
		재난 심리 지원 과정	3	1	33	99	
		급경사 지 관리 실무 과정	5	2	31	155	
	수상 레저 실무 과정	5	1	21	105		
	재난 구호 과정	3	1	14	42		
	저수지 댐 안전 관리 교육	3		181	543		
	수탁	국가반체계재난관리과정(전염병)	5	1	43	215	
		국가반체계재난관리과정(정보통신)	5	1	36	180	
		통합적 지역재난대응체계구축과정	5	2	60	300	
		자원봉사자재난안전대응역량강화과정	3	2	64	192	
		재난대응언론소통과정	4	1	26	104	
	민간인	지역 자율 방재 단 과정	지역 자율 방재 단 과정	2	2	40	80
			손해 평가 인양성 과정	3	1	26	78
			재난 피해자 심리전문가 과정	3	1	30	90

구분	과	정	교육기간	횟 수	실 적(명)	연 인 원(명)	
기 타 교 육	소 계(16개 과정)		48	57	2,008	5,109	
	민 간 인	민 방 위 경 보 요 원 과 정	3	1	18	54	
		화 생 방 실 무 과 정	5	2	38	190	
		경 보 단 말 운 영 과 정	3	2	26	78	
		새 올 행 정 시 스템 과 정	3	9	213	639	
		민 방 위 날 훈 련 실 무 과 정	3	2	49	147	
		민방위실전훈련센터교관양성과정	3	1	13	39	
		비 상 대 비 능 령 향 상 과 정	3	2	118	354	
		기 술 인 력 동 원 실 무 과 정	2	6	196	392	
		민 방 위 실 기 강 사 과 정	3	2	63	189	
		지 역 민 방 위 대 장 과 정 (도 시)	2	9	365	730	
	지 역 민 방 위 대 장 과 정 (농 촌)	2	6	294	588		
	여 성 민 방 위 대 장 과 정	2	5	246	492		
	직 장 민 방 위 대 과 정	3	5	150	450		
	비 상 대 비 관 리 자 보 수 과 정	3	2	89	267		
	비 상 대 비 실 무 자 보 수 과 정	3	2	75	225		
	신 임 비 상 대 비 담 당 자 과 정	5	1	55	275		
	합 계(18개 과정)			212	133	10,568	99,634
	생 활 안 전	소 계(4개 과정)		10	42	3,764	4,282
민 간 인		학 교 안 전 지 도 교 원 과 정	5	1	35	175	
		학 교 안 전 관 리 자 과 정	3	1	189	567	
		생 활 안 전 체 험 과 정	1	30	1,456	1,456	
	학 교 생 활 안 전 과 정	1	10	2,084	2,084		
국 제 방 재	소 계(3개 과정)		48	3	48	768	
	민 간 인	방 글 라 데 시 재 해 예 방 및 관 리 과 정	16	1	15	240	
		기 후 변 화 와 재 해 예 방 과 정	16	1	19	304	
재 해 예 경 보 시 스템 과 정		16	1	14	224		
사 이 비	소 계(11개 과정)		154	88	6,756	94,584	
	공 무 원	재 난 관 리 총 론 과 정	14	8	657	9,198	
		민 방 위 교 육 훈 련 실 무 과 정	14	8	547	7,658	
		자 연 재 난 피 해 복 구 비 지 원 실 무 과 정	14	8	580	8,120	
		지 진 해 일 실 무 과 정	14	8	659	9,226	
		풍 수 해 보 험 실 무 과 정	14	8	574	8,036	
		인 적 재 난 관 리 과 정	14	8	605	8,470	
		하 천 관 리 실 무 과 정	14	8	618	8,652	
		풍 수 해 저 감 증 합 계 획 과 정	14	8	613	8,582	
		급 경 사 지 관 리 실 무 과 정	14	8	619	8,666	
		기 후 변 화 대 응 과 정	14	8	659	9,226	
		재 해 구 호 일 반 과 정	14	8	625	8,750	

8-3

2010년 재난안전기술개발 현황

* '10년 방재기술연구개발 사업 현황

사업 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계속	12개 세부과제(계속 6, 신규 6)	
	강우자료를 활용한 급경사지 대피 예경보시스템 구축 연구	박덕근
	재해정보 분석을 위한 과학방재 정보분석실 구축	정태성
	홍수 및 세굴로 인한 교량의 피해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박병철
	산지 소하천 유역 돌발홍수 피해예측 기술개발	정재학
	목조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기술 개발	박병철
	조적조 건축물의 지진피해저감을 위한 최적 내진보강 기법 개발	이정환
신규	녹색형 침투저류시설의 개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김윤태
	재난경감을 위한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	김현주
	침수예상도를 활용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	홍성진
	침투양상 분석에 따른 사면 거동특성 및 안전을 평가	박덕근
	소하천 범람모의 및 위험도분석 시스템 개발	정태성
	Web 기반 토사유출 평가시스템 구축	이종설

🌸 '10년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현황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유원시설의 고공, 고속놀이기구 이상상태 진단기술 개발	표준연 (안봉영)	'09.3.1~ '11.2.28
재난전조정보 수집 및 관리시스템 개발	(주)메타라이츠 (차상열)	'10.7.20~ '11.7.19
화생방용 간이 민간 대피시설 방호능력 시험 및 표준모델개발	경원대학교 (박형주)	'10.9.1~ '11.12.31
이기종 경보시스템 간 상호연계체계 마련 및 국내 경보 표준 규격 제시	전자부품연구원 (박진희)	'10.9.1~ '11.12.31
재난전조 감시용 센서 및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서울대학교 (윤인섭)	10.10.1~ '13.9.30
특정관리대상 중앙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폰 기반 점검체계 개발	(주) 위니텍 (임영호)	'10.12.24~ '12.12.23.

합 계 (6개 과제)

❁ '10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 현황

과 제 명	연구기관 (책임자)	사업기간
국가 기물재해 정보시스템 개발	공주대학교 (이종형)	'08.10.1~ '11. 9.30
제방붕괴에 따른 피해 및 경제적 손실 예측 모형 개발	세명대학교 (박재홍)	'09.3.1~ '11.2.28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지지원 (최성자)	'09.3.1~ '12.2.28
저수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법 및 DB구축 개발 등에 관한 연구	농어촌연구원 (윤창진)	'09.3.1~ '11.2.28
녹색성장을 위한 친수환경 복구용 시공재료 개발	충남대학교 (박승범)	'09.3.1~ '11.2.28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환경변화 예측 및 방재 기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하대학교 (김형수)	'09.9.1~ '11.8.31
기존 저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기술 개발	부산대학교 (오상훈)	'10.8.1~ '11.7.31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수방시설물의 재해위험 진단기술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이창수)	'10.7.1~ '13.6.30.
재해경감 활동계획 세부지침 및 우수기업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기업재해경감협회 (이성수)	'10.7.1~ '11.6.30.
대규모 하천정비에 따른 자연재해 환경변화 및 방재체계 재구축	한서대학교 (박무중)	'10.8.1~ '12.7.31
도시홍수 위험성 평가 및 통합관리 방안 개발	노아솔루션 (양동민)	'10.8.1~ '11.7.31
감지형 앵커를 이용한 사면보강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한국유지관리 (윤종구)	'10.8.1~ '12.7.31
녹색방재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자원연구원 (박성제)	'10.8.1~ '11.7.31
녹색안전지수 개발	신구대학교 (김문모)	'10.8.1~ '11.7.31.
합 계(14개 과제)		

❁ '10년 차세대핵심 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 현황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초고층 건축물 제연시스템 연구개발	중앙대학교 (유홍선)	'08.7.1 ~ '11.6.30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분석 연구 및 소방업무 종사자 특수건강 진단 모델 개발	동국대학교 (안연순)	'09.3.1~ '11.2.28
주요 목재건축물 보존을 위한 소방설비 구축 모델 개발	광운대학교 (노삼규)	'09.3.1~ '11.2.28
3D기반 재난유형별 대응 SOP 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카이노스 (김영정)	'09.3.1~ '11.2.28
응도별 맞춤형 스프링 클러헤드 및 내진형 소화설비 개발	(주)파라다이스산업 (오선영)	'10.7.1~ '12.12.31
U-IT 기반 소방장비 통합관리 운용모델 개발	(주)위니텍 (홍성복)	'10.7.1~ '12.6.30.
밀폐공간 화재진압 등 소방 지능형 로봇 응용 기술 개발	DRB파텍(주) (박동화)	'10.7.1~ '12.12.31
친환경 방염제 및 방염처리 기술개발	전주대학교 (권경옥)	'10.7.1~ '12.12.31.
스마트 화재감지기 및 USN화재감시 시스템 개발	(주)미창 (황금)	'10.7.1~ '11.12.31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경원대학교 (민세홍)	'10.7.1~ '12.6.30.
초고층 건물 소방 설비용 자동감압밸브 개발	(주)우당기술산업 (권영규)	'10.7.1~ '12.6.30.
발화위치 추적형 자동 화재 진압장비 개발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정수환)	'10.7.1~ '12.12.31
미래형 소형 소방차 개발	(주)윈 (김 창)	'10.12.1~ '11.11.30.

합 계(13개 과제)

❁ '10년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 현황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연구기획사업		
소방방재청 과학방재 연구관리종합시스템 (RDMS) 고도화	사이버라인(이덕찬)	'10. 7.1.~ '11.6.30.
소방방재 R&D 미래기술 기획연구	미래자원연구원(이영근)	'10. 12.1.~ '11.11.30.
미래환경변화 대응한 재난정책 선진화 기획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김찬오)	'10. 12.1.~ '11.5.31.
국제공동연구사업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손홍규)	'10. 5.1.~ '12. 4.30.
산업화 지원사업		
통합방재관리를 위한 네트워크형 화재 수신기의 개발	(주)하이맥스(강원선)	'10.7.1~ '11.6.30
화력 발전소 폐석탄재를 이용한 친환경 경량 방화보드 개발	(주)원이세라믹(이상우)	"
저압용 미분무건 개발	(주)건국이엔아이(박정열)	"
지하공간의 화재방호를 위한 워터컷튼 시스템용 노즐개발	(주)파라다이스산업(김동준)	"
운반용 공기공급 장치 개발 연구	(주)산청(오상근)	"
통합형인명구조경보기 및 영상기록장치 개발	한국사이버대학교(신종홍)	"
사용자 중심 주소형 P형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발	호서대학교(이춘하)	'10.7.1~ '11.12.31
고체전해질을 이용한 전기화학식 CO센서 기술개발 및 이를 활용한 CO센서 및 TN, UL 규격의 CO 누설 가스 경보기 제품기술 개발	(주)센코(하승철)	"
차내 유해가스 사고 방지장치 및 엔지 화재용 자동소화장치 개발	(주)마스테코(김동호)	"
긴급구조를 위한 공기호흡기용 복합재 고압용기 개발	(주)삼우기업(김덕기)	"
확률 수문량 산정을 위한 국제 상용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허준행)	"
비상시 공기를 공급하는 개인용 lineless구멍기 개발	(주)씨아이제이(백종태)	"
재난현장용무선 영상송수신 시스템 개발	혜천대학교(노태호)	"
위치기반 재난위험지역 안내를 위한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주)제니슨(류종현)	'10.7.1~ '11.12.31
재난 최소화를 위한 조기 경보용 지진 검출기 개발	로커데크(양동욱)	'10.10.1.~ '11.9.30
암거 수리 설계를 위한 상용프로그램 개발	부경대학교(이상호)	"
시설하우스 설해방지 원격 제설시스템 개발	호서대학교(송중혁)	"
합 계 (21개 과제)		

부 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2.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부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 본청 정원표

(*11. 4. 30현재)


구 분	계
총 계	35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또는 소방총감)	1
별정직 계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소방정감(차장)	1
5급상당 이하	5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소방감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3
소방직 계	88
소방감	1
소방준감 이하	87

 중앙소방학교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66
일반직 계	12
5급 이하	12
소방직 계	54
소방감	1
소방정 이하	53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61
별정직 계	9
4급상당 이하	9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
4급 이하 및 기능직	50

 중앙119구조단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91
소방직 계	91
소방준감 이하	91

2.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총괄

(*10. 12. 31 현재)

부서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계	191	19	28	28	86	30	
대변인실	3				3		
재난상황실	3				2	1	
운영지원과	12				9	3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0					
	행정관리담당관실	6		1	1	4	
	법무감사담당관실	10				9	1
	정보화담당관실	6				4	2
	정책관리팀	3				2	1
예방안전국	예방전략과	0					
	민방위과	4				3	1
	시설안전과	7	1	1	1	4	
	특수재난대비과	0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51	4	10	6	19	12
	소방제도과	9	2	3	2	2	
	방호과	8	1	1	2	2	2
	구조구급과	10			2	7	1
	소방산업과	11	2	2	4	1	2
	화재조사감찰팀	4				3	1
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	4	1	1	1		1
	복구지원과	10	1	2	2	4	1
	재해경감과	7	2	2	2		1
	기후변화대응과	5	1	1	1	2	
	지진방재과	9	3	3	3		
	재해보험팀	3	1	1	1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	2				2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				2	
	중앙119구조대	2				2	

 법 률

('10. 12. 31 현재)

연번	법 률 명	소관부서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설안전과
2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정책과
3	소방공무원법	소방정책과
4	소방기본법	소방정책과
5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정책과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제도과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제도과
8	위험물안전관리법	방호과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과
10	소방시설공사법	소방산업과
11	자연재해대책법	방재대책과
12	재해구호법	복구지원과
13	소하천정비법	재해경감과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경감과
1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대응과
16	저수지댐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진방재과
1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진방재과
18	지진재해대책법	지진방재과
19	풍수해보험법	재해보험팀

 시행령

('10. 12. 31 현재)

연번	법령명	소관부서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관리담당관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시설안전과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정책과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정책과
5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정책과
6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정책과
7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정책과
8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정책과
9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징학규정	소방정책과
10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정책과
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정책과
1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정책과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제도과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제도과
15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제도과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방호과
17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산업과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산업과
19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방재대책과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복구지원과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구지원과
22	소화전정비법 시행령	재해경감과
2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경감과
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변화대응과
25	저수지댐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방재과
26	풍수해보험령시행령	재해보험팀
2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방재과
2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방재과

 시행규칙

(‘09. 12. 31 현재)

연번	법 률 명	소관부서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관리담당관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시설안전과
3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소방정책과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정책과
5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정책과
6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정책과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정책과
8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정책과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제도과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제도과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방호과
12	전국이용소방대연합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방호과
13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구조구급과
14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구조구급과
15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산업과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산업과
17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산업과
18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소방산업과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방재대책과
20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구지원과
2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복구지원과
2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재해경감과
23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해경감과
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대응과
25	저수자댐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방재과
2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방재과
27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방재과
28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재해보험팀

 훈 령

('10. 12. 31 현재)

연번	훈 령 명	소 관 부 서
1	소방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정책과
2	소방공무원증규정	소방정책과
3	소방공무원근무규정	소방정책과
4	소방공무원예절규정	소방정책과
5	소방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6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등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7	소방공무원체력관리규칙	소방정책과
8	소방방재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운영지원과
9	소방방재청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10	소방감찰규정	화재조사감찰팀
11	소방방재청감사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12	소방방재청정책지원위원회규정	정책관리팀
13	소방장비검사전담반운영규정	소방산업과
14	소방표지규정	소방정책과
15	국민안전방송(NEMA TV)운영규정	대변인실
16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17	명예소방관 위촉규정	소방정책과
18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19	국가재난관리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정보화담당관실
20	소방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중앙소방학교
21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방호과
22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재난상황실
23	소방항공기 등록번호 등 표시규정	구조구급과
24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소방정책과
25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기후변화대응과
26	소방방재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운영지원과
27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규정	민방위과
28	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중앙소방학교

연번	훈 령 명	소 관 부 서
29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소방정책과
30	소방총훈탑 관리규정	소방정책과
31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32	소방방재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33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정보화담당관실
34	소방방재청 민간공보전담위원 운영규정	대변인실
35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소방정책과
36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정보화담당관실
37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정책과
38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규정)	재난상황실
39	(민방위대 검열규정)	민방위과
40	(민방위복제 운용규정)	민방위과
41	(특정관리 대상시설 보고등에 관한 규정)	시설안전과
42	(중앙긴급안전점검 운영규정)	시설안전과
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합동 조사단 운영규정)	시설안전과
44	(중앙안전점검단 설차운영규정)	시설안전과
45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46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47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	소방정책과
48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구조구급과
49	(복권기금관리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50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복구지원과
51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52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53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방재연구소
54	소방방재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55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정책과
56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소방정책과
57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소방제도과
58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기후변화대응과
59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소방정책과
60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연번	훈 령 명	소 관 부 서
61	소방방재청 중보 및 반복 민원 처리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6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6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64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규정	대변인실
65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방호과
66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화재조사감찰팀
67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68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69	소방방재청 위암전결규정	행정관리담당관실
70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제도과
71	소방방재청 기록관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72	소방방재청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지원과
73	소방방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법무감사담당관실
74	소방방재청 인사관리규정	운영지원과
75	소방방재청 청렴활동 점수관리제 운영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76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정책관리팀
77	안전기술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방재연구소
78	소방방재청 청렴국민감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법무감사담당관
79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소방정책과
80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정보화담당관
81	중앙119구조대 운영규정	중앙119구조대
82	소방방재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운영지원과
83	소방방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운영지원과
84	국제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구조구급과
85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화재조사감찰팀
86	인명구조건 관리운영 규정	중앙119구조대

예 규

('10. 12. 31 현재)

연번	예 규 명	소 관 부 서
1	소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소방정책과
2	소방관서도급경비사무처리요강	소방정책과
3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	소방산업과
4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구조구급과
5	소방공무원승진심사기준	소방정책과
6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소방정책과
7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소방정책과
8	소방공무원특수지근무경력가점평정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9	소방방재청 특별승급제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10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소방정책과
11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규정	소방정책과
12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소방정책과
13	소방방재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법무감사담당관실
14	소방방재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운영지원과
15	소방방재청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운영지원과
16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정보화담당관실
17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민방위과
18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요강)	소방정책과
19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소방정책과
20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소방정책과
21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방호과
22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방호과
23	소방방재 정책수행 추적관리 규정	정책관리팀
24	소방방재청 국가위기상황 보고지침	재난상황실
25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정보화담당관실
26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	방재대책과
27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산업과
28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복구지원과
29	외근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화재조사감찰팀
3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규정	재해경감과